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김명아 · 전주열 · 장원규

KRI
R



한국법제연구원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A Study on Legislation for Accessible Tourism in U.S.A.,
France, Netherlands, and Japan

연구책임자 : 김명아(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Kim, Myoung Ah

공동연구자 : 전주열(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eon, Joo Yeol
장원규(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Jang, Won-kyu

2019. 10. 31.

연 구 진

연구책임	김명아	연구위원
공동연구(원내)	전주열	부연구위원
	장원규	부연구위원
심의위원	이 훈	교수(한양대학교)
	강문수	선임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손 현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연구협의(자문)위원	윤지환	교수(경희대학교)
연구보조원	이사회	(경희대학교 박사과정)

요 약 문

I. 배경 및 목적

- ▶ 최근 국내외 관광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활동 보장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음
 - 이러한 관광활동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Accessible Tourism(열린 관광/관광접근권)”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활동과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음
 - 2006년에 UN총회에서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통과되었으며, 이에 각국에서는 이러한 UN CRDP의 준수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제정한 바 있음
 - 또한,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유엔 세계 관광 기구)”에서는 2011년의 선언을 통하여 2030년까지 18억 명에 달하는 국제관광객을 수용하는 지속적인 관광 개발을 기대하며,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은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핵심임이기 때문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접근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됨을 밝히고 있음
 - 한편, “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ENAT)”에서는 열린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밝히고, ‘보편적 관광접근권(Accessible Tourism for All)’이라는 윤리강령에 따라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음

-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2019년 업무계획』에서도 이러한 ‘열린 관광’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을 밝힌 바 있음
 - 즉, 『2019년 업무계획』에서는 2.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의 하나로서 ‘2-1 [문화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를 실천하고 이를 위하여 ‘(1) 취약계층 - 소외계층에게 차별없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2) 장애인 -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 향유 여건 조성’ 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현실에 더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으나 이러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향유권 보장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실천이 부족한 상황임
 - 2017년 기준 등록장애인은 254만명(약 5%)에 이르나, 장애인이 여행 등 관광 활동에 참여하는 비율은 10% 미만에 불과하고, 2017년에 고령사회로 진입(14%) 하면서, 2025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한편, 국내 신생아 출생률이 저조하여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제로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하여서도 보편적 접근성 보장으로서의 열린 관광에 대한 향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특히,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은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과 그 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와 그 가족, 관련 단체 등 모든 사람(for All)에게 보장 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임

□ 열린 관광의 일부 개념으로 채택되기도 하는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나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Barrier
 Free(BF)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열린 관광지”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
 까지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임

-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나 조성계획
 등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 충분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은 편임
- UN이나 국제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
 이나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에 대한 소개는 더욱 부족한 편임
- 이에 열린 관광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
 로써 국내 열린 관광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린 관광으로서의 “Accessible Tourism” 관련 정책을 성공
 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선진 사례와 이러한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II. 주요 내용

▶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분석대상 국가는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으로 정함

-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나 조성 계획 등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해외사례의 기초가 되는 정책적 근거나 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나 분석은 부족한 편임
 -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수립 및 관련 제도의 적용과 집행을 담당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요청에 따른 해외 법제 분석 대상국가인 일본, 네덜란드, 미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 또한,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을 마련하여 두고 있으면서, 행정 규제 작용과 조성 작용이라는 양 측면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권을 보호하고 있는 프랑스를 분석 대상 국가에 추가함으로써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실천적 시사점을 얻을 수 있도록 하였음
 -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소개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열린 관광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 및 방향성에 대한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및 원칙 등을 검토함으로써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연원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함
- 모든 사람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보장하는 관광으로서의 열린 관광은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 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과 그 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와 그 가족, 관련 단체 등 모든 사람 (for All)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함
-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각국 법령이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정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함

- 미국,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의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 관련 법규와 정책을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정책과 제도 운영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함
- 미국에서는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미국 장애인 법)」을 통하여, 1993년 이후에 건축된 모든 공공건물과 개인 소유 건물(호텔, 레스토랑, 극장 및 박물관 포함), 대중교통에 대하여 휠체어 접근가능성 확보를 의무화 한 바 있음
 - 전화 회사의 경우에도 청각 장애인을 위한 “teletypewriter (TTY)” 번호를 통해 중계하며, 은행에 대하여서도 청각 장애 고객을 위한 점자 및 이어폰 잭을 통한 ATM 사용 안내를 의무화함
 - 버스 및 열차의 경우에도 장애인 여행객에게 탑승 전 48시간 이전에 예약에 필요한 설명을 하도록 하고, 렌터카의 경우 휠체어리프트가 있는 수동제어차량 내지 밴을 추가 비용 없이 제공하고 예약을 도와야 하며 운전자에게도 이를 위한 리프트나 경사로가 필요함을 인지시켜야 함
 - 이 밖에도 택시회사의 경우에 접근가능성을 보장하는 밴 형태의 택시를 갖추어야 할 것과, 지하철에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도록 하고, 주립 공원이나 휴양지에서도 휠체어 접근이 가능한 포장 경사로 및 산책로가 갖춰져 있음
 - 미국 시민권자 내지 영구적 장애를 가진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교통 바우처에 해당하는 무료 ‘America the Beautiful’ Access Pass를 지급받을 수 있음
 - 또한, 스포츠 분야나 여행, 비행, 다양한 운송수단 등에 대하여서도 접근가능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다양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프랑스는 2018년 관광객 방문자수 1위 국가로서, 2006년부터 ‘관광법전’을 마련하여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접근권을 보장하고, 실질적으로는 열린 관광지 조성을 위한 조성적 작용을 중시하고 있음

-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접근권을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등 거동제한자의 관광접근권과 관련한 일부 규정만을 두고,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등 조성적 작용으로서의 열린 관광지 정책을 추진하고, 종합관광서비스 정보 제공 등 실천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네덜란드에서는 2003년 제정된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s of Handicap or Chronic Illness(장애 또는 만성 질환에 대한 동등한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대중교통이나 여행 정보 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로테르담 시에서는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2014년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하여, 「야외공간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outdoor space)」을 통해 공공장소와 교통에 관련된 규정을 마련한 바 있음
 -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2018년 5월 Barrier Free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이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일정 규모(50개 객실) 이상의 신규 숙박시설을 개설하려는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1개 이상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의 1% 이상이 Barrier Free 여야 함을 정함
 - 2019년 4월부터는 대중교통 관련 회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Barrier Free 의무가 주어지고 있음
-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통하여 해외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각국의 정책과 법제를 소개하고,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내 취약계층의 교통 및 편의시설 증진에 관한 적용 법률과 정부의 정책 추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현행 정책 및 제도를 분석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등 기존에 무장애 접근과 관련하여 논의의 대상이 되던 관련 법률과 함께 「관광기본법」, 「관광진흥법」 등 관광정책 관련 법률도 분석 및 개선방안 대상으로 함
- 열린 관광에 대한 원칙 수립 및 기본방향 정립에 있어서는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 및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유엔 세계 관광 기구)”의 2011년의 선언 등을 참고함으로써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함

Ⅲ. 기대효과

▶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보편적 접근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함**

-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무장애시설 확충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임산부 및 영유아, 그 가족 및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및 관광향유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경험에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도출 할 수 있을 것임
- 열린 관광 정책 수립에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더하고,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관광향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도록 함

KLRI

- 국내 관광 활성화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기존 정책이 가진 문제점을 해결하고, 향후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함

▶ 주제어 : 열린 관광, 관광접근권, 보편적 접근성, 무장애 관광, 국내 관광 활성화

Abstract

I. Backgrounds and Purposes

- ▶ As the domestic and oversea tourism activities dramatically increase in recent days, a demand for securing a tour, which accompanies family members of the disabled persons, the elderly, infants and young children, is also increasing.
 - International society also has significant concerns with regard to such secured tourism activities and is gradually preparing a variety of activities and principles on the basis of the concept of “Accessible Tourism (Tourism as Access Right)”.
 -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was passed at the UN General Assembly in 2006, accordingly each nation has enacted the relevant laws to comply with the UN CRDP.
 - In addition,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revealed through the declaration in 2011 that a consistent development in tourism is expected to accommodate as many as 1.8 billion of international tourists by 2030 and Accessible Tourism is not only important because it is a core of the responsibl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but also fruitful to all members of a society because it is something associated with universal accessibility.

- Meanwhile, “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 (ENAT)” has announced various activities for the Accessible Tourism and is engaging in a variety of activities in accordance with the code of ethics, so-called ‘Accessible Tourism for All’.
- The 『Work Plan for 2019』 opened by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in March 2019 has also elucidated the detail plans associated with the ‘Accessible Tourism’.
- The 『Work Plan for 2019』 includes 2. [Embracement] as one of cultures that enjoys together, ‘2-1 [Cultural Welfare] Culture that embraces and shares’ will be implemented, to achieve this, ‘(1) vulnerable classes - an opportunity for enjoying cultures will be provided for the alienated classes’, and ‘(2) the disabled - the plan for implementing conditions of enjoying culture with no sense of disability’
- In addition to the reality that has substantial restrictions on tourism activities for the disabled, the tourism enjoying right of such tourism vulnerable classes has not been practically secured yet even though entering into the super-aged society is around the corner.
- The registered disabled persons reaches about 2.54 million (approximately 5% of total population) as of 2017, the rate for the disabled to participate in tourism activities such as a traveling is merely less than 10%. Our society has already entered into an aging society (14%) in 2017 and it is expected to be a super-aged society in 2015. However, an accessibility to tourism activities by the tourism vulnerable classes such as the disabled or the elderly has not been considered properly yet.

- In the meantime, although the government promotes the childbirth encouragement policy due to a significantly low childbirth rate in Korea, the tourism enjoying right for ‘Accessible Tourism’ as a secured universal accessibility has not been actually secured yet for the family accompanying infants and young children.
- In particular, the accessible tourism that can be accessed by all people needs to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accessibility, which is secured for the “All” such as those who have a temporary disability and their families,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nd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family,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clare, rather than only for those who are vulnerable to tourism.
- Regarding ‘Barrier Free (Daily environment with no barriers)’ or ‘Universal Design’, which are adopted as partial concept of ‘Accessible Tourism’, the certificate system for Barrier Free (BF) has been implemented from 2007 and the contest and selection for ‘Accessible Tourism Places’ have been performed since 2015, thereby increasing concerns on the tourism enjoying right, however, there is no sufficient perception of the accessible tourism thus far.
- The previous studies have typically focused to conduct research on necessity or plan for creating a tourism city with no barriers, and the advanced cases of oversea countries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create the tourism environment with no barriers, in particular, have not been yet introduced sufficiently to the domestic people.

- There is no sufficient introduction on the systematically structured legislations or relevant policies that are being proceeded in the UN,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each country.
-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prepare for an environmental base of accessible tourism in the country and will be utilized in establishing the relevant policies and improving the institutions by comparatively investigating the advanced cases of oversea countries in order to create the environment for accessible tourism.
- ▶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rovide a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the domestic environment of an accessible tourism by comparatively researching the advanced cases of each foreign country, which successfully perform the policy related to “Accessible Tourism” as an accessible tourism and the institutional legislations that can be bases of such policy implementation.

II. Major Content

- ▶ The law systems and relevant policies of the oversea countries are investigated and analyzed in order to secure the tourism enjoying right, and the target countries include the U.S.A., France, Netherlands, and Japan.
- The previous studies have typically conducted research mainly on necessity or plan for creating a tourism city with no barriers, and the advanced cases of oversea countries on the legislative system related to create the tourism environment with no barriers, in particular, have not been yet introduced sufficiently to the domestic people.

- The study has focused on the overseas countries targeting for legislation analysis such as Japan, Netherlands and the US according to a request from the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which is in charge of establishing the policy related to an open tourism as well as applying and administering the relevant institutions.
 - In addition, this study enables to obtain implications for creating the environment of an accessible tourism by adding France, which prepares the Code du tourisme and protects the tourism right of tourism vulnerable classes from two perspectives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ction and creation action to the list of analysis target countries.
 -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is able to provide a fundamental data for establishing the policies that are required for creation of an open tourism environment in Korea by introducing the advanced cases of overseas countries.
- This study reviewed the discussions and principles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with regard to th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that an accessible tourism pursues, thereby enabling to support the relevant policies and the origin of legislation being promoted in each country.
- The open tourism that guarantees an accessibility by all people needs to be understood from the perspective of universal accessibility, which is secured for the “All” such as those who have a temporary disability and their families,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nd the infants and young children with family, as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s declare, rather than only for those who are vulnerable to tourism.

-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the meanings of each regulation that the laws of each country pursue by identifying those basic principles and direction.

- This study introduced the laws and policies related to ‘Accessible Tourism’ of Japan, Netherlands, France and the US, and derived the implications from those laws and policies to the open tourism policy and the operation of institutions of Korea.

- The U.S.A. has implemented the mandatory policy for accessibility of wheel chairs in all public buildings, privately owned buildings (including hotels, restaurants, theaters and museums) that were constructed after 1993 through the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 The U.S.A. also implemented the policy such that the communication is relayed through the “teletypewriter (TTY)” number for hearing-impaired persons in case of telephone companies, and use of braille and ear-phone was a mandatory for ATM operation in banks.
 - Buses and trains should provide a description for reservation 48 hours in advance before boarding for the disabled travelers. The rental car companies also have to not only provide a manually controlled vehicle or a van that have a lift for wheel chair without any additional charge but also help reservation as well as notice the driver for a necessity of a lift or a slope-way.
 - Besides, a taxi company should prepare a van type taxi that guarantees an accessibility and subway should also install elevators. State parks or resorts also have the paved slope-ways and promenades.

- The U.S.A. citizens or the permanent resident having unfixable disorders can be provided with free ‘America the Beautiful’ Access Pass’ that is similar to a transportation voucher in Korea.
-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take various measures for securing an accessibility to sports fields, travel, flight or other transportation means.
- France was ranked the top in the number of foreign visitors in 2018 and has prepared ‘the Code du tourisme’ since 2006 to protect the tourism access right for the tourism vulnerable classes, and in practice, France valued the constructive action for creating the accessible tourism places.
- Although France has regulated the tourism access right for the tourism vulnerable classes, it implemented only few regulations related to the tourism access right for the disabled and the people in restricted movement. It proceeds the policies for the accessible tourism places as the constructive actions including ‘the institution for accessible tourism places’ and put in a great deal of practical effort such as providing information on comprehensive tourism services.
- In Netherlands, it is prohibited the discrimination to access for the public transportation and travel information from the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s of Handicap or Chronic Illness> since 2003.
- The Rotterdam city has established 「Guidelines for the Outdoor Space」 for access to public places and transportation through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local government and stake-holders in 2014.

- Japan revised the laws related to Barrier Free at May 2018 for upcoming the Olympic and the Paralympics at Tokyo in 2020 and the revised laws has been effective since Sep. 1, 2019.
 - The revised laws forces to have one guest room or more that wheel chair users can use when newly opening the accommodation facility in a certain scale, for instance, having more than 50 guest rooms and also forces to have more than 1% of Barrier Free guest rooms in case of the accommodation facility that has over 50 guest rooms.
 - An obligation with a certain Barrier Free was given to companies in public transportation services from April 2019.

- ▶ This study introduces the policies and legislations of each country that are for creating the accessible tourism environment through the comparative research methodology, and derives and suggest the specific implications for creating the open tourism environment in Korea.
 - This study has included not only the laws applied to enhancement of transportation and convenient facilities for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classes in Korea but also the current policies and institutions, which are directly related to implementing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 The targets for the analysis and improvement include the laws that have been the subjects for debate in association with the existing Barrier Free access such as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Enhancement of Convenience for the Disabled, the Elderly and the pregnant women>, <Act on Enhancement of the Convenience in

Movement of the Transportation vulnerable People>, in addition to the laws related to the tourism policies including < Framework Act on Tourism > and < Tourism Promotion Act>.

- In terms of establishing the principles and fundamental direction on the accessible tourism, this study has referenced the declarations in 2011 by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and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in order to consider a conform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andards.

III. Expected Effects

- ▶ This study enabled to derive implications by comparatively analyzing the policie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ecuring the universal accessibility based on the oversea cases with regard to the legislations for Accessible Tourism.
 - In domestic situation, the perception on accessible tourism still stays at simply expanding the barrier free facilities. Therefore, it will be possible for Korea to derive the comparative implications from experiences of each country that has prepared the relevant policies and regulations by approaching them from the perspectives of the universal accessibility and the tourism enjoying right not only for pregnant women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the relevant organizations but also all other tourists.

- By apply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in establishing the accessible tourism policies, it is necessary to add the systematic driving force in construction of environment for the existing barrier free tourism and to suggest an institutional promoting direction that can establish the next generation tourism policies based on securing the universal accessibility and the tourism enjoying right.
 -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will solve the problems of the existing policies and contribute to actually activating the domestic tourism market in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fundamental data for activating the domestic tourism market and constructing the environment for the accessible tourism.
- ▶ **Key Words : Accessible tourism, Tourism access right, Universal accessibility, Barrier free tourism, Domestic tourism activation**

목차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요 약 문	5
Abstract	13

제1장 서론 / 27

제1절 연구의 목적	29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2
1. 연구의 범위	32
2. 연구의 방법	34

제2장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 / 37

제1절 열린 관광의 개념과 범위	39
1. 전통적 의미의 ‘관광’과 현대의 ‘관광’ 개념	39
2. 열린 관광의 의미	41
제2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44
1. 열린 관광의 필요성	44
2.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47
3.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	58

제3장 해외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 / 65

제1절 서 설	67
제2절 미국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69

1. 개 관	69
2. 미국 연방법상의 관련 법제	69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85
4. 일리노이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101
5. 플로리다 주의 접근성 관련 규정	118
제3절 프랑스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21
1. 개 관	121
2. 관광법전	123
3. 장애인 보호 관련 법제	126
4.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133
제4절 네덜란드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39
1. 개 관	139
2. 접근성 보장 관련 법제	142
3. 로테르담의 관련 법제	144
제5절 일본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46
1. 개 관	146
2. 이동 원활화 관련 법제	147
3. 도쿄의 관련 법제	155
4. 숙박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 정보공개 매뉴얼	159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159

제4장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 165

제1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성	167
1. BF 인증제도의 인증 의무화 강화와 인센티브 지급	167
2. 광역지자체 간 교통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관광 분야 공유차량 제도 검토	169

목차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3. 선정된 열린 관광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171
4. 열린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선	172
5. 열린 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및 전문가 과정 개설	173
6. 통합적 추진 협의체 필요성	174
제2절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황	175
1. ‘헌법’과 열린 관광	175
2. ‘관광’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76
3.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180
제3절 소 결	187

제5장

결 론 / 189

참고문헌	197
------------	-----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최근 관광에 대한 관심과 관광 활동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장애인 및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활동 보장에 대한 관심도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관광활동 보장과 관련하여서는 국제사회에서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Accessible Tourism(열린 관광, 접근권이 보장된 관광)”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활동과 원칙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2006년에 UN총회에서는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통과된 바 있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는 이러한 UN CRPD의 준수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제정한 바 있다.

한편,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유엔 세계 관광 기구)”에서는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개발 정책의 핵심이며, 보편적 접근성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모든 사회구성원에게도 이익이 됨을 밝히고 있다.¹⁾

그리고, “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ENAT)”에서는 열린 관광을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밝히고, ‘Accessible Tourism for All’이라는 윤리강령에 따라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²⁾

1) UNWTO, [Home - Areas of work - Accessible Tourism], (<http://ethics.unwto.org/en/content/accessible-tourism> 2019. 10. 28. 최종검색)

2) ENAT, [Home - ENAT Code of Good Conduct], (<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enat-code-of-good-conduct>)

이러한 국제적인 움직임 속에 2019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는 『2019년 업무계획』을 통하여서도 이러한 ‘열린 관광’과 관련하여 세부 계획을 밝히고 있다. 즉, 『2019년 업무계획』에서는 2. [포용] 모두가 함께 누리는 문화의 하나로서 ‘2-1 [문화복지] 포용하고 나누는 문화’를 실천하고 이를 위하여 ‘(1) 취약계층 - 소외계층에게 차별 없는 문화 향유 기회 제공’ 및 ‘(2) 장애인 - 장애가 느껴지지 않는 문화 향유 여건 조성’ 계획을 공개하고 있다.³⁾

그러나 실제로는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현실에 더하여,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향유권 보장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실질적인 실천이나 관심이 부족한 상황이다. 곧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에도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활동 접근성에 대한 고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정부가 출산 장려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영유아 동반 가족에 대하여서는 보편적 접근성 보장으로써의 열린 관광에 대한 향유권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은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과 그 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와 그 가족, 관련 단체 등 모든 사람(for All)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열린 관광의 일부 개념으로 채택되기도 하는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나 ‘Universal Design(보편적 설계)’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에서도 2007년부터 Barrier Free 인증 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2015년부터는 “열린 관광지” 공모와 선정이 이루어지고 있어 관광향유권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열린 관광에 대한 실질적 인식과 실천이 부족하고, 관련 법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도 충분하지 않다. 즉,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나 조성계획 등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실질적으로 관련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근거가 되는

최종검색)

3) 문화체육관광부, [홍 - 업무계획 - 2019 업무계획], (<http://mcst.go.kr> 2019. 10. 28. 최종검색)

법제 연구는 아직까지 불충분한 상태로 판단된다. 특히,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관련 법제에 대한 해외 선진사례는 아직까지 국내에 충분하게 소개되어 있지 않으며, UN이나 국제기구 차원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이나 체계적으로 정비된 법제에 대한 소개는 더욱 부족한 편이다.

이에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 근거가 되는 법제 연구가 시급하며, 특히 해외 선진사례를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내 열린 관광 환경 기반을 마련하고, 관련 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열린 관광 관련 소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이러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관련 연구 자료들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 개선에 힘써 오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2019년 한국법제연구원에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해외 법제 사례 검토’를 수시과제로 수행하여 줄 것을 요청해 온 바 있다. 그리고 해당 과제의 연구범위는 장애인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선진사례 조사를 기초로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 법제에서의 관광 관련 접근성(교통), 인프라(관광지, 숙박 시설 등), 서비스(교육, 전문인력 등)와 관련된 내용으로 요청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린 관광으로서의 “Accessible Tourism”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선진 사례와 이러한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함으로써 국내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관광향유권 보장을 위한 해외 법제도 및 관련 정책을 조사하여 분석하고, 분석대상 국가는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미국으로 정하도록 한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한 네덜란드와 미국, 일본의 법제 사례 외에도, 연구진 회의를 통하여 프랑스의 관련 제도를 함께 소개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랑스는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을 2006년 완성하여 두고 있으며, 법적 규제 측면 보다는 실천적 측면에 무게를 두고 행정 규제 작용과 조성 작용이라는 양 측면 모두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접근권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열린 관광으로서의 “Accessible Tourism”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정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해외 각국의 선진 사례와 이러한 정책 수행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연구한다. 특히, 소관 부처의 요청에 따라 열린 관광 관련 법제의 접근성(교통), 인프라(관광지, 숙박시설 등), 서비스(교육, 전문인력 등)를 연구의 범위로 한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필요성이나 조성 계획 등을 위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며, 해외사례의 기초가 되는 정책적 근거나 관련 법제에 대한 소개나 분석은 부족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 선진사례를 기초로 그 정책적 기초가 되는 법제를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우선, 제2장에서는 열린 관광의 정의와 개념 소개를 통하여 열린 관광이 추구하는 기본 원칙 및 방향성과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정리하고, 제3장에서는 국제사회에서의 논의 및 원칙 등을 기초로 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및 법제의

기초 이념이 이에 기반하고 있음을 소개한다. 이를 토대로 제4장에서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특히, 모든 사람이 접근 가능한 열린 관광은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차원이라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일시적 장애를 가지게 되는 사람과 그 가족, 임산부 및 영유아와 그 가족, 관련 단체 등 모든 사람(for All)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파악함으로써 각국 법령이 취하고 있는 각종 규정의 내용이 가지는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관련 현황을 소개하면서 프랑스와 미국, 네덜란드, 일본의 ‘Accessible Tourism’ 관련 법령을 주로 소개하고, 관련 정책을 함께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에 대한 해외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보편적 접근성 보장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를 기초로 향후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수립에 직접 활용함으로써, 기존의 무장애 관광 환경조성에 체계적인 추진동력을 더하고, 보편적 접근성 보장 및 관광향유권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 관광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이 단순한 무장애시설 확충 수준에 머물고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그 가족 및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모든 관광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및 관광향유권 차원에서 접근하여 관련 정책 및 법규를 마련하고 있는 각 국가들의 경험에서 비교법적 시사점을 제시함으로써 현행의 열린 관광 정책이 가진 문제점 해결에 기여하고, 향후 국내 관광시장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방법을 기초로 열린 관광 조성 관련 해외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향후 열린 관광 환경 조성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해외 법제 검색 및 비교법적 분석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피어쓰기) 해외 각 기관의 홈페이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각국 관광 당국의 홈페이지에 공개된 다양한 문헌과 자료를 검토하였다.

또한, 법령과 정책에 대한 문리적 연구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각 분야 유관 연구기관의 협력을 받아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하여 민관학 협력방식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열린 관광 관련 연구 경험이 있는 다양한 연구기관과 열린 관광 분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정책연구기관인 문화관광연구원 내지 서울연구원을 포함한 각 지역 연구기관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정확한 과제 방향성 설계를 도모하였다. 그리고, 관련 민간분야 실무자와 학계 전문가들과도 긴밀하게 연구의 방향성에 대하여 연구 초기단계에서 논의함으로써 실무적인 관점에서의 변화와 개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국내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과 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서는 관광 분야 전문가인 경희대학교 윤지환 교수의 원고자문을 통하여 정확한 정책 수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객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하여 수시로 의견을 구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방향성 확정과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각 해외 법제 사례에 대하여서는 워크숍 개최를 통하여 각국 법제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춘 법제전문가들과 관광분야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들의 보다 밀도 있는 분석을 시도하였다. 관련 워크숍 개요는 다음 [표 1]과 같다.

[표 1] 제1차 워크숍 (2019년 9월 9일)

연구 소개 및 열린 관광 관련 국내외 정책 소개
<p>관련 개괄적 설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 열린 관광 관련 국내외 정책 및 법제의 주요 내용 및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의 연구 방향성 소개 - 연구방향성의 정확한 설계와 객관성 확보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식의 연구 추진 방법에 대한 소개와 의견 수렴 - 열린 관광 관련 개념 정의 및 적용범위 대상 확정 등을 위한 검토 의견 요청 - 해외 각국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법제의 주요 내용 소개
검토 요청
<p>네덜란드의 열린관광 관련 정책 및 법제 주요 내용 보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네덜란드의 경우, 사회적 기업 중 하나인 Accessible Travel Netherlands의 법적인 지위, 활동영역 그리고 보수체계에 대한 정보의 확인과 보완 - 201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 Access City Award의 1-3위까지의 순위와 유럽위원회에서 지정하고 있는 범주의 확인 요청 - 네덜란드 포용사회 형성을 위한 식물원에 운행되는 이동스쿠터 운전도우미 유무와 이용료, 수수료 등에 대한 상세 내용 요청 <p>프랑스의 열린관광 관련 정책 및 법제 주요 내용 보완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관광국가위원회(Commission national Destination Pour Tous)에 있어서도 위원회의 구성을 파악할 수 있는 조직체계, 법적체계 등과 같은 추가적인 자료와 기구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확인 요청 - 세금 감면 관련 사항에 대한 보완 요청 <p>열린 관광 정책 현황 및 실무상의 문제점 검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린 관광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은 물론,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장벽을 제거하여 여행의 기회를 넓혀야 할 필요성을 제기함 - 열린 관광의 환경 조성은 물리적 시설만의 개선으로 달성될 수 없기에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의 필요성을 확인함 - 사업자에게 부담이 가더라도 기본적으로 법의 제정은 강력하게 진행이 되어야하며, 법 제정 이후 장애인들과 중간 취약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 해외 사례 반영에 있어 우리나라와 해외의 다른 부분을 분명히 하는 것이 먼저임을 밝힘
- 예를 들어, 대중교통의 개념조차 각 나라별로 이해하는 정도가 다르기에 이의 차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각 나라별로 버스, 트램 그리고 저상버스 등 대중교통의 종류에 따라 대중교통의 개념을 다르게 이해할 수 있기에 차이점을 인식하여야 함을 확인함

법제 개선 필요 대상 법제의 범위 확정과 개선방향 검토

- 관광분야, 특히 열린 관광은 관광 관련 법령이나 규제만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하고, 관광영역에 속한 교통, 숙박, 관광시설물 등 각 분야별로, 관련 규제와 이에 대한 실무에서의 상품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관련 법규의 확인과 준수에 대한 통합적 개선 노력 등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확인함

제2장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열린 관광의 개념과 범위

제2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제2장

열린 관광 관련 정책 현황

제1절 열린 관광의 개념과 범위

1. 전통적 의미의 ‘관광’과 현대의 ‘관광’ 개념

1) 전통적 의미의 관광

‘관광’이란 문자는 주나라(BC12~13세기) 시대의 “관국지광(觀國之光)이니, 이용빈우왕(利用賓于王)”에서 처음 쓰였으며, 이는 ‘나라의 빛을 보러가는 것은 왕에게 귀한 손님으로 접대받기에 좋다’의 의미로⁴⁾ 관광은 즉, 나라의 빛을 본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신라시대 최치원 계원필경 “관광육년(觀光六年)”에서는 과거를 볼 목적으로 관광이 쓰였으며, 고려시대 고려사절요의 “관광상국 진손숙습(觀光上國 盡損宿習)”에서는 사회적·문화적 활동으로 문물제도를 시찰하는 의미로 쓰였다. 조선시대에서도 관광은 박지원의 열하일기에 따르면, “위관광지상국래(爲觀光之上國來)”로 중국의 문물과 제도를 관광하러 왔다는 의미였다.⁵⁾

이에 반해, 서양에서의 관광은 영어의 ‘tourism’으로 보았을 때, ‘tour’와 ‘travel’에서 파생된 용어로, 라틴어로 돌다, 순회하다의 의미인 ‘tornus’에서 유래되었다.⁶⁾

4)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aks.ac.kr 2019. 10. 28. 최종검색)

5) 한경수, “관광의 어원 및 용례에 관한 역사적 고찰”, 『관광학연구』, 제13권, 1989, 265~267면.

6)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www.encykorea.aks.ac.kr 2019. 10. 28. 최종검색)

이로보아, 통상적으로 동양에서의 관광은 타국을 방문하고 문물과 제도를 관찰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서양에서는 즐거움을 위한 단기간의 여행을 뜻하고 있다.⁷⁾

2) 현대에서의 관광

과거에서의 관광이 문물과 제도의 관찰, 단기간의 여행이란 의미에 머물러 있었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관광할 ‘권리’가 중요해졌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 1980년 UNWTO 마닐라 총회에서는 시민에게 관광할 권리가 있으며, 국제사회는 시민들에게 실용적·효과적·차별 없는 관광의 접근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밝혔다.⁸⁾

이후, 1999년의 산티아고 13차 총회에서는 ‘The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세계 관광 윤리 강령)’을 채택함과 함께 관광에 대한 보편적인 권리에 대하여 언급하기도 하였다.⁹⁾

그렇게 관광은 누구나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일반적인 현상으로 발전되면서 ‘Mass Tourism’ 즉, 대중관광으로 이어졌으며, 관광 인프라 구축으로 인해 이동시간 감소, 저비용, 편리성 등의 이점이 나타나면서 대중의 관광 참여가 용이해졌고, 매스미디어나 인터넷을 통한 대량의 관광정보는 관광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관광 참여를 확대하였다.¹⁰⁾

대중관광은 오히려 신체적 제약요인뿐만 아니라 경제적, 환경적 요인 등의 다양한 이유로 관광을 하지 못하는 관광소외계층을 부각시키는 면을 가져오기도 하였다.

따라서 관광약자로도 칭하는 관광소외계층의 문제해결을 위해 Social Tourism(소셜투어리즘)이 등장하였으며, 국내에서 이는 복지관광, 국민관광 등으로 불리었다.¹¹⁾

7) 유준상, “관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재조명”, 『관광정책학연구』, 제9권 제1호, 2003, 147~148면.

8) 정진영, “Social Tourism 개념과 연구 과제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논총』, 제29권 제3호, 2017, 91~92면.

9) ENAT 홈페이지, [Home - Resources - ENAT Library - Report and Articles - UNWTO Global Code of Ethics for Tourism(1990)], (<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reports.366> 2019. 10. 28. 최종검색)

10) 정승안, “관광의 의미에 대한 주역사회학적 접근”, 『사회사상과 문화』, 제26권, 2012, 235~262면.

11) 정진영, 위의 논문, 85면.

한편, 관광이 대중성을 띠면서 공공부문에서 관광정책과 관광행정을 통해 적극적인 관광 진흥 시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국내외 관광객 보호, 관광 정보 제공, 관광자원 보전, 관광시설 정비, 관광기업의 지도 및 감독의 목적으로 역할을 수행 중에 있다.

국내에서는 최근 정부의 ‘2019 관광혁신 전략’과 같은 과제를 통해 비자, 의료, 관광벤처 창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안으로 한국 관광산업의 발전을 꾀하고 있다.¹²⁾

이제 관광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적인 행동이면서 국가와 국민에게 경제 활력과 삶의 활력을 가져다주는 산업으로, 그리고 단순한 즐거움을 위한 관광이 아닌 Social Tourism(사회적 관광)이나 Welfare Tourism(복지 관광)으로 인식되고 있다.¹³⁾

이처럼 최근 국내외 관광이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적인 행동’으로 인식이 변화되면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약자의 관광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다.

2. 열린 관광의 의미

열린 관광은 이동성, 시각, 청각 및 인지 차원의 접근을 포함하여 접근 요구사항을 가진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설계된 관광 상품, 서비스 및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독립적이고 공평하고 존엄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¹⁴⁾

여기에는 유모차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여행하는 사람들, 장애를 가진 사람들, 노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¹⁵⁾

12) 문화체육관광부, [홈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 대한민국 관광 혁신전략 5대 과제], (https://www.mcst.go.kr/s_policy/subPolicy/sportstour/sportstour05.jsp?pSeq=27 2019. 10. 28. 최종검색)

13) 반정화, “장애인 관광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정보네트워크 구축 필요”, 서울연구원, 2018, 2면.

14) Darcy & Dickson, “A Whole-of-Life Approach to Tourism: The Case for Accessible Tourism Experience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Volume16, Issue1, 2009, pp.32~34.

15) Darcy & Dickson, Ibid, p.34.

열린 관광 개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사실상 관광약자들을 위한 장애 관광, 시니어 관광 등의 개별적 정책 개선이 이루어져왔다. 이러한 점에서 열린 관광은 무장애관광측면에서 유래하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다.

무장애(barrier free)의 의미는 ‘장벽이 없는’, ‘장애물이 없는’이라는 단어상의 의미를 뛰어넘는다. 특히 사회 환경 개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무장애는 사회적 태도와 문화적 장벽 등 우리 사회가 영·유아, 아동, 임산부, 장애인, 고령인 등에 대해 가지게 되는 편견 혹은 배제, 제한과 같은 모든 차별이 없는 것을 의미한다.¹⁶⁾

열린 관광은 접근 가능한 관광, 무장애 관광이 최근 물리적·사회적·제도적·심리적 장벽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로 확장되면서 이들과 동일한 의미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접근 가능한 관광에 따르면 열린 관광은 “이동성, 시각, 청각, 인지 측면의 결핍으로 여행상품, 서비스 환경에 접근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이 독립적이고 평등하게 관광권을 향유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된 여행상품,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행위”¹⁷⁾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접근성에 대한 특별한 욕구를 가진 사람들이 장애물이거나 문제에 직면하지 않고 휴가나 여가 시간을 즐기도록 하는 일련의 서비스와 시설(물리적 환경, 교통수단, 정보, 의사소통 등)의 총체”¹⁸⁾이기도 하다.

쉽게 말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객, 어린이, 외국인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자유로운 관광’이라 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열린 관광지는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동반가족 등 관광객의 유형에 상관없이 그들이 이동이나 관광 활동에 있어 제약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16) 고통완 외 6인(경기대학교 산학협력단),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6, 11면.

17)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 2016, 3면.

18) 국가인권위원회, 위의 토론회 자료, 3면.

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는 관광지를 의미한다.¹⁹⁾

이러한 열린 관광은 초기의 무장애 관광이 관광약자를 배려하는 복지정책 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관광약자만을 위한 배려차원으로 이해하기 보다는 국제기구들이 밝히고 있는 바와 최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춰 인간의 기본적 권리인 관광이 모든 사람에게 보장되는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그 의미를 이해해야 한다.

이러한 인식과 관심은 2005년 국제사회에 ‘Accessible Tourism for all(모두를 위한 접근 가능한 관광)’이 등장하면서, 단순히 관광약자를 위한 부분적 배려를 넘어 모든 사람의 여행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시작되었다.²⁰⁾

이후, 2016년에 발행된 ‘Recommendations on Accessible Information in Tourism’과 같이 UNWTO에서는 접근 가능한 관광 매뉴얼 및 권고를 발행하였다.²¹⁾

이처럼 UNWTO가 ‘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공식적으로 의제화한 이후 EU에서는 비영리기관 ENAT를 중심으로 접근 가능한 관광 관련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EU 각국에서는 이와 관련한 정책의 추진과 국내 입법화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두를 위한(for All)’, ‘접근이 쉬운(Accessible)’ 관광의 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간/공공 영역의 역할과 협업, 법과 정책적 이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열린 관광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 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9) 정병욱, “모두가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열린 관광지 추진 현황과 과제”, 『한국관광정책』, 제60호, 2015, 86면.

20)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5면.

21) 2016년 2월 UNWTO에서는 Recommendations on Accessible Information in Tourism를 발행하였으며, 이는 <http://cf.cdn.unwto.org/sites/all/files/docpdf/accesibilidad2016webennuevoaccesible.pdf>에서 확인 가능함.

제2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 추진 현황

1. 열린 관광의 필요성

(1) 사회적 차원의 관광복지와 권리 보장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는 관광복지의 확대이다. 정부는 ‘국가 관광 전략회의’에서 ‘쉽표가 있는 삶, 사람이 있는 관광’이라는 새로운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서 취약계층 관광지원을 포함한 생애주기별·계층별 관광지원, 관광산업 규제 및 성장지원, 미래를 위한 법·제도 정비 등의 세부 과제를 세웠다.²²⁾

열린 관광은 나이, 성별,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관광으로 위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실현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정부에서는 열린 관광을 통해 과제 실현 및 관광복지 증진을 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정 과제 제시는 아직까지 표면적인 부분일 뿐, 관광 약자를 위한 법률 시행 외 실제 관광활동을 위한 지원 및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편의증진 법률과 같은 법률이 시행되고 있으나 법률이 시행되고 있음에도 사회적 제도와 부족한 정보, 이동권, 접근권 그리고 여행사의 여행상품 부재 등 관광에 있어 다양한 차별을 느끼고 있다.²³⁾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제약은 관광약자의 관광 동반자인 친구, 가족, 보호 단체에게도 동일한 관광제약을 부여하는 것으로 이러한 관광의 제약으로 인한 차별들은 광의적으로 보면,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

22) 문화체육관광부, [홈 - 주요정책 - 정책홍보 - 홍보물 - 관광진흥기본계획(2018. 7. 19.)], (https://www.mcst.go.kr/kor/s_policy/subPolicy/sportstour/sportstour05.jsp?pSeq=27 2019. 10. 13. 최종검색)

23)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상반기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2018, 17~18면.

현대의 관광은 삶의 질 향상이라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기도 하며,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인간은 자신의 일상생활 내에 큰 영역을 할애하고 있다.²⁴⁾

특히, 관광은 누구나 참여 가능한 일반적인 행동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관광은 이제 모든 이에게 보장되는 권리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의 관광 활동을 보장하면서 그들의 동반자, 더 나아가 모든 이들에게 자유로운 관광을 가능케 하는 열린 관광은 더 이상 배려차원이 아닌 반드시 이뤄져야하는 사회적 차원의 전제조건이다.

(2) 국내 관광시장 확대와 성장

2018년 만 15세 이상의 국민 89.2%가 국내여행을 경험하였다.²⁵⁾ 다시 말해, 10명 중 9명이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이다. 이 중 60대는 91.4%이며, 70대 이상은 71%로 3분의 2 이상의 고령층이 국내여행을 경험하고, 1년 내 여행경험 횟수는 각각 약 7회, 4회이다.²⁶⁾

영유아 동반 여행은 여행횟수가 2013년 8회, 2015년 13.8회 그리고 2017년엔 15.9회로 횟수가 압도적으로 많고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영유아 동반 여행은 관광체험 활동의 비율이 높은 시장으로 분석되고 있다.²⁷⁾

장애인의 경우, 국내 관광 경험률은 2008년 43.3%, 2011년 43.5% 그리고 2017년 47.8%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나 국내 당일 여행 횟수를 보았을 때, 2007년 2.7회, 2011년 3.6회 그리고 2017년 4.2회로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⁸⁾ 또한 지난 2012년 장애인 40.7%가 앞으로 하고 싶은 문화생활로 여행을 선택하기도 하였

24) 한국장애인개발원, 위의 보고서, 17~18면.

2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2018, 53~58면.

2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의 보고서, 53~58면.

27) 조아라,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관광정책』, 제75호, 2019, 48면.

28) 조아라, 위의 논문, 48면.

다.²⁹⁾ 비슷한 맥락으로 한국소비자원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여행을 희망하는 장애인의 비율은 93.1%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³⁰⁾

이렇듯, 관광약자로 구분되는 고령층과 영유아 동반자, 장애인들의 관광에 대한 기여도가 점차 상승할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주목해야할 관광 수요층은 장애인 관광객과 고령층의 관광객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등록 장애인 수는 2018년도 기준 약 258만 5900명으로 우리나라 인구 대비 높은 수를 차지하고 있다.³¹⁾ 또한 우리나라는 이미 2015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였으며, 2025년에는 65세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해외 고령 관광객도 이에 맞춰 증가하고 추세이다.³²⁾

하지만 현재의 국내 관광 인프라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관광약자들에게 적합한 수준의 구축이 이루어져있지 않다고 판단된다. 열린 관광 실현을 위해 실제 국내 관광지의 시설 개선을 통한 접근성 제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 서비스 확충, 관광지와 관광지의 자원 및 관련 시설에 대한 누구나 이해하기 쉽고 풍부한 정보 제공 등이 이루어진다면 제한 없이 이들을 수요층으로 포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러한 소비층의 확대는 관광시장의 확대로 인한 일자리 창출은 물론, 변화해가는 미래 인구계층에 대비할 수 있는 관광시장 구축을 이끌어내 세계 관광시장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회까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29)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39면.

30)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보도자료, [홈 - 소비자뉴스 - 보도자료(2015. 4. 20.)], (http://www.kca.go.kr/brd/m_32/view.do?seq=1788&srchFr=&srchTo=&srchWord=%EC%9E%A5%EC%95%A0%EC%9D%B8%C2%A0%EC%97%AC%ED%96%89&srchTp=0&itm_seq_1=0&itm_seq_2=0&multi_itm_seq=0&company_cd=&company_nm=&pitm=10&page=1 2019. 10. 28. 최종검색)

31) 보건복지부, 장애인 등록 현황(2018년 12월말 기준), [홈 - 정보 - 현황(2019. 4. 16.)],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 2019. 10. 13. 최종검색)

32) KOSIS 국가통계포털, 국제통계연감: 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홈 - 주제별 국제통계 - 영토, 인구], (<http://kosis.kr/search/search.do> 2019. 10. 13. 최종검색)

다시 말해, 열린 관광은 사회적 차원의 관광복지와 권리 보장을 실현할 뿐만 아니라 한국 관광의 글로벌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할 수 있다.

2.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구성과 주요 내용

(1) BF(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각국 선진도시에서는 관광에서의 물리적·심리적 장벽을 없애면서 관광의 활성화를 돕는 Barrier Free(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이하 BF)와 Universal Design(유니버설 디자인)을 시행 중이며³³⁾, 이는 모든 이들이 이동과 관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 필요한 제도이다.

우리나라 또한 BF 인증제도를 시행 중이며 국토해양부와 보건복지부의 주관으로 장애인,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의 시설 접근 및 이용과 이동권 보장을 시작으로 현재는 어린이,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까지 대상이 확대되었다.³⁴⁾

인증대상은 개별시설의 경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에 따른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가 포함된다.³⁵⁾ 지역의 경우에는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의2에 따른 지역이 포함되며, 여기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제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은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아야 한다.³⁶⁾

33) 김인순 외 5인,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4면.

34) 이규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고찰”, 『재활복지』, 제16권 제2호, 2012, 162면.

35)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BF 인증 개요, [홈 - 인증제도안내 - BF 인증개요], (<https://bf.koddi.or.kr/ind ex.aspx>, 2019. 10. 6. 최종검색)

36)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위의 BF 인증 개요와 동일.

이러한 BF 인증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그리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근거해 2008년부터 시행되어졌으며, 2010년에 국토해양부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으로 인해 인증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근거가 마련되었다.³⁷⁾

인증의 종류는 예비인증과 본인증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예비인증은 설계가 완료된 뒤 신청하고, 본인증은 공사 준공 후에 신청해야 한다.³⁸⁾ 인증유효기간은 본인증의 경우, 5년이며 예비인증은 본인증 전까지는 효력 유지가 가능하나 개별시설 및 지역 조성 등이 완료, 허가된 후에는 1년 내에 본인증을 신청하지 않으면 예비인증 효력이 상실된다.³⁹⁾

인증등급은 최우수등급, 우수등급 그리고 일반등급 총 3등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인증등급의 부여에는 인증 기준의 항목별 최소기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⁴⁰⁾

[표 2] 인증 등급별 평가점수 기준

등 급	평가점수
최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90 이상
우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80이상 100분의 90 미만
일반등급	인증 기준 만점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80 미만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홈페이지(<https://bf.koddi.or.kr/index.aspx>)

37)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도자료, [홈 - 알림 - 보도자료(2015. 5. 14.)],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CONT_SEQ=322352&page=45 2019. 10. 28. 최종검색)

38)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위의 BF 인증 개요와 동일.

39)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위의 BF 인증 개요와 동일.

40) Barrier Free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위의 BF 인증 개요와 동일.

한국장애인개발원의 BF 인증제도에 대한 보고서에 따르면, BF 인증제도의 인증 실적은 대상종류별 건축물, 여객시설, 공원, 도로, 지역 5개의 분류로 나뉘었을 때, 총 2292개 중 건축물이 2182개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에 비해 도로와 지역은 각 8개와 1개로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⁴¹⁾ 총 실적은 2015년부터 확연히 늘어나고 있는데⁴²⁾, 이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만드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필수로 인증 받아야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3] BF 인증제도 인증 실적

구분	합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 종류별	2292	4	18	45	96	115	126	155	188	629	1213	996
건축물	2182	4	16	39	82	111	115	138	175	600	926	645
여객 시설	91	-	-	3	13	1	10	14	11	26	14	12
공원	10	-	-	3	-	-	1	3	-	3	-	1
도로	8	-	1	-	1	3	-	-	2	-	1	-
지역	1	-	1	-	-	-	-	-	-	-	-	-

* 본인증과 예비인증 합계이며 2018년 9월초 기준임.

출처: 한국장애인개발원(2018),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를 참고하여 재구성

41) 김인순 외 4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3면.

42) 김인순 외 4인, 위의 보고서, 3면.

(2) 이동편의 서비스 제공 및 지원

1) 누림카·누림버스 이동편의 서비스 개요

열린 관광 시대가 도래하였지만, 관광약자에 대한 관광여건은 여전히 열악하다. 한국소비자원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국내 장애인들의 국내 여행 여건에 대한 불편 및 원인으로 74.1%가 ‘장애인 이동 편의시설 부족’을 꼽았다.⁴³⁾ 관광을 이뤄주는 ‘이동’이 불가능한 현실인 것이다.

이의 해결을 위해 정부에서는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를 도입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철도이용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⁴⁴⁾

따라서 사실상 교통약자들은 지역 간 이동 시, 시내버스를 제외 위의 철도만 이용 가능한 실정기에 지자체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행 중에 있으며,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8호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증진할 것이라 밝혔다.⁴⁵⁾

이러한 지자체의 이동편의 서비스 지원사업 중 하나인 누림카와 누림버스는 장애인의 관광을 위해 무료로 지원되는 차량사업으로 경기도 누림센터에서 수행되며⁴⁶⁾, 여기서 누림센터는 장애인의 선택과 권리를 존중하면서 그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돕는 센터로 경기도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허브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서도 유사한 버스지원 사업은 존재하지만, 누림카와 같이 단체 관광 목적 외에 개인 관광을 위한 차량까지 지원하는 사업은 아직까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또한 열린 관광은 사회변화에 빠르고 민감하게 변화함으로 신생사업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조사 당시 사업 시행 햇수로 5개월 차인 경기

43) 한국소비자원, 위의 2015년 4월 20일자 보도자료.

44)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016, 13면.

45) 국토교통부, 위의 계획, 13면.

46)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 - 주요사업 - 경기여행누림 - 이용안내 - 경기여행 누림카, 누림버스], (<https://www.ggnurim.or.kr/PageLink.do> 2019. 10. 28. 최종검색)

도 누림카와 누림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누림카와 누림버스의 이용은 비록 경기도내 여행지로 제한되어져 있지만 누림카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휠체어 1석, 일반 5석 장애인 동반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누림버스도 휠체어 리프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휠체어 8석, 일반 21석의 차량임. 각 차량 수는 누림카가 2대, 누림버스가 4대이다.⁴⁷⁾ 이용기간은 누림카와 누림버스 동일하게 경우 1회 최대 3박 4일, 연간 10일 이용 가능하다.⁴⁸⁾

누림센터 홈페이지에 따르면, 신청절차는 누림카의 경우 이용신청서, 이용명단 등의 서식과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 등을 통해 신청을 한 뒤, 예약 대기 상태에서 운전면허증 사본과 운전경력증명서를 다시 제출하면 최종 승인이 이루어진다. 누림카 이용 후에는 여행을 증명하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누림버스의 경우에는 누림카 신청절차와 유사하나 사업계획서와 여행자보험 가입 증서가 필요하며, 자세한 절차는 아래와 같다.⁴⁹⁾

[표 4] 누림카·누림버스 신청절차

구 분	차량신청	예약대기	최종 승인
누림카	이용신청서 이용명단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운전면허증 사본 운전경력증명서 (전체 경력 필요)	예약확정 및 결과 안내 ※7일 이내에 서류 미제출시 자동 취소 ※누림카 이용 후 여행 중 촬영사진, 입장권, 영수증 등 증빙자료 제출
누림버스	이용신청서 고유번호증 사업계획서 이용명단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여행자보험 가입 증서	예약확정 및 결과안내 ※7일 이내에 서류 미제출시 자동 취소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센터 누림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구성(www.ggnurim.or.kr)

4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위의 이용안내 자료.

48)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위의 이용안내 자료.

49)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위의 이용안내 자료.

이는 올 6월 1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6월 약 한 달간의 시행 분석에 따르면 만족도가 30점 만점에 29.3점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⁵⁰⁾ 6월 누리버스에 대한 운영실적은 아래와 같다.

[표 5] 누리버스 6월 운영실적

운영횟수	신청기관수	총 이용인원	휠체어 이용인원	여행지역
16회	12기관 (남부 10기관, 북부 2기관)	254	29명(11.4%)	8개 시군 (남부 6기관, 북부 2기관)

출처: 경기도복지재단(2019), 장애인 여행, 실태와 과제를 참고하여 재구성

(3)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

열린 관광지가 조성되기 전인 2013년, 당시 등록 장애인 수는 250만 명이었으며 65세 이상 고령자를 합치면 약 600만 명 이상이 열린 관광지 환경을 필요로 했다.⁵¹⁾

그럼에도 2012년 한국관광공사의 조사에 따르면, 관광안내소 및 매표소에 있는 창구의 높이가 휠체어 이용자들의 눈높이와 적당한 수준의 높이인 관광지는 54.6%였으며, 숙박 시설 주출입구에 턱이 존재하지 않는 관광지는 52.1%로 나타났다. 장애인 전용 화장실의 경우, 숙박시설 설치율이 66.2%로 나타났지만 실제로 편리한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27.7%로 매우 저조했다.⁵²⁾

이러한 현실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2015년부터 지금까지 햇수로 5년 째 ‘열린 관광지’ 조성 사업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50)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여행, 실태와 과제”, G-Welfare Brief, 제4권, 2019, 11면.

51) 문화체육관광부,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만든다”, 보도자료, [홈 - 알림소식(2014. 12. 23.)],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3963 2019. 10. 28. 최종검색)

52)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보도자료.

여기서 열린 관광지란 장애인, 노인, 영유아를 동반하는 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과 관광 활동에 있어 제약이 없도록 조성해가는 관광지를 의미한다.⁵³⁾

이는 전 국민의 차별 없는 관광 환경을 조성하여 관광향유권을 보장함을 물론, 미래 관광산업의 수요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관광지이다.

지금까지 선정된 열린 관광지는 총 53개소로 사업시행 첫 해인 2015년에는 6개의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며 2016년과 2017년에도 비슷한 개수의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나, 2018년 12개, 2019년은 24개로 2018년 이후 두 배씩 선정 관광지 개수가 늘어나고 있다.⁵⁴⁾

[표 6] 열린 관광지 선정 현황

구 분 (년 도)	선정 관광지	개 수
2015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보문관광단지, 용인 한국민속촌, 대구 중구 근대골목,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 케이블카	6개
2016	정동진모래시계공원, 당항포관광지, 선운산도립공원, 대전해수욕장, 오동도	5개
2017	삼탄아트마인, 삼례문화예술촌, 태화강 십리대숲, 대가야 역사 테마관광지, 세미월, 천지연폭포	6개
2018	아산 외암마을, 갯골생태공원, 망상해수욕장, 무주 반디랜드, 함양 상림공원, 해운대해수욕장·해운대온천,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 부여 궁남지, 해양공원 (이수신광장, 하멜전시관, 자산공원, 진남관), 영광 백수해안도로, 산청전통한방 휴양관광지, 대장경기록문화테마파크	12개
2019	남이섬, 물길로, 소양강 스카이워크, 박사마을 어린이 글램핑장, 전주한옥마을, 오목대, 전주향교, 경기전, 남원 관광지, 국악의 성지, 지리산 허브밸리, 백두대간 생태교육장 체험관, 방화동 가족휴가촌·자연휴양림, 장수누리파크, 와룡	24개

53) 정병욱, “모두가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열린 관광지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관광정책』, 제60호, 2015, 86면.

54)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열린 관광지 선정 관련 2015-2019년간의 보도 자료를 모두 참고, [홈·‘열린 관광지 선정’으로 검색 - 알림 소식], (<https://www.mcst.go.kr/kor/main.jsp> 2019. 10. 28. 최종검색)

구 분 (년 도)	선정 관광지	개 수
	자연휴양림, 뜬봉샘 생태관광지, 김해가야테마파크, 낙동강레일파크, 봉하마을, 김해한옥체험관, 서귀포 치유의 숲, 올레7코스, 서북전시관, 성산일출봉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열린 관광지 선정 관련 2015~2019년간의 보도 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
(<https://www.mcst.go.kr/kor/main.jsp>)

위와 같은 열린 관광지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열린 관광지 공모에 참여해야하며, 무장애 관광, 건축 등의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서면과 현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⁵⁵⁾

공모대상은 4~10개소의 국내 관광지, 식음료시설, 숙박시설 등 장애물이 존재하지 않는 관광코스에 포함될 수 있는 관광지점으로 구성된 ‘관광권역’으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기초자치단체 내의 최소 4개소 최대 10개소의 관광지점을 하나의 관광권역으로 통합하여 신청해야 한다.⁵⁶⁾

선정된 관광지에 대한 지원으로는 2019년 공모전에 따르면, 관광지점 개소당 국비 1.6억 원의 금액이 지원되며, 관련 전문가의 검토와 무장애 동선 조성, 홍보물 제작 등의 사업지원이 제공된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와 같다.⁵⁷⁾

55)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보도자료, [홈 - 알림소식(2019. 5. 8.)],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4200, 2019. 10. 28. 최종검색)

56)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보도자료.

57) 위의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보도자료.

[표 기 열린 관광지 지원 내용

구 분		내 용
국비	자본 보조	① 시설 개선: 주차장, 매표소, 관광지점 내 주요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 등 필수 이용시설을 연령·장애와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및 표지판 설치
지방비	자본	② 동선개선: 주차장, 매표소, 관광지점 내 주요 체험시설, 편의시설, 화장실까지의 이동 동선의 단차제거, 경사완화, 접자블록 설치, 비상등 설치 ③ 특화 콘텐츠 조성: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체험시설 조정
	경상	④ 안내도 제작: 이용자가 열린 관광지 사업으로 조성된 시설 및 동선의 내용과 위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열린 관광 안내도를 제작, 관광지 및 이용 가능한 시설에 대한 내용을 접자 안내도로 제작 ⑤ 특화 프로그램 개발: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동반가족에게 특화된 1회성 행사가 아닌 관광 프로그램 개발 ⑥ 종사자 교육: 열린 관광지 종사자와 해당 지자체 관광 담당 공무원 및 문화관광해설사 대상으로 열린 관광 교육 실시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9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를 참고하여 재구성(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4200)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에는 열린 관광 환경 조성사업을 확대하기로 하였다.⁵⁸⁾ 전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은 약 38억 원에서 64억 원으로 대폭 확대될 예정이며, 열린 관광지 선정 후, 입장부터 퇴장까지의 주요 동선 및 화장실, 주차장 등의 편의 시설 접근성 개선을 위해 19년 개소당 1.6억 원이던 지원금액을 개소당 2.5억 원으로 금액을 늘릴 예정이다. 또한 배리어프리(BF) 및 유니버설디자인(UD)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조성 후 나눔여행을 통해 홍보마케팅을 하는 등의 확장된 계획을 세우고 있다.⁵⁹⁾

58)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4,758억 원 편성”, 보도자료, [홈 - 알림소식(2019. 8. 29.)], (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429 2019. 10. 28. 최종검색)

59)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4,758억 원 편성” 보도자료.

[표 8] 열린관광 환경 조성 2019년 예산과 2020년 정부안

사업명	2019 예산(A)	2020 정부안(B)	증감(B-A)	
열린 관광 환경 조성	3,796	6,426	2,630	69.3%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내년도 예산안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재구성(https://www.mcst.go.kr/kor/s_notice/press/pressView.jsp?pSeq=17429)

열린 관광지는 각 지자체의 홈페이지나 홍보물 외에도 한국관광공사가 제공하는 VisitKorea (대한민국구석구석)에서 전국 열린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종합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⁶⁰⁾

홈페이지에서는 모두를 위한 여행을 위한 팁, 장애인 추천코스과 영유아 추천코스 등의 추천코스과 열린 관광 관광지의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편의시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수유실 유무, 휠체어 진입가능 여부 등의 관광제약에 관한 정보 등을 정리해 열린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4) 관광 종사원 교육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관광지 253곳을 대상으로 2010년도에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관광 교육을 실시하는 관광지는 1곳밖에 없었다.⁶¹⁾ 매뉴얼은 있지만 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관광지는 1곳, 매뉴얼은 없지만 교육만 실시하는 관광지가 18곳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실에 서울시의 다누림관광센터에서는 2018년에 ‘무장애 관광 서비스 및 인식개선 매뉴얼’을 발간하였다.⁶²⁾ 관광현장에서 실제로 쓰일 수 있는 관광 약자에 대한 서비스 응대 방법에 대한 매뉴얼은 다누림관광센터의 매뉴얼이 처음이었다.

60) VisitKorea대한민국구석구석, 열린관광 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other/otherService.do?otdid=b55ffe10-84c3-11e8-8165-020027310001> 2019. 10. 28. 최종검색)

61)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30면.

62) 서울다누림관광, [홈 - 다누림관광자료실 - 인식개선매뉴얼], (<https://www.seouldanurim.net/www/educationInfo/improveAwareness.jsp> 2019. 10. 28. 최종검색)

다누림관광센터는 무장애 관광 정보 제공, 관광 종사자 인식 개선 교육, 무장애 관광 콘텐츠 개발, 다누림관광버스 지원 등을 맡고 있다.⁶³⁾

매뉴얼에는 관광안내소, 관광지, 숙박시설, 교통편 등 관광에 필요한 요소들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상황별 바람직한 관광 서비스 응대방법을 소개하고 있다.⁶⁴⁾

이에는 장애로 인해 관광의 어려움을 겪는 관광약자부터 문화적, 종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관광객에 대한 응대까지 담겨있으며, 관광약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원칙도 담겨있는데 무장애관광 안내 시, 지켜야 할 기본원칙으로 인권존중 원칙, 직접성 및 적시성 원칙, 분리금지 원칙, 의사소통 수단의 다양성 원칙, 최소설비의 원칙 총 5가지의 원칙이 적혀있다.⁶⁵⁾

서울시는 이 매뉴얼을 관광안내소, 숙박시설, 식음료시설 등의 주요 관광지 시설 1,000여 곳에 배부하고 매뉴얼 내용을 중심으로 관광 종사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시행하였다. 교육은 전문 강사가 실시하며 서울시 관광협회 주관의 관광종사자 집체 교육시에 실시되고 있다.⁶⁶⁾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 매뉴얼을 활용해 전국 관광지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무장애 관광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⁶⁷⁾

마지막으로 사업 이행을 위해서도 교육을 실시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돌봄 여행’의 경우에는 장애인 관광 인력은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부서 자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증거를 남기거나 정부 교육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하고 있다.⁶⁸⁾

63) 서울다누림관광, (<https://www.seouldanurim.net/www/index.do>에서 확인 가능, 2019. 10. 28. 최종검색)

64) 서울다누림관광, 위의 인식개선매뉴얼자료.

65) 서울다누림관광, 위의 인식개선매뉴얼자료.

66) 에이블뉴스, 2018. 11. 6., “서울시, ‘무장애관광 서비스·인식개선 매뉴얼’ 발간”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81106114020844155>
2019. 10. 9. 최종검색)

67) 웰페어뉴스, 2018. 11. 7., “무장애관광 서비스 관광약자 응대 이렇게”,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721> 2019. 10. 28. 최종검색)

68)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162면.

3.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 사항

(1) BF 인증제도의 문제점

BF 인증제도는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만드는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시설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⁶⁹⁾

하지만 위에 해당하는 신축 관광지의 소유주가 국가, 지자체가 아닌 경우 그리고 국가나 지자체일지라도 민간사업자의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현실이다.⁷⁰⁾

또한 실적은 법 개정 이후 확연히 늘어났지만 도로, 지역은 합이 9개로 현저히 낮은 실적을 보이고 있다.⁷¹⁾

이 중 도로의 낮은 실적은 국회입법조사처의 2018 현안 분석 보고서에서도 지적된 사안으로⁷²⁾ 관광은 ‘이동’을 전제로 하기에, 이는 열린 관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기에 주의해야할 부분이다.

이러한 도로에 대한 낮은 실적은 BF 인증제도의 도로 지표가 타인증과의 관계, 관련 법과의 관계가 적절하게 적용되어있지 않아 발생한 문제로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⁷³⁾

특히,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그리고 지역 등에 대한 BF 인증제도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⁷⁴⁾

69) 김대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5면.

70)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상반기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2018, 15면.

71) 김인순 외 4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3면.

72) 김대명, 위의 보고서, 1면.

73)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 2018, 267면.

7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에 따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

이동과 접근의 가장 토대가 되는 ‘도로’는 열린 관광에 있어서도 필수 관광 요소 중 하나이다. 따라서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선 BF 인증제도의 지표 타당성과 관련 법적합성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2) 이동편의 서비스(누림카·누림버스)의 문제점

올 6월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누림카와 누림버스 이동편의 서비스는 긍정적 운영실적을 보이고 있으나⁷⁵⁾ 이용신청에 있어 불편적인 차량대여에 비해 다소 절차가 복잡하다.⁷⁶⁾

또한 10월 08일 누림카와 누림버스 사업을 수행 중인 누림센터에서 차량 예약 확인 시, 10월 셋째 주까지 대부분의 차량이 예약이 만료되어있으며 연말인 12월의 경우에도 누림카는 이미 잔여 차량이 첫째 주를 제외하곤 존재하지 않았다. 이렇듯 만족도만큼이나 이용수요가 높는데 반해 차량의 수는 누림카와 누림버스를 합쳐 총 6대로 매우 적은 현실이다.⁷⁷⁾

누림카와 누림버스 사업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지금 당장 모든 차량과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의 시설을 개조하거나 개조에 대해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상황에 좋은 대안으로 사료된다.

현재 다른 지자체에도 유사한 장애인 버스지원 사업이 있지만, 누림카와 같은 단체관광이 아닌 개인 관광을 위해 사용하기 적합한 차량을 지원하는 사업은 많지 않으며 특히나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어 운영되는 곳은 그 수가 적다.

경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75) 경기복지재단, “장애인 여행, 실태와 과제”, G-Welfare Brief, 제4권, 2019, 11면.

76)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 - 주요사업 - 경기여행누림 - 이용안내 - 경기여행 누림카, 누림버스], (<https://www.ggnurim.or.kr/PageLink.do> 2019. 10. 28. 최종검색)

77)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위의 이용안내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차의 복잡함과 차량 수 부족 외에도 누리카의 이용이 경기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큰 문제점이 존재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5시간이 걸리는 것을 고려했을 때, 최대 3박 4일까지 대여할 수 있음에도 경기도 내에서의 이용은 관광제약으로 인한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의 열린 관광지가 계속하여 증가하는 현재, 차별 없이 모든 이용자가 즐길 수 있는 관광을 위해선 관광지로의 이동에 대한 편의를 돕는 차량서비스의 개선은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의 문제점

열린 관광지는 2015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공모를 통하여 선정되어 현재 53개소의 관광지가 선정되었으며, 2019년 올해에는 무려 24개의 관광지가 선정되기도 하였다.⁷⁸⁾ 또한 2020년에는 열린 관광지 조성사업이 확대되어 개소당 1.6억 원의 지원 금액이 개소당 2.5억 원으로 늘어날 계획이다.⁷⁹⁾

이렇듯, 관광약자들의 관광제약을 없애고 그들의 자유로운 관광과 관광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각 지자체는 정책을 통해 열린 관광을 실현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접근성 개선을 위해 선정된 열린 관광지의 개·보수에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들어갔음에도 사실상 유지·관리에 대한 명확한 방안은 계획되어있지 않다.

그 예로, 2018년도에 선정된 시흥갯골생태공원은 이미 열린 관광을 위한 개선이 이루어졌음에도 여전히 관광 장애물이 존재하고 있다. 전기자동차에는 휠체어 리프트가 아닌 가파른 경사도가 설치돼 있으며, 배수로 덮개는 수동 휠체어 앞바퀴가 빠질 정도로 공간

78)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서 열린 관광지 선정 관련 2015-2019년간의 보도 자료를 모두 참고, [홈 - ‘열린 관광지 선정’으로 검색 - 알림 소식], (<https://www.mcst.go.kr/kor/main.jsp> 2019. 10. 28. 최종검색)

79) 문화체육관광부, 위의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보도자료.

이 넓다. 심지어 휠체어 사용 장애인의 경우, 6층 나선형 전망대의 경사도가 가팔라 1층까지만 접근이 가능하다.⁸⁰⁾

또한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에서는 작년 2018년도에 장애인 관광환경 분석을 위해 열린 관광지로 지정된 순천시 순천만습지공원, 용인 한국민속촌, 통영시 한려수도케이블카, 곡성군 섬진강기차마을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곳 모두 열린 관광지 안내 팸플릿을 구할 수 없었다. 해당 관광 안내소 직원은 해당 관광지가 열린 관광지로 지정된 점과 안내 팸플릿이 있다는 점조차 알고 있지 않았다. 점자 안내책자는 섬진강기차마을 정문 관광안내소에만 비치되어 있었다.⁸¹⁾

통영 한려수도케이블은 케이블카 상부시설에서 미륵산 정상까지 총 7개의 전망대와 2개의 쉼터가 있음에도 모두 계단으로만 접근 가능하여 이용이 불가능하였다.⁸²⁾

휠체어 추천 이동로와 경사로에는 연결부분이 단절 혹은 불필요한 턱이 생기기도 했으며, 장애인 화장실은 문이 고장나있고 창고처럼 쓰이는 경우도 있었다.⁸³⁾

문제는 이 뿐만 아니라, 열린 관광지에 대한 종합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VisitKorea 홈페이지도 장애요소 분류별로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 관광지를 알려주는 등의 노력이 있지만 사실상 정보습득 자체에 한계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들을 위한 음성낭독 기능, 확대경, 색상 반전 등의 기능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⁸⁴⁾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관광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임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아래는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 누리집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음성낭독 기능과 확대경 기능을 사용했을 때의 그림이다.⁸⁵⁾

80) 에이블뉴스, 2019. 9. 26., “열린관광지 ‘시흥갯벌생태공원’ 장애인 불편”,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1420190925184404166408> 2019. 10.14. 최종검색)

81)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8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서”, 2018, 35-36면.

82)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위의 보고서, 45면.

83)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위의 보고서, 50면.

84) VisitKorea대한민국 구석구석, 열린관광 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other/otherService.do?otdid=b55ffe10-84c3-11e8-8165-020027310001>)에서 확인 가능, 2019. 10. 28. 최종검색)

85)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 (<https://www.ggnurim.or.kr/>)에서 확인 가능, 2019. 10. 28. 최종검색)

[그림 1] 경기도 장애인 복지 종합 지원센터 누리집의 홈페이지



출처: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집(<https://www.ggunurim.or.kr/>)

이어서 비장애인은 글로벌 OTA들을 통해 여행 시작부터 끝까지 필요한 숙박, 식사, 항공권, 체험, 쇼핑 등이 한 번에 가능하다. 정보획득과 예약·결제까지 원스톱에 가능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전문 여행사를 이용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들이다.

VisitKorea에서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의 URL과 영업시간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야 한다.⁸⁶⁾ 하지만 제공된 URL의 사이트들은 대부분 장애별로 이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

현재는 디지털 시대로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으로 관광이 편리해졌다. 그러나 디지털 시대의 엄청난 정보들과 빛의 속도로 전달되는 통신 기술들은 시각 및 청각 등의 장애를

86) VisitKorea대한민국 구석구석, 위의 열린관광 페이지.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오히려 정보격차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결국 관광의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로 정보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4) 열린 관광을 위한 관광 종사원 교육의 문제점

관광 기업들은 관광객들에게 관광 관련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 상품과 서비스를 전달하는 이들은 관광 종사원이다. 종사원이 얼마나 많은 관광 관련 정보를 갖고, 어떤 인식을 갖고 관광객을 대하느냐에 따라 관광객의 만족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렇기에 관광객의 만족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관광 공급자뿐만 아니라 관광 종사자들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열린 관광은 종사자에게 다소 생소하여 서비스 응대방법에 대해 제대로 인지를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기에 열린 관광 관련 교육은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서비스 매뉴얼을 발간하고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열린 관광에 대한 교육을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사실상 열린 관광 관련 전문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등이 없기에 교육을 실시하는 이 또한 전문가임을 밝힐 수 없고, 관련 교육의 정도와 횟수에 대한 지침 또한 없기에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

관광은 융·복합산업으로 그 산업의 분야가 다양하고 수많은 이해관계자가 존재한다. 또한 관광 중 발생하는 상황은 특정 상황을 규정할 수가 없다. 종사자가 이를 모두 수용하고, 적절한 대처 능력을 겸비하기 위해선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제3장

● 해외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

제1절 서 설

제2절 미국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제3절 프랑스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제4절 네덜란드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제5절 일본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제3장

해외 열린 관광 관련 정책 및 입법 사례

제1절 서설

국내에서 ‘열린 관광’은 그동안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과 같은 시설차원 마련에서의 ‘무장애 관광’과 유사한 개념으로 인식되어 오기도 하였으나, 2015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열린 관광지’ 6곳을 선정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열린 관광지’에 대한 보편적 인식이 시작된 바 있다. 즉, 2015년 3월 18일, ‘순천만 자연 생태공원,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 통영케이블카 등 6개 관광지’가 ‘장애인, 어르신, 영·유아 동반가족 등 모든 관광객이 이동의 불편 및 관광 활동의 제약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해가는 관광지’로서의 열린 관광지로 지정받게 된 것이다.⁸⁷⁾

이처럼, 관광활동 보장과 관련해 국제사회에선 깊은 관심을 가지고 ‘Accessible Tourism(열린 관광, 접근권이 보장된 관광)’ 개념을 기초로 다양한 활동과 원칙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2006년에 UN총회에서 ‘The 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CRPD;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통과되었다.⁸⁸⁾ 이에 각국에서는 이러한 UN CRPD의 준수를 위하여 관련 법제를 제정한 바 있다.

87) 정병욱, “모두가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열린 관광지 추진현황과 과제”, 『한국관광정책』, 제60호, 2015, 86면.

88) United Nations, [Home - CRPD], (<https://www.un.org/development/desa/disabilities/convention-on-the-rights-of-persons-with-disabilities.html> 2019. 10. 28. 최종검색)

프랑스의 경우에는 2005년부터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이 시행되어 오고 있으며, ‘The United Nations World Tourism Organization (UNWTO; 유엔 세계 관광 기구)’에서는 2011년의 선언을 통하여 열린 관광이 책임 있고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 정책의 핵심임을 밝힌 바 있다.⁸⁹⁾ ‘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ENAT)’에서도 ‘Accessible Tourism for All’이라는 윤리강령에 따라 각종 활동을 벌이고 있다.⁹⁰⁾

즉, 열린 관광(Accessible Tourism)이란 일반적으로 관광지에 대한 보편적인 접근, 즉 모든 사람이 어떠한 제약이나 제한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 및 환경을 구축하고 이러한 문화를 장려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서 소개한 ENAT(European Network for Accessible Tourism)에 따르면, 열린 관광에는 아래의 개념들이 포함된다.⁹¹⁾

[표 9] ENAT에 따른 열린 관광 개념

구 분	내 용
접근장벽이 없는(Barrier-free) 목적지	인프라 및 시설
운송	모든 사용자에게 적합한 항공, 육상 및 해상
고품질 서비스	숙련된 직원이 제공
활동, 전시회, 관광 명소	모든 사람이 관광에 참여하도록 함
마케팅, 예약 시스템, 웹 사이트 및 서비스	모든 사람이 접근할 수 있는 정보

출처: ENAT(<https://www.accessibletourism.org>)

아래에서는 열린 관광과 관련된 주요국의 주요 정책과 법제를 소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및 법제 마련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한다.

89) UNWTO, [Home - Areas of work - Accessible Tourism], (<http://ethics.unwto.org/en/content/accessible-tourism> 2019. 10. 28. 최종검색)

90) ENAT, [Home - ENAT Code of Good Conduct], (<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enat-code-of-good-conduct> 2019. 10. 28. 최종검색)

91) ENAT, [Home - about], (<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 2019. 10. 28. 최종검색)

제2절 미국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 개 관

미국에서 열린 관광의 핵심적인 요소인 관광접근권으로서의 ‘접근성’에 대한 기준이 되는 법은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 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다.⁹²⁾

이 법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미국 내에서 새로이 진행되는 공공 및 민간사업 건설은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을 필수적으로 갖출 것이 요구되며, 이러한 미국 장애인법의 제반 규정은 각 주법에 반영되어 미국의 각 주에서는 별도로 접근성에 관한 주별 법률(code)를 마련하고 있다.⁹³⁾

미국에서는 아직까지 열린 관광이라는 개념에 정확하게 입각한 법률, 규정 및 정책이 확인되지는 않지만, 전체적으로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법규들은 확인된다. 특히 각 규정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이동 및 시설 이용이 용이하도록 하는 접근성 차원에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는 관광접근권을 포함한 접근성 관련 규제의 근거로 작용하게 된다.

2. 미국 연방법상의 관련 법제

(1)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한 연방법

1) 「장애인법(ADA)」

미국에서는 위에서 언급한대로 1990년 장애인의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연방법으로 「장애인 법(ADA :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이하, ADA라 함)을 제정하였다.

92) ADA 외에도 장애인 관련 법률은 「Telecommunications Act」, 「Fair Housing Act」, 「Air Carrier Access Act」, 「Voting Accessibility for the Elderly and Handicapped Act」, 「National Voter Registration Act」, 「Civil Rights of Institutionalized Persons Act」,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Rehabilitation Act」, 「Architectural Barriers Act」 등이 있다.

93) ADA, “What i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Home - ADA], (<https://adata.org/learn-about-ada>, 2019. 10. 28. 최종검색)

ADA는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국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Civil Rights Act of 1964」를 모델로 하여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권리 보장 및 기회 제공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 중에서도 가장 다양한 분야를 규제하고 있다.⁹⁴⁾

아래에서는 ADA에 관한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로 한다.

2) ADA의 주요 내용

가. 서 설

ADA는 1990년 제정된 법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고용의 기회, 물품 및 서비스 구매 또는 주 또는 지방 정부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다른 이들과 마찬가지로 미국인으로서 누릴 수 있는 삶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광범위한 법률이다.⁹⁵⁾

ADA는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장은 공공생활에서의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해 규정한다.⁹⁶⁾

ADA는 장애인에 대하여 적용되는 법으로, ADA는 장애인을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해 중요 생활 활동을 함에 있어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거나, 그러한 장애를 가진 내역 또는 기록이 있거나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인지되는 사람이라 정의한다.⁹⁷⁾ 여기서 중요 생활 활동(major life activities)이란 스스로를 돌보거나, 걷기, 보기, 듣기, 말하기, 숨쉬기, 일하기, 수동 작업 및 배우기를 포함한 활동을

94) ADA, [Home - Learn about ADA - History of ADA], (<https://www.adainfo.org/ada-information> 2019. 10. 28. 최종검색)

95) ADA, 위의 “What is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96) ADA, [Home - Learn about ADA], (<https://www.adainfo.org/ada-information> 2019. 10. 28. 최종검색)

97) ADA, “Who’s Protected”, [Home - Learn about ADA], (<https://www.adainfo.org/ada-information> 2019. 10. 28. 최종검색)

말한다. 약물치료 또는 보조 장치 등의 도움에도 불구하고 중요 생활 활동을 상당히 제약하는 장애로는 에이즈, 알코올중독, 시각장애, 암, 난청, 당뇨, 약물중독, 심장병 및 정신적 장애 등이 있을 수 있다.⁹⁸⁾

나. 주 정부 및 지방 정부(State and Local Government)

ADA 제2장에서는 정부기관의 규모 또는 연방 지원금의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공공기관의 모든 프로그램, 활동 및 서비스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하고 있으며 본 규정은 모든 주 및 지방 정부, 관련 부서 및 기관, 기타 다른 기관 또는 주내 특별자치구역 또는 지방정부에 적용 된다.⁹⁹⁾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대중교통시스템에 대해 개정된 1973년 the Rehabilitation Act 제504조의 적용을 받는 대중교통서비스인 도시버스 및 공공 철도 수단(예를 들어, 지하철, 통근열차, 고속열차) 관련 기관들은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접근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¹⁰⁰⁾

제2장에서는 자체평가 및 계획을 위한 요구사항, 차별을 없애기 위해 요구되는 경우 정책, 관행 및 절차를 합리적인 수준에서 개선하기 위한 요건을 포함하여 건축 상 장애물 (architectural barriers)¹⁰¹⁾ 및 청각, 시각 및 언어 장애를 가진 사람들과의 효과적인 대화의 필요성을 포함하여 준수해야 하는 행정적 절차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¹⁰²⁾

98) ADA, 위의 “Who’s Protected”.

99) ADA, [Home - Learn about ADA - Employers - State and Local Governments], (<https://www.adainfo.org/employers> 2019. 10. 28. 최종검색)

10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3, p.86(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onsumers/disabled_bookmarks.pdf? 2019. 10. 28. 최종검색)

10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7.

10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7.

(가) 일반규정

a. 공공기관, 연방지금 수령자 및 연방 정부

ADA는 공공 단체는 장애인이 모든 서비스, 프로그램 및 활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이러한 일반 규정은 주 및 지방 정부에서 운영하는 버스, 기차 및 기타 수송기관뿐만 아니라 그러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 및 정류장에도 적용된다(42 U.S.C. §§ 12132 및 12142-12165).¹⁰³⁾ 1973년 Rehabilitation Act는 또한 연방정부의 재정 지원을 수령한 자 및 연방 기관은 교통서비스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9 U.S.C. §§ 794 및 794b).¹⁰⁴⁾

b. 민간단체

ADA는 또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공중 이용시설에 대하여 개인 클럽 또는 종교시설을 제외하고는 장애인이 이용가능 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42 U.S.C. §12187).¹⁰⁵⁾ 민간단체는 개인이 운영하며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 및 단체 모두를 포함하면서, 민간단체 운영에 의해 공중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버스, 기차 및 택시와 같은 교통시설도 적용대상이다(42 U.S.C. §12181-12189).¹⁰⁶⁾

ADA는 운송을 주업으로 하는 사업체와 운송서비스를 부가적으로 제공하는 민간 단체를 구분하여, 전자의 경우 접근성 관련 요건을 엄격히 지키도록 요구한다(42 U.S.C. §12182 및 12184).¹⁰⁷⁾

10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9.

10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9.

10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0.

10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0.

10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0.

(나) 버스 및 경철도

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버스 및 경철도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모든 버스 및 경철도는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모든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42 U.S.C. §12142).¹⁰⁸⁾ ADA는 기차에 두개 이상의 차량이 있는 경우 공공기관에서 적어도 하나의 차량은 휠체어 이용자를 포함한 장애인이 접근 및 이용 가능하도록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42 U.S.C. §12148).¹⁰⁹⁾

b.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버스

민간에서 운영하는 장거리 버스에 대하여도 동일한 접근성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42 U.S.C. § 12186).¹¹⁰⁾

장거리버스란 승객 좌석 아래에 수화물을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버스로써, 접근 가능한 화장실을 설치함에 따라 좌석수가 줄어들다면 반드시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난간, 휠체어 또는 전동휠체어 사용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미끄럼 방지 바닥 등 다른 시설들을 설치할 것이 요구될 수는 있다(42 U.S.C. §12186; 49 C.F.R. §38.151 et seq.).¹¹¹⁾

운송 사업을 주로 행하는 민간 기업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버스를 운용해야만 하는데 만약 8인승 이하의 버스를 운용하는 경우, 제공하는 서비스 전체를 볼 때 장애가 있는 승객에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한 기업에서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매하여야 한다.¹¹²⁾ 여기서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란, 빈도, 소요시간 및 목적지가 동일하여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42 U.S.C. §12184; 28 C.F.R. §36.202; 49 C.F.R. §§37.103 및 37.105).¹¹³⁾

10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0.

10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

11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

11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

11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

11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

운송서비스를 부수적으로 제공하며 고정 노선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경우, 휠체어이용자를 포함하여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비하여야 한다.¹¹⁴⁾ 그러나 업체에서 16인승 이하 차량을 운용하는 경우, 접근가능성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에서는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장애인에 제공하여야 한다(42 U.S.C. §12182; 49 C.F.R. §§ 37.101 및 37.105).¹¹⁵⁾

(다) 기차 및 기타 철도 차량

a. 공공단체에서 운영하는 내부순환 및 통근 철도

경전철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이 더 큰 철도에 대하여도 적용되며, Amtrak 또는 지역 통근 관련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은 경전철에 적용되는 것과 같은 동일한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 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철도를 운영하여야 한다.¹¹⁶⁾

내부순환철도의 경우 칸마다 휠체어를 세워두거나, 휠체어를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적어도 하나 이상 구비하여야 하며, 칸마다 휠체어 공간을 제공하는 접근 가능한 화장실이 설치되어야 한다.¹¹⁷⁾ 음식서비스를 제공하는 열차의 경우, 장애인이 다른 승객들과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보조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띄어쓰기)(42 U.S.C. §12162; 49 C.F.R. §§37.91 및 37.93).¹¹⁸⁾

b.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철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철도의 경우에도 공중이용시설을 운영하는 다른 사업들과 마찬가지로 접근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으며 민간단체들은 구조적 장벽을 제거하고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스템 및 시설에 변경을 가하거나 이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대안을 제공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42 U.S.C. §12182(b)(2)(A)(iv)).¹¹⁹⁾

11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

11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1~32.

11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2.

11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2.

11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2.

11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2.

(라) 역 및 터미널

a.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교통시설의 경우에도 다른 건물들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의 접근성 요건이 요구된다.¹²⁰⁾ 일반 규정에 더하여, 경전철의 ‘주요 정거장(key station)’의 경우 장애인이 이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¹²¹⁾ 주요 정거장은 평균 이용률의 15%를 초과하는 정거장, 환승 정거장, 다른 운동수단과 연결되는 정거장, 마지막 정거장 및 주요 센터로서의 역할을 하는 정거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선택에 따라 지정된다(49 C.F.R. §37.47-37.51).¹²²⁾

b. 민간기관에서 운영하는 시설

민간에서 운영하는 교통시설은 다른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된 것과 동일한 요건이 적용된다(49 C.F.R. §37.21(a)(2)).¹²³⁾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공중이용시설에 요구되는 것은 (1)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닌 한 정책, 영업 또는 절차 변경, (2) 서비스의 성격을 근본적으로 변경하거나 과도한 부담을 초래하지 않는 한 보조 지원 및 서비스 제공, (3) 쉽게 달성할 수 있는 있는 경우 건축 장벽의 제거, 그렇지 않은 경우 대안방법의 사용이다(28 C.F.R. §36.301-305).¹²⁴⁾

(마) 택 시

택시서비스 제공자는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구비할 것이 요구되지는 않지만, ADA상 차별금지 관련 일반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¹²⁵⁾ 예를 들어, 택시기사는 승차거부, 휠체어 등 기구를 싣는 것을 거부, 또는 장애 관련 장치 및 안내견을 태우는 것을 이유로 더 높은 요금 부과를 통해 장애인을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12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2.

12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자동차가 아닌 차량을 운용하는 택시 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그러한 차량에 대하여 장애인의 접근성이 보장될 것이 요구되지만 다만,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장애인에게 제공된다면 다르다.¹²⁶⁾ 예를 들어, 뱅을 이용하여 공항과 목적지를 오가는 택시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장애인에 대하여 다른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한 뱅을 운용하여도 된다.¹²⁷⁾ 동일한 수준의 서비스란, 스케줄, 운영시간, 요금, 서비스 지역, 서비스 시간 및 요일, 정보의 제공, 예약기능, 인원 또는 서비스 수준에 대한 제약 및 여행서비스에 따른 우선순위 배제 등이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49 C.F.R. §§37.29 및 37.105).¹²⁸⁾

(바) 운 임

연방 기금을 받는 기차나 버스 등 대중교통 시스템은 장애인이나 노인 승객을 위한 특별 요금을 청구해야 하며, 피크시간이 아닌 때의 요금은 피크 시간대 일반 요금의 절반을 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49 C.F.R. §609.23).¹²⁹⁾

(사) 집 행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또는 공공 기관에 의한 차별을 당한 경우 장애인은 다음의 선택권이 있다.¹³⁰⁾ 첫째, ADA하에서 개인은 정부기관이건 민간기관이든 법규를 위반한 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US Attorney General에 고발할 수 있으며, Department of Transportation's Office of Civil Rights에 민원을 제기하여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행동을 취하도록 할 수도 있다(42 U.S.C. §12188; 49 C.F.R. §§27.11 및 37.11; 28 C.F.R. §36.501-36.508).

12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

12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3-34.

13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다. 공중이용시설(Public Accommodations)

제3장에서는 공중이용시설 내 개인 공간상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공중이용시설 호텔, 레스토랑, 판매시설, 병원, 골프코스, 사립학교, 탁아시설, 체육시설, 스포츠시설, 영화관 등 개인이 소유하거나 임대 또는 운영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본장은 건축 변경 또는 신규 건축물의 접근성에 대한 최소 요건을 제시하고 있으며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변경이 가능한 경우, 이미 지어진 시설일지라도 건축물 상의 장애물을 제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¹³¹⁾

(가) 연방건물

ADA는 장애인들의 연방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접근성, 그들이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통과된 이전의 법규들로부터 일부 영향을 받았다.¹³²⁾ ADA는 1968년 8월 12일 이후 연방 자금을 지원받아 디자인, 변경 또는 세워진 빌딩 및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통과되었으며, 법의 적용 범위는 출입로, 문, 공용 구역, 전화, 장애인 경사로, 식수대, 좌석 및 화장실 시설을 포함하여 건물 또는 시설의 모든 부분으로 확대된다.¹³³⁾

연방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모든 공공 프로젝트들은 해당 계획에 적절한 접근 기준을 포함시켜야 하며, ATBCB(Architectural and Transportation Barrier Compliance Board)가 이러한 건축 또는 보수 작업이 관련 기준을 충족시키는지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한다(42 U.S.C. §6705(g)).¹³⁴⁾

131) ADA.gov, “Public Accommodations and Commercial Facilities (Title III)”, [Home - Law/Regulations], (https://www.ada.gov/ada_title_III.htm 2019. 10. 28. 최종검색)

13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7.

13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7.

13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7.

(나) 주 및 지방 건물

ADA는 자격을 갖춘 장애인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혜택, 서비스, 프로그램 또는 활동으로부터 참여를 배제시키거나 그에 대한 기회 제공을 거절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¹³⁵⁾ 즉, 이는 주 또는 지방정부, 정부기관 또는 기타 정부의 대행기관이 개인에게 장애가 없었더라면 관련 혜택 및 서비스를 제공받거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을 장애라는 사유로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42 U.S. C. §§ 12131, 12132).¹³⁶⁾ 정부기구가 장애인에 대하여 그 건물 및 시설, 공공 교통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에의 물리적 접근성을 제대로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ADA에 따라 차별을 행한 것으로 간주 된다.¹³⁷⁾

주 및 지방정부는 그 시설 또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역사적 건물의 특성에 반하거나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프로그램의 성질이 근본적으로 변경되거나 과도한 재정적 또는 행정적 부담이 초래되는 경우 주정부 및 지방 정부는 건물에 수리하는 대신 다른 대체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¹³⁸⁾ 여기서 다른 대체 수단이란 장비 재설계, 구조적 수정, 접근 가능한 대체 건물에서의 서비스 제공, 가정 방문, 수혜자에 대한 보조원 배정, 철도차량 또는 기타 운송수단의 이용 또는 신규 시설 건설 등이 포함 된다.¹³⁹⁾

(다) 개인소유건물

ADA는 공중 이용시설(public accommodation)을 소유, 임대 또는 운영하는 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은 공중이용시설에서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편의를 동등하게 누릴 권리를 갖는다(42 U.S.C §12182).¹⁴⁰⁾ 공중이용시설이란 공중에 개방된 사업체 또는 시설을 지칭하며(28 C.F.R. §36.104), 예를

13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3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3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3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3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4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들어 레스토랑, 영화관, 호텔, 가게, 놀이공원, 병원 및 볼링장은 모두 공중이용시설로 간주된다.¹⁴¹⁾ 공중이용시설은 정책, 영업 또는 절차의 수정,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 및 가능한 범위 내(큰 어려움 또는 비용을 들이지 않고 쉽게 달성하거나 수행이 가능한 경우)에서의 구조적 장벽의 제거를 통해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는 것이 요구된다.¹⁴²⁾

제공되는 물품, 서비스, 시설, 특전, 이익 또는 편의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인 경우, 정책 그리고 영업 또는 절차의 수정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며 또한 상당한 어려움과 비용이 드는 경우와 같이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경우 보조 지원 및 서비스의 제공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¹⁴³⁾

공중이용시설의 장벽 제거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사용하여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배달서비스, 택배, 접근이 불가능한 선반으로부터 상품을 가져오거나 접근 가능한 위치로 활동을 이전시키는 것 등이 있다.¹⁴⁴⁾ 건축적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 취해야 하는 조치의 예는 다음과 같다: 경사로 및 연석 설치; 선반, 전화기, 화장실 용기, 자동판매기, 진열대 또는 가구의 재배치; 시각장애인을 위한 엘리베이터 버튼 설치; 깜빡이는 경보장치 설치; 출입구 확장; 문 폭을 넓혀주는 경첩의 설치; 회전문 제거 또는 대체 출입로 제공; 화장실 칸에 열기 쉬운 문 설치 및 가로대 설치; 기동공간을 늘리기 위하여 변기 칸막이 재배열; 화장 방지를 위해 싱크대 아래 화장실 파이프 단열; 높이를 높인 화장실 변기 및 전신거울 설치; 화장실 내 종이타올 디스펜서 높이 조정; 장애인용 주차장소 지정; 설치된 식수대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경우 종이컵 디스펜서 설치; 털이 길고 밀도가 떨어지는 카펫 제거(28 C.F.R. §36.304).¹⁴⁵⁾

14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4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

14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8~19.

14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9.

14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9.

신규시설은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장애인이 쉽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구역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¹⁴⁶⁾ 중요 시설이 포함된 구역이 변경되는 경우, 화장실, 전화기 및 식수대로 가는 통로가 접근가능하도록 변경이 이루어져야 한다.¹⁴⁷⁾ 그러나 그 변경에 지나친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이 면제되며 또한 쇼핑센터, 쇼핑몰,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 미 법무부(US Attorney General)에서 정하는 건물을 제외하고는 건물이 3층 미만이거나 층당 3,000 평방 피트 미만인 시설의 경우,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지 않아도 된다(42 U.S.C. §12183).¹⁴⁸⁾ 정비 또는 수리로 인한 일시적인 접근 통제를 제외하고, 공중이용시설은 항상 접근 가능하고 장애인이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할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28 C.F.R. §36.211).¹⁴⁹⁾

라. 장애인 안내 동물(service animal) 관련 규정

ADA에 따라, 주 및 지방 정부, 공공 사업체 및 비영리단체는 대중의 입장이 일반적으로 허용된 모든 시설에 장애인이 안내견을 동반하여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¹⁵⁰⁾ 다만 안내견의 역할 수행을 방해하거나 장애인의 장애로 인해 사용이 불가한 것이 아닌, 안내견들은 안전장치를 사용하거나 가죽, 끈 등의 목줄을 착용하여야만 하며, 목줄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도 안내견을 동반한 개인은 목소리, 손짓, 또는 기타 효과적인 방법으로 안내견을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¹⁵¹⁾

알레르기 또는 강아지에 대한 공포심은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입장 또는 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거부할 수 있는 타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며, 음식을 팔거나 준비하는 장소일지라도 공공이 드나들 수 있는 곳인 경우 안내견의 출입이 허용되어야만 한다.¹⁵²⁾

14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9.

14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9.

14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9.

14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9.

150) ADA, [Home - Learn about ADA - Service Animals], (<https://www.adainfo.org/ada-information> 2019. 10. 28. 최종검색)

151)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Service Animals and the ADA, (https://www.ada.gov/regs2010/service_animal_qa.html U.S. Department of Justice(2015. 7. 20.), p.6(Q.27), 2019. 10. 28. 최종검색)

152) ADA Requirements Service, (https://www.ada.gov/service_animals_2010.htm U.S. Department of Justice(2011.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은 다른 손님으로부터 격리되거나 다른 손님들에 비하여 떨어지는 대우를 받아서는 아니 되며, 애완견을 동반하지 않은 다른 고객에게 청구되지 않은 요금이 청구되어서는 안 된다.¹⁵³⁾ 또한 애완동물을 동반한 고객에게 보증금 또는 수수료가 부과되더라도 그러한 보증금은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에 대하여는 면제되어야 한다.¹⁵⁴⁾

마. 통신(Telecommunications)

ADA 제4장은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전화, 텔레비전에 대한 접근성에 대하여 규정한다. 본 장은 주내 또는 주간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업자들에 대하여 적용되며 통신사업자들을 모든 서비스 제공 지역에서 통신이용자에 대하여 TRS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47 U.S.C. § 225).¹⁵⁵⁾ 주내 통신의 경우 주내에서 TRS서비스를 제공하고 자 하는 주 정부는 그러한 프로그램 및 시행을 위한 절차 및 구제방안 등을 FCC로부터 인증 받아야 한다.¹⁵⁶⁾ 그러한 프로그램은 FCC regulation을 준수하여야 하는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프로그램은 (1) TRS 관련 FCC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요건, 가이드라인 및 운영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2) TRS서비스 제공을 위한 최소 요건을 충족 시켜야 하며 (3) 매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하고 (4) TRS 서비스 사용자들에 대하여 사용료를 일반 전화요금보다 높게 책정하여서는 아니 되며, (5) 통신사업자들이 TRS를 통한 전화를 거절하거나 또는 통화 시간을 제한하지 못하게 하여 그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며, (6) 통화전달원(relay operator)으로 하여금 통화가 끝난 이후에는 통화 내용을 공개하거나 기록을 남기지 못하도록 하며, (7) 고의로 통화내용을 바꾸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¹⁵⁷⁾

7. 12.) Animals, Inquiries, Exclusions, Charges, and Other Specific Rules Related to Service Animals, 2019. 10. 28. 최종검색)

153) ADA Requirements Service Animals, Ibid.

154) ADA Requirements Service Animals, Ibid.

155) Title IV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ection 255), (<https://www.fcc.gov/general/title-iv-ada> 2019. 10. 28. 최종검색)

156) Title IV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ection 255), Ibid.

157) Title IV of the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Section 255), Ibid.

본 규정이 시행된 1990년 이후 미국의 모든 50개주 및 워싱턴 D.C에 TRS서비스(띄어쓰기)를 제공하고 있다.¹⁵⁸⁾

바. 기타 규정(Miscellaneous Provisions)

ADA의 마지막 장인 제5장에서는 기타 규정과의 관계, 주에 대한 면제, 보험회사 및 혜택에 대한 영향, 강요금지, 약물의 불법적 사용 및 변호사 비용 등, ADA 관련 다양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장애로 고려되지 않는 상태가 무엇인지 나열하고 있다.¹⁵⁹⁾

(2) 항공교통 관련 접근성 보장에 관한 연방법

가. 일반규정

US Supreme Court는 차별을 금지하는 Rehabilitation Act 제504조가 연방정부의 재정적 지원을 직접적으로 받지 않은 항공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United States Dept. of Transp. v. Paralyzed Veterans of America (1986) 477 U.S. 597).¹⁶⁰⁾ 다른 대중교통수단과는 달리,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연방보조금 수령자가 아니다. ADA는 비행기에 대하여 적용되지 않는다(42 U.S.C. §§ 12141(2) 및 12181(10)).¹⁶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방보조금 수령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항공회사는 특정 차별금지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항공사의 고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기 위하여 미 의회는 1986 Air Carriers Access Act를 제정하였다.¹⁶²⁾ 본 법은 해외 항공사를 포함하여 항공사에서 장애인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49 U.S.C. §41705), ADA 및 Rehabilitation Act는 항공사 및 공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및 시설에 대하여 여전히 적용된다.¹⁶³⁾

158) FCC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Home - About the FCC], (<https://www.fcc.gov/about/overview> 2019. 10. 28. 최종검색)

159) ADA, [Home - Learn about the ADA - The Basics - More on title V], (<https://www.adainfo.org/content/more-title-v> 2019. 10. 28. 최종검색)

16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모든 항공사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¹⁶⁴⁾ 장애인 (1) 중요 일상 활동을 일부분을 상당히 제약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 (2) 그러한 장애 내역 또는 (3) 그러한 장애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경우를 포함한다.¹⁶⁵⁾ 항공사는 어떠한 손님을 탑승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으나 장애를 이유로 개인의 탑승을 독단적으로 거절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객의 탑승을 거절하는 경우 타당한 안전상의 이유가 있어야 한다(Adamson v. American Airlines (1982) 457 N.Y.S.2d 771, cert. denied (1983) 463 U.S. 1209).¹⁶⁶⁾

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할 수 있으며, 안내견이 복도 또는 비상탈출구를 가로막지 않는 한 장애인의 좌석에 동석할 수 있다.¹⁶⁷⁾ 안내견이 복도 또는 비상탈출구를 가로막는 경우, 항공사는 다른 자리로 승객을 안내하여야 한다(14 C.F.R. §§ 382.37 및 382.55).¹⁶⁸⁾

나. 공 항

공항시설은 ADA의 적용을 받으며(42 U.S.C. §12181(7)(G)) 연방보조금을 받는 경우에는 Rehabilitation Act의 적용을 받는다(29 U.S.C. §794).¹⁶⁹⁾ 따라서 공중이용시설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규정들이 공항에도 적용되며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¹⁷⁰⁾ 공공기관에 의해 운영되는 공항은 정부의 서비스 및 프로그램에 대하여 ADA 접근성 관련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¹⁷¹⁾

엘리베이터 및 기타 유사 장치의 배치는 휠체어를 탄 사람이 이동해야하는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해야 한다.¹⁷²⁾ 장애인은 메인 티켓팅, 결제, 수하물 체크인 및 검색구역 및

16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4.

16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터미널간 교통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공항 운영자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공하
고는 비행기 탑승 및 내릴 때에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여야 한다(14 C.F.R. §382.23; 49
C.F.R. §27.1 et seq.).¹⁷³⁾

공항터미널 정보시스템은 시각 및 청각 장애인에게 시각적으로 또는 구두로 모두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장애인은 안내견을 동반할 수
있다(49 C.F.R. §37.167(d)).¹⁷⁴⁾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을 위하여 음량 조절장치 또는 사운
드 부스터 장치가 있는 전화기가 적어도 하나 이상 적절한 표시와 함께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청각 장애인이 공항 직원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의사소통기구가 제공
되어야 한다.¹⁷⁵⁾

더불어, 주차공간, 짐 실는 공간, 대기 공간 및 공공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49 C.F.R. 27.71 et seq.).¹⁷⁶⁾

다. 서비스 및 예약

항공사에 장애인에 대하여 차별하거나, 서비스를 거절하거나 또는 별도의 또는 상이한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14 C.F.R. §§382.5, 382.7 및 382.31.).¹⁷⁷⁾ 승무원이 안
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항공사는 장애인에 대하여
승무원을 동반할 것을 요구하지 않아야 하며 장애인에 대하여 승무원을 동반할 것을 요
구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¹⁷⁸⁾: (1) 승객이 들것 또는 인큐베이터를 들고 탄 경우,
(2)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가 안전수칙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따르지 못하는 경우, (3) 장
애로 인하여 이동이 어려운 관계로 항공기로부터 대피가 불가능한 경우 또는 (4) 심각한

17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17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

청각 및 시각 장애가 있는 승객이 적절한 대화수단의 부재로 인하여 승무원으로부터 안전수칙에 대하여 안내를 받을 없는 경우(14 C.F.R. §382.35(b)).

그 외의 경우, 승객이 스스로 식사가 불가능하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동반할 것을 요구할 수 없다.¹⁷⁹⁾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이 인공호흡기, 호흡기, 지팡이 및 목발을 사용하고 비행 중 근처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해야하며, 안전에 위협이 되지 않는 경우 접이식 휠체어를 들고 비행기에 탈 수 있도록 해야 한다.¹⁸⁰⁾ 보조 기구는 기내 반입 수하물 수 제한에 포함되지 않으며, 항공사는 장애인 승객에게 제공해야하는 시설, 장비 또는 서비스 제공에 대하여 요금을 부과할 수 없다(14 C.F.R. §§ 382.37-382.57).¹⁸¹⁾

3.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1) 서 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장애인 관련 규정과 접근성 관련 규정을 모두 두고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원칙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원칙적 규정과 함께 공간에 대한 접근권과 교통수단 및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성을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접근권으로는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접근과 출입구 및 통로에 대한 접근 외에도 엔터테인먼트 시설 및 야외 휴게·오락시설, 숙박시설에 대한 접근 등 다양한 시설과 공간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있다.

17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5~36.

18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18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또한, 교통수단에 대하여서는 일부 심각한 정신적 문제가 있는 경우 외에는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장애인 주차 구역의 이용권한을 보장하는 한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고정노선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성과 관련하여서는 청각·언어 장애인의 통화를 가능하도록 하는 기술적인 수단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웹 접근성과 관련하여 호텔스닷컴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서, 장애인들도 숙소 예약 서비스를 일반인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실제로 호텔 예약에 대한 정보를 장애인에게도 동일하게 접근하도록 하는 서비스를 업체가 제공하기로 합의한 사례가 있어 주목을 끌기도 한다.

(2)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가. 상품 및 서비스 제공 관련 차별금지

(가)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Unruh Civil Rights Act에 따라 장애인은 일반 대중에게 개방된 모든 사업장에서의 차별로부터 보호를 받는다.¹⁸²⁾ 법원은 사업장(business establishment)의 의미를 넓게 해석하며 일반적으로 호텔, 모텔, 영화관, 쇼핑센터, 레스토랑 및 모든 교통수단이 이에 포함된다.¹⁸³⁾ 차별금지법은 신체장애를 가진 자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구조적 변경을 요구하지는 않는다.¹⁸⁴⁾

피해자는 Unruh Act에서 보장된 다양한 법적 구제수단을 통해 그 권리를 보장받으며, 주무관청인 California Department of Fair Employment and Housing (“DFEH”)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고 DFEH는 그에 따라 Unruh Act 위반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18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8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8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수 있다.¹⁸⁵⁾ 피해자는 또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으며(Civ. Code, §52), ADA위반은 Unruh Act 위반으로 간주된다(Civ. Code, §51).¹⁸⁶⁾

사업장에서의 차별 금지와 더불어, 장애인은 주 정부로부터 직접 기금을 받아 운용하거나 주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 프로그램 또는 활동과 관련된 혜택의 제공을 거절당하거나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Gov. Code, §11135).¹⁸⁷⁾ 장애인은 일반 공중과 마찬가지로 도로, 고속도로, 인도, 공공빌딩, 의료시설, 공중이용시설 및 기타 공공 장소를 자유롭게 이용할 권리를 갖는다(Civ. Code, §54).¹⁸⁸⁾ 마찬가지로 DFEH는 본 법의 위반과 관련한 신고사항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Gov. Code, §12948).¹⁸⁹⁾

(나)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

캘리포니아 법에 따라 장애인은 공중이용시설, 교통시설, 쉼터, 놀이 또는 오락 시설 및 기타 일반 공중이 이용할 수 있는 업소에 대한 동등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하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를 가진 사람 모두가 보호대상이다(Civ. Code. § 54.1).¹⁹⁰⁾

장애인의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인 또는 안내견 훈련사가 안내견을 동반하는 경우 추가 비용 또는 보증금 납부 없이 안내견을 동반할 수 있어야 하며, 다만 훈련사의 경우, 안내견이 목줄을 하거나 장애인 안내견이라는 표식을 달아야 한다(Civ. Code. § 54.1, subd. (b)(6)(A) 및 54.2; Food & Agr. Code, §§ 30850 및 30852).¹⁹¹⁾ 안내견에 의해 자산 또는 시설이 손상되었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장애인 또는 훈련사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Civ. Code. § 54.1, subd. (b)(6)(A) 및 54.2, subds. (a) and (b)).¹⁹²⁾

18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8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8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8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8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4.

19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3.

19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3.

19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3.

물리적 장벽으로 공원 이용자들을 공원 동물들과 분리시키지 않은 장소에서는 동물원 또는 야생 동물 공원이 장애인의 안내견 동반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Civ. Code §54.7).¹⁹³⁾

캘리포니아 법 상 다음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한다.¹⁹⁴⁾ (1) 대중교통 또는 공중이용시설에서 안내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Pen. Code, § 365.5), (2) 괴롭히거나 또는 방해함으로써 안내견의 사용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Pen. Code, § 365.6), (3) 고의 또는 부정하게 본인을 안내견의 주인 또는 훈련사라고 지칭하는 경우(Pen. Code, § 365.7).

본인이 소유 또는 통제하는 강아지로 하여금 의무 수행 중인 장애인 안내견을 다치게 하거나 또는 사망하게 한 경우, 이는 해당 강아지를 소유 또는 통제하는 자의 위반으로 본다(Pen. Code, § 600.2).¹⁹⁵⁾

(3) 접근성

가. 건물 및 시설에 대한 접근

(가) 주 및 지방 정부 건물 및 시설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공공자금으로 지어진 건물, 구조물, 보도, 연석 및 관련 시설 및 주 또는 지방정부에서 임대한 건물 및 시설은 장애인이 접근 및 사용가능하도록 만들어져야 한다(Gov. Code §4450 et seq.).¹⁹⁶⁾ 건물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과 주요 시설(화장실 등)까지의*띄어쓰기 이동경로가 접근하기 쉽도록 되어야 한다.¹⁹⁷⁾

19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3.

19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3.

19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3.

19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7.

19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17.

(나) 공중이용시설

모든 시 및 카운티 내 건축부서는 자신의 관할지역 내에 위치한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주의 접근성 관련 법령을 이행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Health & Saf. Code, §19958).¹⁹⁸⁾ 공중이용시설이 주법을 위반하였다고 의심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위치한 관할 구역의 지역 건축부서 공무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법령을 위반하였음이 확인되는 경우 그러한 확인이 있는 후로부터 90일 이내에 시정되어야 한다.¹⁹⁹⁾

(다) 캘리포니아 Access Regulation

일반 주내 접근성 관련 법에 더하여 캘리포니아 주법은 신체 또는 감각 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위해 거의 모든 중요 구역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하는 포괄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²⁰⁰⁾ 이와 같은 캘리포니아 주법은 1998 California Building Code 제1권 제11장에 명시되어 있으며 ADA 규정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⁰¹⁾ 주 또는 연방 접근성 기준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건물 또는 차량을 수리, 개조한 개인은 세금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공제액은 과세 연도 내 최대 15,000달러이고, 주 또는 연방 규정을 준수하도록 비상탈출/안전지역 피난 시스템을 갖춘 경우에도 세금 공제혜택이 주어진다.²⁰²⁾

이와 같은 규정들은 접근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는 건물 및 시설들에 적용되는 접근성 관련 요구사항을 아래와 같이 명확하게 명시한다.²⁰³⁾ 규정 준수가 어려운 경우, ‘그에 상응하는 시설(equivalent facilitation)’이 제공되어 장애인의 시설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는 한, 일부 요구사항에 대하여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

19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0.

19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0.

20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캘리포니아 주는 규정 외에도 특정 조례를 제정하여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에 대하여 접근성을 제공하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경기장, 공원 및 주유소들은 특정 법률에 의해 규제된다.²⁰⁴⁾

a. 화장실, 음수대 및 공중전화는 반드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일반 공중에 개방된 건물에는 반드시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화장실 장소를 표시한 표지판이 설치되어야 하며, 화장실 표시는 여자화장실의 경우 원 모양, 남자화장실의 경우 삼각형, 남녀공용 화장실의 경우 원과 삼각형이 겹쳐 표기되어야 한다(1998 California Building Code, § 115B.5).²⁰⁵⁾

화장실 출입구가 충분히 넓어야 하며 안전바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²⁰⁶⁾ 또한 휴지통 및 세면대와 같은 화장실 내 시설에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일반 공중, 고객 또는 직원에 대하여 샤워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시설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마련하여야 한다.²⁰⁷⁾ 마찬가지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락카가 제공되어야 한다(California Building Code (“CBC”) §§ 1115B.4, 1115B.4.1, 1115B.8, 1115B.9 및 1115B.6).²⁰⁸⁾

음수대 중 적어도 절반 이상은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각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되지 않는 장소에 배치되어야 한다(CBC §§ 1105.4.1.; 1117B.1,2.).²⁰⁹⁾

공중전화가 설치된 층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이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여러 대의 전화기가 설치된 경우, 적어도 하나의 전화기는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CBC §1117B.2.9 et seq.).²¹⁰⁾

20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0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21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1.

b. 출입구 및 통로는 반드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건물 및 시설 1층의 주요 및 외부 출입구는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공중이 드나들 수 있도록 지정된 출입구가 이중문인 경우에는 모든 문은 정상 업무 시간동안 잠겨있어서는 아니 된다(Health&Saf. Code, §13011).²¹¹⁾

통로 역시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²¹²⁾ 난간의 경우 다음의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²¹³⁾: 시각장애인을 위한 줄무늬 디자인; 수평 바닥; 바퀴 가이드; 장애인도 감지가 가능한 경고등 및 경고시스템; 및 도어 프레스(CBC §§ 1102A et seq.; 1102B; 1114B.1.2; 1127B. et seq; and 1133B.2.5 et seq.; Gov. Code §4460).

c. 경기장, 그랜드스탠드, 스포츠 시설, 강당, 공연장, 및 관련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반드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엔터테인먼트 시설은 주 소방규정의 화재 및 공공안전 요건을 충족시키는 범위 내에서 입장료 범주에 따라 다양한 장소에서의 장애인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좌석 또는 숙박시설을 제공하여야 한다.²¹⁴⁾ 공연장, 콘서트홀, 및 경기장을 포함하여 사설 및 공공 엔터테인먼트 센터 모두에 본 법이 적용되며, ADA보다 더 낮은 수준의 접근성 또는 이용성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Health & Saf. Code, § 19952).²¹⁵⁾

동일한 수준의 편의가 제공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기장 및 기타 스포츠 시설, 관중석, 티켓 부스, 참가지역, 클럽룸 및 라커룸은 접근성 관련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CBC §§ 1104B.4 및 1115B.6.4.).²¹⁶⁾

21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강당 및 공연장, 좌석 및 화장실의 경우에도 장애인이 로비 또는 다른 주요 출입구에서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²¹⁷⁾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 및 걷는 것이 불편한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좌석이 마련되어야 하며 경기장, 공연장, 강당, 강의실 및 기타 유사 공간의 경우 좌석이 고정되어 있고 듣는 것이 중요한 공간인 경우 보조 청취 시스템이 설치되어야 한다(CBC §§ 1104B.3.2.; 1104B.3.8; 1104B.4.2; 및 1105B.4.8.2.).²¹⁸⁾

무대 및 오케스트라석은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티켓부스와 다과테이블 역시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CBC § 1104B.3.10-12).²¹⁹⁾

d. 연석 및 인도에 반드시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공중이 이용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연석 또는 인도는 위치와 관계없이 무조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Health & Saf. Code, § 19956.5; Gov. Code, §4450; 57 Ops. Cal. Atty. Gen. 186 (1974)).²²⁰⁾ 경사로 또는 기타 장치를 통하여 연석 또는 인도에 쉽게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경사로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횡단보도와 인도를 연결하고 표지판 또는 빨간색 페인트로 표시된 경사로 주위 3피트 이내에는 주차할 수 없다 (Veh. Code, §22522).²²¹⁾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의 가장 큰 걱정 중 하나는 연석 경사로의 설치여부일 것이다. 연석, 인도 또는 거리의 변경을 위해서는 장벽을 제거하거나 경사로 또는 기타 장치를 설치하여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정부기관 또는 민간 시설에서 새로운 거리 또는 인도를 설치하는 경우, 해당 시설이 일반 공중에 의해 사용되는 것이라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

21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2.

21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도록 설계되어야 한다.²²²⁾ 지방 정부에서 거리를 재포장하는 경우, 교차로에 경사로 또는 경사면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연석을 설치하여야만 한다.²²³⁾

e. 역사적 가치를 지닌 건물

역사적 가치를 가진 건물의 경우 사례별로 검토하여 변경이 필요할지, 아니면 접근성에 대한 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한다.²²⁴⁾ 역사적 건물을 복원하거나 재배치할 때 적용하기 위한 건물 관련 규정은 제정되어 있다(Health & Saf. Code, §18950 et seq.; CBC §1135B).²²⁵⁾

f. 주유소

주유소는 근무 중인 직원이 한명 뿐인 경우가 아닌 한, 장애인에게 셀프서비스 가격으로 주유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하여 장애인은 장애인용 차량번호판 또는 교통과(DMV)에서 배부한 장애인 표시 스티커를 부착하여야 한다.²²⁶⁾ 본 법은 준수하지 않은 주유소 운영자 또는 직원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²²⁷⁾

주유소는 장애인에게 연료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나타내는 표지판을 게시하여야 하며, 해당 표지판에는 법률시행에 관한 정보를 안내하기 위하여 Department of Rehabilitation에서 운영하는 무료 전화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²²⁸⁾ 또한 셀프주유시설의 카드 리더기에 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CBC §1101C et seq.) 지방 법 집행기관은 대인 또는 공공기관의 민원 제기에 따라 위반사항을 조사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이 있다.²²⁹⁾

22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22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

g. 야외 레크리에이션, 공원 및 오락시설

캘리포니아 주의 정책은 주의 풍경, 자연, 역사 및 문화 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러한 정책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승마트레일, 공공도로, 보트선착장, 피크닉지역, 문화유산 지대 등을 포함한다(Pub. Resources Code, §5070.5).²³⁰⁾

접근성 관련 규정에 따라 장애인들이 야영장, 해변, 피크닉 지역, 보트선착장, 및 낚시 부두, 주차장, 고속도로 휴게소 및 산책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 및 교육을 위한 트레일의 경우,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도록 로프로 된 안내줄을 제공하거나, 아라비아 숫자 또는 기호로 된 돌출부호, 및 안내서 또는 가이드 표시를 제공하여야 한다.²³¹⁾ 이러한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 자연 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염려되는 경우,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정을 준수하면 되며, 영구시설이 제공되는 경우에는 남녀 위생시설, 피크닉 테이블, 인포메이션 센터, 식수대, 하나 이상의 주차 공간 및 도보의 연속 경사로 등을 포함하여 적어도 한 종류 이상의 영구시설이 장애인이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CBC §1132B.2).²³²⁾

주 정부의 지원을 받는 장애인은 주에서 운영하는 공원을 무료로 입장할 수 있는 Golden Bear Pass를 장애인 및 그 배우자를 위해 지급받을 수 있다(Pub. Resources Code, §5011).²³³⁾

일반 놀이기구의 비용과 품질에 비교하여 가능한 경우,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놀이터 내 놀이기구 중 일부는 신체요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한다(Pub. Resources Code, §5411).²³⁴⁾

23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3-24.

23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h. 표시 및 식별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건물 입구 및 이용 가능한 위생시설을 갖춘 건물 로비에는 접근성 관련 국제표준 마크가 게시되어 있어야 한다(CBC §§ 1114A 및 1117A.3.).²³⁵⁾

i. 깨끗한 바닥 및 지상 공간

건물은 휠체어 이동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디자인되어야 한다(CBC §1118B).²³⁶⁾ 벽에서 돌출되어 설치된 물체는 휠체어의 움직임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되며, 건물은 시각장애인을 고려하여 설계됨으로써 시각장애인이 지팡이를 사용하여서도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CBC §1121B).²³⁷⁾

j. 식사, 연회 및 바 시설

식사, 연회 및 바 시설은 휠체어가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좌석이 일정 수 이상 마련되어 있어야 하고 음식서비스 통로, 식기류 공간, 화장실 및 음식 준비공간 또한 접근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CBC §1104B.5).²³⁸⁾

k. 종교시설

성소, 교단, 성가대실, 집회 공간, 교실, 사무실 및 화장실은 장애인 또는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동일한 수준의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 예외가 허용된다(CBC §1104B.6.).²³⁹⁾

l. 사무실 건물 및 개인 및 공공서비스 시설

본 규정의 적용을 받는 시설에는 고객, 클라이언트 또는 방문객이 사용하거나 사무를 위한 시설이 포함되며, 보험회사, 공인중개사 및 변호사 사무실과 같은 모든 사무실 및

23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4.

23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5.

은행, 세탁소, 병원, 경찰서, 법원, 소방서, ATM, 자판기 등과 같은 모든 개인 또는 공공서비스 시설도 포함된다(CBC §§ 1105B et seq.; 1117B.7 et seq; 및 1126B).²⁴⁰⁾

사무실의 경우 고객 및 방문자를 위한 공간, 화장실, 회의실 및 직원 업무 공간이 접근 가능 하여야 한다(CBC §1105B.3 et seq.).²⁴¹⁾ 영업시설의 경우, 진열대 및 직원 업무 공간 및 계산대가 접근 가능하여야 하며, 피팅룸이 있는 경우 적어도 하나의 피팅룸이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CBC §1110B.1 et seq.).²⁴²⁾ 개인 또는 공공서비스 시설에는 공장 및 창고 등도 포함되며, 고객 및 방문자 공간과 직원 업무공간에의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CBC §§ 1105.4.4. et seq. 및 1107B et seq.).²⁴³⁾

m. 호텔, 모텔 및 공공자금으로 지어진 숙박시설

위생시설을 포함하여 개인숙박시설의 특정수의 객실은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어야 하며, 개인숙박시설 내 공용 공간 및 오락시설도 일정 수준의 접근성 요건을 충족시켜야 한다(CBC §111B.1 et seq. Berkeley Cneter for Independent Living v. Coyle (1996) 42 Cal.App.4th 874).²⁴⁴⁾

n.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는 휠체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건물 층의 1/2인치 내의 범위에서 정지하여야 하고 층 버튼은 휠체어 사용자가 접근할 수 있는 거리 내에 위치하여야 한다.²⁴⁵⁾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주요 통로 근처에 위치하여야 하고, 층 버튼 옆에는 점자 및 돌출 아라비아 숫자가 표시되어야 한다.²⁴⁶⁾ 엘리베이터 문의 바깥 쪽에는 해당

24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5.

24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5.

24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5.

24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5.

24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5.

24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6.

24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6.

층수를 표시한 점자 및 돌출된 아라비아 숫자 부호가 있어야 한다(CBC §1105.3; Gov. Code, §4455.5).²⁴⁷⁾

o. 기타 사항들

- 비상경고시스템이 요구되는 경우, 깜빡이는 조명을 사용하여 청각 장애인에게 경고가 가능하여야 한다(CBC §1105.4.6.).²⁴⁸⁾
- 공용 수영장은 장애인이 사용가능하여야 한다(CBC §3104B).²⁴⁹⁾
- 외부로 이어지는 통로, 육교, 주차공간 및 주차시설, 승차자 및 하역장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CBC §1127B et seq., 1128B, 1129B et seq., 1130 B 및 1131B et seq.).²⁵⁰⁾

나.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성

(가) 운전 및 주차

a. 운전면허

운전면허에 대한 권리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면허기준은 주마다 다르다. DMV에서 개인의 장애가 차량을 운전하는 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자에 대한 운전면허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²⁵¹⁾ 법령에 따라 DMV는 의식 상실 또는 정신 혼란을 겪는 장애인에 대하여 운전면허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되나, 사례별로 면허 발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안전한 행이 가능한 자라면 반드시 면허를 발급하여야 한다.²⁵²⁾ 교정시력이 일정 수준을 미치지

24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6.

24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6.

24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6.

25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6.

25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7.

25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7.

못하는 경우 DMV는 운전면허를 발급 또는 갱신하여서는 아니 된다(Veh. Code, §§12805 및 12806; *Smith v. DMV* (1984) 163 Cal. App. 3d 321).²⁵³⁾

b. 주차 특혜

캘리포니아 주는 의료인증을 받은 장애인들에 대하여 특별주차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을 제정하였다.²⁵⁴⁾ 이러한 특별 혜택을 받기 위하여 해당 장애인의 차량은 반드시 구분되는 차량 번호판을 달거나 장애인 스티커를 게시하여야 하며(Veh. Code, §§5507 및 22511.55 et seq.), 번호판 또는 스티커는 해당 장애인이 동승하거나 장애인을 위하여 대신 운전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타인에게 빌려주거나 양도가 불가하다.²⁵⁵⁾ 이를 위반한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Veh. Code, §4461).²⁵⁶⁾

California Vehicle Code section 22507.8은 장애인 스티커 또는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자가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에 주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²⁵⁷⁾ 이를 위반한 차량은 견인조치에 취해질 수 있다(Veh. Code, §22652).²⁵⁸⁾

(나) 대중교통 및 주내 운행 교통

캘리포니아 주법은 운영, 장비 또는 구조물에 대한 계약을 수여하는 주 정부기관, 의회 및 부서, 지방 정부 부서, 공기업, 지방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 도시, 카운티 및 지방도시 등은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고정 노선 교통 시설 및 대중교통 시설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Gov. Code, §4500; 70 Ops.Cal.Atty.Gen. 70(1987).²⁵⁹⁾

25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7.

25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8.

25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8.

25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8.

25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8.

25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8.

25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9.

공공시설법(the Public Utilities Code) 제99220조는 대중교통시스템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므로, 장애인(handicapped persons)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운영되어야 한다는 입법적 결과를 제시하였다.²⁶⁰⁾ 관련 법 상 장애인이란 질병, 부상, 연령, 선천적 기능장애 또는 기타 영구 또는 일시적인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특수 시설 또는 특별히 계획 또는 설계 없이는 다른 일반 대중과 같이 교통 시설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개인을 지칭한다.²⁶¹⁾ 일시적 장애는 90일 이상 지속되는 것이어야 한다(Pub. Util. Code, § 99206.5.).²⁶²⁾

다. 통신수단에 대한 접근성

캘리포니아 주법 및 ADA는 언어 또는 청각 장애인에 대하여 통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²⁶³⁾ 1990년, ADA는 언어 또는 청각장애인들에 대하여 무제한의 실현 가능한 통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것을 Federal Communications Commission (FCC)에 지시하는 규정을 Communications Act of 1934 (U.S.C. Title 47 section 151 etseq.)를 통하여 ADA에 추가하였다(47 U.S.C. §225(d)).²⁶⁴⁾

(가) 전화 시스템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모든 전화회사는 청각장애가 있는 가입자들에게 청각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통신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²⁶⁵⁾ Telecommunications Device for the Deaf (TDD) 또는 Teletype Device (TTY)와 같은 장치들이 무료로 제공되어야 한다.²⁶⁶⁾ 언어 및 청각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TDD 또는 TTY는 타자기와 비슷하게 생겨, 메시지를 보여 줌으로써 다른 TDD 사용자와의 대화가 가능하도록 도와주며, 일반 통신 사업자는 또한

26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9.

26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9.

26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29.

263)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264)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265)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266)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청각 및 언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 의사소통 할 수 있도록 언어 및 청각 장애가 있는 개인에게 통신 중계 서비스(telecommunications relay service)를 제공해야 한다(47 U.S.C. §225(b); 47 C.F.R. §64.603).²⁶⁷⁾ The California Public Utilities Commission(PUC)는 청각장애인이 일반인들과 통화할 수 있도록 ‘dual party relay system’을 구축하여야한다.²⁶⁸⁾

‘Telecommunication Relay Services (TRS)’는 TDD/TTY 사용자인 청각 장애인과 일반인이 서로 통신하는 데 사용되는 기술적인 수단으로, 상대방의 대화내용이 문자 또는 음성 메시지로 전환되어 통화 당사자 간에 통역된다.²⁶⁹⁾ ADA는 유무선으로 일반인과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 간의 대화가 가능하게 하여 일반인 간의 전화와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화 송신 서비스라고 중계서비스를 정의한다(47 U.S.C. §64.601(7)).²⁷⁰⁾

음성과 문자를 변환시켜 대화를 통역하는 통화도우미는 청각 또는 언어 장애인들의 통화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훈련된 자이어야 한다.²⁷¹⁾ 관련 서비스는 24시간 제공되어야 하며 통화 길이 또는 전화번호 등에 의해 전화서비스에 제한이 가해져서는 안 된다(47 C.F.R. §64.604(a)).²⁷²⁾

(나) 웹 접근성

2007년 5월, 고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해주는 호텔스닷컴이 장애인 고객에 대하여 접근 가능한 숙소를 동일한 할인가격으로 제공하거나 보장해주지 않음으로써 ADA를 위반하였다고 단체소송이 캘리포니아 주 법원 제기되었다(Smith v. Hotels.com L.P., California Superior Court, Alameda County, Case No. RG07327029).²⁷³⁾ 피고인은 호텔스닷컴이 국제적인 예약 네트워크를 이용해 호텔을 예약하고 싶음에도 이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267)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6.

268)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7.

269)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7.

270)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7.

271)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7.

272)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bid, p.37.

273) Smith v. Hotels.com L.P,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Alameda Case No. RG07327029, 2009 (<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news.586> 2019. 10. 28. 최종 검색)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들에 대하여 차별을 가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케이스를 자세히 하자면 아래와 같다.

ADA 상, 호텔스닷컴은 비장애인에 제공하는 것과 동일한 여행 서비스를 장애인에 대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그러나 호텔스닷컴은 비장애인에게 할인된 가격으로 제공하는 여행상품 혜택을 ADA를 위반하여 장애인에 제공하지 않았다. 호텔스닷컴은 호텔에서 ‘어메니티’의 일종으로 신체장애가 있는 장애인에 대하여 접근성을 보장해줌에도, 홈페이지 상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자의 예약을 수락하지 않고 접근가능한 방을 보장해주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신체장애인은 호텔스닷컴에서 제공하는 혜택을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제공받지 못하였다.

본 소송은 신체장애인의 인터넷 여행 서비스에 대한 완전하고 동등한 접근성의 보장 및 호텔스닷컴이 장애인에 대하여 행하는 차별 및 ADA 위반행위를 저지하기 위하여 제기 된 것이다.

호텔스닷컴은 이에 대하여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였으나, 캘리포니아 법원은 캘리포니아 Unruh Civil Rights Act 및 Unfair Competition Law 위반으로 유죄를 인정하였다. 이후 호텔스닷컴은 홈페이지 상에서 판매되는 호텔 에 대한 접근성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추가함으로써 접근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4. 일리노이 주의 장애인 관련 규정

(1) 서 설

일리노이 주에서는 Illinois Environmental Barriers Act(EBA)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제고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위 EBA를 이행하기 위하여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AC)를 재정하였다.²⁷⁴⁾ 또한, Illinois Building code(IBC)에 Accessibility 부분을 별도의 chapter로

274) Illinois Capital Development Board, [Home - CDB - Business with CDB], (<https://www2.illinois.gov/cdb/business/codes/Pages/default.aspx> 2019. 10. 28. 최종검색)

마련하여 건물 및 시설의 건설 및 리모델링에 있어 접근성을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²⁷⁵⁾

(2) Building code 2018, Chapter 11 Accessibility

(가) 일반규정

이 장의 규정은 장애인의 접근성을 위하여 시설의 설계 및 건설을 제한한다(Section 1101.1).²⁷⁶⁾

(나) 준수사항

건물 및 시설은 이 규정 및 ICC A117.1에 따라 접근성이 있도록 설계 및 건축되어야 한다(Section 1102.1).²⁷⁷⁾

(다) 요구사항

부지, 건물, 구조물, 시설, 부분 및 공간, 임시이든 영구적이든,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Section 1103.1).²⁷⁸⁾

부지, 건물, 구조물, 시설, 부분 및 공간은 이 Section에서 규정 된 범위까지 이 장에서 면제된다(Section 1103.2).²⁷⁹⁾

- 30평방피트(30m²) 미만이고 완성된 바닥의 상하로 7인치(178mm) 이상에 위치하며 주로 공연에 사용되는 종교 예배 장소이고, 주로 종교 의식을 수행하는 장소의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Section 1103.2.8.).²⁸⁰⁾

275) Illinois Capital Development Board, 위의 자료.

276) UpCodes, “Capter 11 Accessibility”, [Home - Illinois - Building Code 2018 of Illinois], (<https://up.codes/viewer/illinois/ibc-2018/chapter/11/accessibility#11> 2019. 10. 28. 최종검색)

277)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78)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79)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80)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 차량이 통행하는 다리 또는 지하 터널에서만 접근 할 수 있는 고속도로 요금소의 경우 이 장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²⁸¹⁾

(라) 접근성 있는 경로(Accessible Route)

건물 부지 내에 대중 교통수단의 정류장,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 접근 가능한 승객 탑승 구역, 공공 도로 또는 보도로부터 건물 입구까지 접근성이 있는 경로가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04.1).²⁸²⁾

- 같은 부지 내에는 접근 가능한 건물, 접근 가능한 시설, 접근 가능한 부분 및 공간을 연결하는 적어도 하나의 접근성 있는 경로가 있어야 한다(Section 1104.2).²⁸³⁾

(마) 건물의 출입구

Section 1105.1.1. 내지 1105.1.7에서 요구되는 접근성 있는 출입구 외에도 모든 공공 출입구의 60%이상이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Section 1105.1).²⁸⁴⁾

- 실내 주차장(parking garage)이 제공되는 경우, 주차 구조물에서 건물 또는 시설 입구 까지 보행자가 직접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Section 1105.1.1).²⁸⁵⁾

(바) 주차 및 승객 탑승 시설

주차가 제공되는 경우, Section 1106.2 내지 1106.4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접근성이 있는 주차 공간이 표 1106.1에 따라 제공되어야하고, 건물 부지에 둘 이상의 주차 시설이 제공되는 경우엔,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의 수는 각 주차 시설마다 별도로 계산되어야 한다(Section 1106.1).²⁸⁶⁾

281)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2)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3)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4)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5)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6)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표 10] Section 1106.1 - 접근성 있는 주차장

주차 시설이 제공하는 총 주차 공간	접근성 있는 주차 공간의 최소 수량
1에서 25	1
26에서 50	2
51에서 75	3
76에서 100	4
101에서 150	5
151에서 200	6
201에서 300	7
301에서 400	8
401에서 500	9
501에서 1000	전체의 2%
1,001 이상	기본 20, 이후 100 증가시마다 1

출처: UpCodes, Chapter 11 Accessibility(<https://up.codes/viewer/illinois/ibc-2018/chapter/11/accessibility#11>)

- 6개의 주차 공간 마다 최소 1개는 승합차량의 접근이 가능한 주차 공간이어야 한다 (Section 1106.5).²⁸⁷⁾
- 승객 탑승 구역이 제공되는 경우, 최대 100피트 (30.4m)마다 1개의 승객 탑승 구역이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Section 1106.7.1.).²⁸⁸⁾
- 발렛 주차 서비스가 제공되는 곳에서도 승객 탑승 구역이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06.7.3.).²⁸⁹⁾

287)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8)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89)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사) 주거 및 수면 시설

이 장의 다른 요구 사항에 더하여 거주 구역 또는 수면 구역이 있는 거주지에는 이 Section의 규정에 따라 접근성이 있는 기능들이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07.1).²⁹⁰⁾

- 일반 대중 또는 거주자가 이용할 수 있고 접근 가능한 유닛, 타입 A 유닛 또는 타입 B 유닛은 접근성이 있어야 하며 접근 가능한 공간에는 화장실 및 욕실, 부엌, 거실 및 식당 공간 및 파티오(patio), 테라스, 발코니를 포함하는 외부 공간이 포함된다 (Section 1107.3).²⁹¹⁾

(아) 공연장, 회의장 등(Assembly areas)

좌석이 고정 된 집결 목적의 방과 공간의 경우, 접근성 있는 휠체어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08.2.2.).²⁹²⁾

[표 11] Section 1108.2.2.1 - 접근성 있는 휠체어 공간

집결 구역의 좌석 수	휠체어 공간의 최소 요구 수량
4에서 25	1
26에서 50	2
51에서 100	4
101에서 300	5
301에서 500	6
501에서 5,000	6(150개 마다 1개 추가)
5,001 이상	36(200개 마다 1개 추가)

출처: UpCodes, Chapter 11 Accessibility(<https://up.codes/viewer/illinois/ibc-2018/chapter/11/accessibility#11>)

290)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91)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292)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 고정 좌석이 제공되지 않는 잔디밭 좌석 공간과 외부로 초과된 좌석 공간은 접근성 있는 경로에 연결되어야 한다(Section 1108.2.6.).²⁹³⁾
- 청취 통신이 공간 사용에 필수적인 집결 목적의 각 건물, 방 또는 공간에는 보조 청취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Section 1108.2.7.).²⁹⁴⁾
- 접근성 있는 경로는 공연 구역과 원형 통로를 통하여 공연 구역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집결 좌석 구역을 직접 연결해야하며, 공연장에서 보조 구역 또는 공연자가 사용하는 시설까지 접근성 있는 경로를 제공해야 한다(Section 1108.2.8.).²⁹⁵⁾
- 식사 및 음주 구역에서 모든 내부 및 외부 층은 접근성을 갖추어야 하고, 접근성 있는 경로 상에 있어야 한다(Section 1108.2.8.).²⁹⁶⁾

(자) 기타 기능 및 시설

① 화장실 및 목욕 시설

각 화장실과 욕실은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접근성 있는 경로로 층을 연결할 필요가 없는 경우, 시설 내에 제공된 화장실 또는 목욕 시설은 접근성 없는 층에 위치해서는 아니 된다(Section 1109.2.).²⁹⁷⁾

② 싱크대

싱크대가 제공되는 경우, 접근 가능한 공간에 제공되는 싱크대의 최소 5% 이상(1개 이상)은 접근성이 있어야 한다(Section 1109.3.).²⁹⁸⁾

293)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94)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95)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96)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97)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298)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③ 주방

부엌과 간이 주방이 접근성 있는 공간이나 방에 제공되는 경우, 이 또한 접근성을 갖추어야 한다(Section 1109.4.).²⁹⁹⁾

④ 식수대

식수대가 외부 부지, 층 또는 보안 구역 내에 제공되는 경우, 식수대는 Section 1109.5.1 및 1109.5.2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09.5).³⁰⁰⁾

- 적어도 2개의 식수대가 제공되어야 하며 하나의 식수대는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위한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다른 하나의 식수대는 서있는 사람에 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Section 1109.5.1.).³⁰¹⁾

⑤ 사우나 및 한증막

사우나 및 한증막(제공되는 경우)에 접근 할 수 있어야 한다(Section 1109.6).³⁰²⁾

⑥ 엘리베이터

접근성 있는 경로의 승객용 엘리베이터는 접근 가능해야 한다(Section 1109.7).³⁰³⁾

⑦ 휠체어 리프트

플랫폼 (휠체어) 리프트는 항목 1 내지 10에 표시된 새 건물에 요구되는 접근성 있는 경로의 일부로 허용된다(Section 1109.8).³⁰⁴⁾

299)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0)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1)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2)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3)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4)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⑧ 보관 공간

캐비닛, 외투 걸이, 선반, 의약품 캐비닛, 사물함, 옷장 및 서랍과 같은 고정 또는 빌트인 보관 부분이 접근성 있는 공간에 제공되는 경우, 최소한 5%, 하나 이상의 부분에는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Section 1109.9).³⁰⁵⁾

(차) 오락 시설

① 스포츠 활동 구역

스포츠 활동의 각 구역은 접근성 있는 경로 상에 있어야 한다(Section 1110.4.1.).³⁰⁶⁾

② 팀 또는 선수 좌석

스포츠 활동 구역에 제공되는 팀 또는 선수 좌석 공간에는 1개 이상의 휠체어 공간이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10.4.2.).³⁰⁷⁾

③ 볼링 레인

접근성 있는 경로는 각 유형의 볼링 레인의 5% 이상, 최소 1개 이상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1110.4.3.).³⁰⁸⁾

④ 놀이기구

놀이기구가 탑승 및 하차 위치에 있는 경우, 다음은 접근성 있는 경로에 있어야 한다(Section 1110.4.8.2.).³⁰⁹⁾

305)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6)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7)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8)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309) UpCodes, 위의 “Chapter 11 Accessibility”

- 휠체어 공간을 제공하는 위치
- 환승을 위한 놀이기구
- 환승 장치

⑤ 수영장 등

수영장, 물놀이 수영장, 온수 욕조 및 스파는 접근 가능해야하며 접근성 있는 경로에 있어야 한다(Section 1110.4.14.).³¹⁰⁾

⑥ 사격 시설

발사대가 있는 사격 시설이 설계되고 건설되는 경우, 각 유형의 발사대 중 5 % 이상, 최소 1개 이상이 접근 가능하고 접근성 있는 경로에 있어야 한다(Section 1110.4.15.).³¹¹⁾

(가) 표 식

- ① 아래의 장소에서 접근성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접근성 관련 국제 표준 기호로 표시되어야 한다(Section 1111.1).³¹²⁾
 - 접근성 있는 주차 구역
 - 접근성 있는 승객 탑승 구역
 - 접근성 있는 방
- ② 가장 가까운 접근성 있는 부분으로의 경로를 나타내는 지시 표지판이 아래의 위치에 제공되어야 하며, 이 방향 표시는 국제 접근성 기호를 포함하면서 부호 문자는 ICC A117.1에 따라 시각적 문자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Section 1111.2).³¹³⁾

310)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311)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312)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313)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 접근성 없는 건물 출입구
- 접근성 없는 공중 화장실과 목욕 시설
- 접근성 있는 경로로 제공되지 않은 엘리베이터

(3) Accessibility code

일리노이 주의 Building code가 건물 및 시설의 각 부분에 대하여 접근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Accessibility code는 이러한 접근성을 갖추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요구되는 세부 기준을 제시한다.³¹⁴⁾

(가) 건물(Building blocks)

① 바닥 표면(Section 302)

- 카펫 : 카펫 또는 카펫 타일은 단단히 부착되어야 하며, 쿠션, 패드 또는 받침이 단단히 고정되어 있거나 쿠션 또는 패드가 없어야 한다. 파일 높이는 최대 1/2 인치(13mm)이어야 한다. 카펫의 노출 된 가장자리는 바닥 표면에 고정되어야 하며 노출 된 가장자리의 전체 길이에 맞춰 정리되어야 한다(Section 302.2).³¹⁵⁾

② Clear floor or ground space³¹⁶⁾(Section 305)

- Clear floor or ground space는 최소 30인치(760mm) x 최소 48인치(1220mm)여야 한다 (Section 305.3).³¹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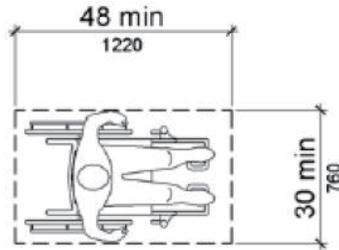
314) UpCodes, 위의 “Capter 11 Accessibility”

315)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p.82 (<https://www2.illinois.gov/cdb/announcements/2018/Documents/Register%20Page.pdf> 2019. 10. 28. 최종 검색)

316) ADA에서 규정하고 있는 휠체어 사용자들을 건물에 맞이하기 위한 최소한의 방해물이 없는 공간을 의미한다.

317)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82.

[그림 2] Clear Floor or Groun Space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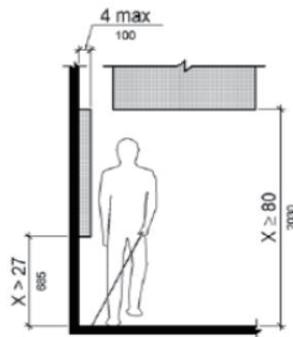
Figure 305.3
Clear Floor or Ground Space

출처: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p.85.

③ 돌출 물체(Protruding Objects)

마감 바닥 또는 지면 위의 27인치(685mm) 이상, 80인치(2030mm) 이하인 물체는 수평으로 최대 4인치(100mm)까지만 순환 통로로 돌출되어야 한다(Section 307.2).³¹⁸⁾

[그림 3] Limits of Protruding Objects 기준

Figure 307.2
Limits of Protruding Objects

출처: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2018.10.), p.85.

318)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89.

(나) 접근성 있는 경로

① 보행면

- 보행면의 주행 경사는 1:20 보다 가파르지 않아야 하며 보행면의 횡단 경사는 1:48 보다 가파르지 않아야 한다(Section 403.3).³¹⁹⁾
- 1:20보다 가파르지 않은 경사로가 있는 보행면을 따라 난간이 제공되는 경우, 난간은 Section 505를 준수해야 한다(Section 403.6).³²⁰⁾

② 출입문

- 출입문 및 게이트 문이 90도 열린 위치에서 그 문이 문걸이의 12도의 위치까지 이동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 최소 5초가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Section 404.2.8.1).³²¹⁾
- 회전문, 회전 게이트 및 개찰구는 접근성 있는 경로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Section 404.3.7).³²²⁾

③ 엘리베이터

- 엘리베이터 내 통화 버튼과 키패드는 Section 308에 명시된 범위 중 하나 이내에 위치해야 하며, 이는 가장 높은 조작 가능한 부분의 중심으로 측정된다(Section 407.2.1.1).³²³⁾
- 엘리베이터 내 통화 버튼에는 각 통화가 등록될 때와 각 통화에 응답할 때를 나타내는 가시신호가 있어야 한다(Section 407.2.1.5).³²⁴⁾

319)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95.

320)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97.

321)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04.

322)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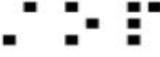
323)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12.

324)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12.

- 비상 정지, 알람, 도어 열림, 도어 닫힘, 메인 출입구 및 전화 기능의 제어 버튼은 표 407.4.7.1.3에 표시된 것과 같이 촉각 기호로 식별되어야 한다(Section 407.4.7.1.3).³²⁵⁾

[그림 4] Elevator Control Button Identification 촉각 기호

**Table 407.4.7.1.3
Elevator Control Button Identification**

Control Button	Tactile Symbol	Braille Message
Emergency Stop		 "ST"OP Three cells
Alarm		 AL"AR" M Four cells
Door Open		 OP"EN" Three cells
Door Close		 CLOSE Five cells
Main Entry Floor		 MA"IN" Three cells
Phone		 PH"ONE" Four cells

출처: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p.120.

325)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20.

(다) 건물 구성 부분

① 주차장

- 접근성 있는 주차 공간은 영구적으로 설치된 R7-8 (미국 교통부 표준; 그림 502.6 (a) 참조)을 표시하여 장애인 지정 구역임을 표시해야 한다.³²⁶⁾ 이러한 표시는 Illinois Vehicle Code[625 ILCS 5/1124 및 301.1]에 따라 벌금의 금액 내지는 지역 규정에 의해 요구되는 경우 그 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나타내야 한다(그림 502.6 (b) 참조), (Section 502.6).³²⁷⁾

[그림 5] 접근성 있는 주차 공간 기준



출처: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p.132.

326)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31.

327)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31.

(라) 배관 부분 및 시설

- 식수대 부분은 전방 접근이 가능하도록 배치되어야 하고 식수대를 중심으로 하는 Section 305의 규정을 준수하는 “Clear Floor” 공간을 가져야 한다(Section 602.2).³²⁸⁾

① 화장실

- 마감 바닥 위의 변기 높이는 최소 17인치 (430mm), 최대 19 인치 (485mm)여야 하며, 변기커버를 들어 올렸을 때 들어올리기 전의 위치로 돌아가지 않아야 한다(Section 604.4).³²⁹⁾

② 사우나

- 사우나와 한증막에 좌석이 제공되는 경우, 하나 이상의 벤치가 Section 903을 준수해야 하며, 문은 “clear floor space”의 안으로 닫히지 않아야 한다(Section 612.2).³³⁰⁾

(마) 통신 설비

- 화재 경보 시스템은 NFPA 72(2013 버전)를 준수하는 가청 및 가시 경보를 영구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의료 시설의 화재 경보 시스템은 산업 관행에 따라 제공되어야 한다(Section 702.1).³³¹⁾

① 사 인

- 그림 영역의 높이는 최소 6인치(150mm)여야 하며, 문자와 점자는 그림 필드 밖에 위치해야 한다(Section 703.6.1).³³²⁾

328)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48.

329)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52.

330)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75.

331)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77.

332)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83.

그림 6 | 문자와 점자 배치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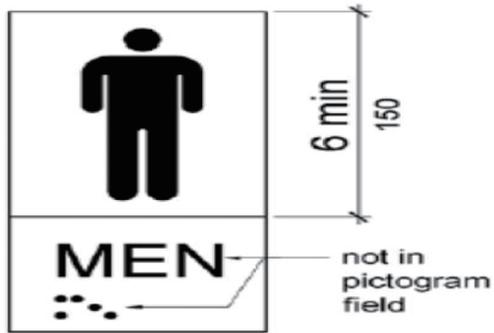


Figure 703.6.1
Pictogram Field

출처: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p.183.

- 국제적인 접근성(Accessibility) 상징은 [그림 7]과 같이 Section 703.7.2.1을 준수해야 한다(Section 703.7.2).³³³⁾

그림 7 | 국제적인 접근성(Accessibility) 상징



Figure 703.7.2.1
International Symbol of Accessibility

출처: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p.184.

333)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183.

(바) 레크리에이션 시설

① 놀이기구

놀이기구에는 접근성 있는 경로가 연결되어야 한다(Section 1002.2).³³⁴⁾

② 선착장

보트 선착장 경사로의 탑승 부두는 최소 너비가 60인치(1525mm)인 clear 기준에 맞는 부두 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탑승 부두의 전체 길이를 연장해야 한다(Section 1003.3.2.).³³⁵⁾

③ 낚시

통로 및 부유 교각을 포함하는 낚시 교각 및 플랫폼에는 접근성 있는 경로가 연결되어야 한다(Section 1005.1).³³⁶⁾

④ 야외 레크리에이션 공간 접근 경로

야외 레크리에이션 출입 경로, 통과 공간 및 휴식 부분의 표면은 단단하고 안정적이어야 한다(Section 1016.2).³³⁷⁾

(사) 기타

- 카운터 또는 창구에서 직원을 일반 대중과 분리시키기 위해 보안 유리가 있는 경우, 음성 통신을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제공되어야 하며, 전화 수화기 장치(제공된 경우는 Section 704.3³³⁸⁾을 준수해야 한다(Section 904.6).³³⁹⁾

334)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215.

335)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221.

336)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222.

337)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246.

338) 볼륨 컨트롤이 필요한 공중전화에는 최소 20dB까지 조정 가능한 수신 볼륨 컨트롤이 장착되어 있어야 하고, 자동 리셋이 제공되어야 한다.

339)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Ibid, p.214.

(4) Vehicle code

- Vehicle code [625 ILCS 5/11-301]에 따라 1988년 7월 1일부터 일리노이 주에 장애인 주차 구역 표지판이 세워졌다(625 ILCS 5/11-1003.1).³⁴⁰⁾
- 육안으로 명확히 확인되는 장애가 있는 보행자에 대하여 운전자는 자신의 오른쪽을 양보하여야 한다(625 ILCS 5/11-1004).³⁴¹⁾
- 장애인에게 발급된 등록판이나 도안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은 차량은 장애인 주차 구역에 주차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게는 \$250의 벌금이 부과된다(625 ILCS 5/11-1301.3).³⁴²⁾
- 장애인에게 발급된 등록판이나 도안을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사용하는 경우, 첫 번째 위반 시는 \$500, 두 번째 위반 시는 \$750, 세 번째 위반 시는 \$1000의 벌금이 부과된다(625 ILCS 5/11-1301.3).³⁴³⁾

5. 플로리다 주의 접근성 관련 규정

(1) Building code 2017, Chapter 11 Accessibility

이 장은 접근성을 위한 건물의 설계 및 건설에 적용된다(Section 1101 General, 1101.1).³⁴⁴⁾

340) Illinois General Assembly, [Home - Illinois Compiled Statutes - Chapter 625 Vehicles - 625 ILCS 5/ Illinois Vehicle Code - Chapter 11 Rules of the Road], (<http://www.ilga.gov/legislation/ilcs/ilcs3.asp?ChapterID=49&ActID=1815> 2019. 10. 28. 최종검색)

341) Illinois General Assembly, 위의 “Chapter 11 Rules of the Road”.

342) Illinois General Assembly, 위의 “Chapter 11 Rules of the Road”.

343) Illinois General Assembly, 위의 “Chapter 11 Rules of the Road”.

344) UpCodes, “Chapter 11 Accessibility”, [Home - Florida - FBC, Building 2017], (<https://up.codes/viewer/florida/fl-building-code-2017/chapter/11/accessibility#11> 2019. 10. 28. 최종검색)

Section 1104 Accessible Route Reserved
 Section 1105 Accessible Entrances Reserved
 Section 1106 Parking and Passenger Loading Facilities Reserved
 Section 1107 Dwelling Units and Sleeping Units Reserved
 Section 1108 Special Occupancies Reserved
 Section 1109 Other Features and Facilities Reserved
 Section 1110 Recreational Facilities Reserved
 Section 1111 Signage Reserved

Code 세부 규정을 확인할 수 없으나, 일리노이 주의 규정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고, Building code를 제정한 대부분의 주의 code 체계 또한 거의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져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2) Accessibility code

플로리다 주의 Accessibility code는 전체적으로 일리노이 주의 Accessibility code와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래의 부분들이 추가되어 있다.³⁴⁵⁾

1) Fair Housing Accessibility Guidelines Design Guidelines for Accessible/Adaptable Dwellings

이 가이드라인은 설계사 및 건축업자가 Fair Housing Act에 규정된 접근성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도움을 주는 지침이다.³⁴⁶⁾

345) UpCodes, [Home - Florida - FBC, Accessibility 2017], (<https://up.codes/viewer/florida/fl-accessibility-code-2017> 2019. 10. 28. 최종검색)

346) UpCodes, “Fair Housing Accessibility Guidelines Design Guidelines for Accessibility/Adaptable Dwellings”, [Home - Florida - FBC, Accessibility 2017], (<https://up.codes/viewer/florida/fl-accessibility-code-2017> 2019. 10. 28. 최종검색)

2) Advisory

건물의 건설에 대한 플로리다 Accessibility Code Section 101.2는 기존 건물에 존재하는 장벽 제거(Barrier Removal)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연방법과 규정은 “Barrier Removal”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플로리다 주법 및 플로리다 Accessibility Code는 이를 의무화하지 않는다.³⁴⁷⁾ 플로리다 Accessibility Code로 인한 효과는 플로리다 접근성 기준을 장벽 제거를 의무화하고 있는 연방 명령을 준수하도록 적용하는 것에 있다.³⁴⁸⁾

(3) Fair Housing Act

플로리다 주는 연방법인 Fair Housing Act에 따라 그 주법 760.23에 장애인에 대한 주택의 판매 및 임대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³⁴⁹⁾

이러한 주법의 규정에 따르면, 공공 및 공동 구역은 장애인이 접근 할 수 있어야 하고, 문과 복도는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을 만큼 넓어야 하며, 각 장치에는 아래와 같은 부분들이 있어야 한다.³⁵⁰⁾

- 장치 내 외부로 통하는 접근성 있는 경로
- 접근 가능한 전등 스위치, 전기 콘센트, 온도 조절 장치 및 기타 환경 제어 장치
-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주방 및 욕실
- 엘리베이터가 있는 경우 모든 층과 부분에 위 요구 사항이 적용된다.
-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 위 요구 사항은 1층 부분에만 적용된다.

347) UpCodes, “Advisory”, [Home - Florida - FBC, Accessibility 2017], (<https://up.codes/viewer/florida/fl-accessibility-code-2017> 2019. 10. 28. 최종검색)

348) UpCodes, 위의 “Advisory”

349) Online Sunshine(Official Internet Site of the Florida Legislature), [Home -Statutes, Constitution, & Laws of Florida - Florida Statutes - Title 24 Civil Rights - Chapter 760 - part2 - 760.23], (http://www.leg.state.fl.us/statutes/index.cfm?App_mode=Display_Statute&URL=0700-0799/0760/Sections/0760.23.html 2019. 10. 28. 최종검색)

350) Online Sunshine(Official Internet Site of the Florida Legislature), 위의 “760.23”

제3절 프랑스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 개 관

프랑스에서는 우리나라의 ‘관광’에 해당하는 용어로서 ‘Tourisme’을 사용하고 있는데, “쾌락을 위하여 특정 장소를 여행하고 방문하는 행위”라고 정의된다.³⁵¹⁾ 이러한 사전적 정의는 관광이라는 활동이 이동을 전제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법령상에서 관광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이 관광 관련 활동 및 직업에 해당하는 여행업이 여객운송업과 숙박업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으로 규정(제 L.211-2조 제1문)하고 있다는 것이 관광의 구성요소로서 이동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관광을 향유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이 되어야 하는데, 장애인이나 노인, 영·유아 등과 같이 거동제한자(personnes à mobilité réduite)는 이동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관광에 대한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 OMS,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는 전 세계 인구의 15%인 약 10억 명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³⁵²⁾ 또한 평균 수명의 연장에 따라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동에 제약이 있는 노인의 수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고 있으며, 유모차를 이용하는 영·유아 동반 관광객까지 고려하게 되면 실제로 이동상의 문제로 관광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는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관광기구에 의해 1999년 채택된 ‘세계관광윤리강령(Code mondial d’éthique du tourisme)’³⁵³⁾ 제7조와 제8조는 각각 “관광권(droit au tourisme)”과 “관광 이동의 자유(liberté des déplacements touristiques)”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³⁵⁴⁾

351) Larousse(<https://www.larousse.fr/dictionnaires/francais-monolingue> 2019. 8. 28. 최종검색)

352)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Banque mondiale, Rapport mondial sur le handicap, 2012, p. 34.

353) 세계관광윤리강령은 1999년 9월 27일부터 10월 1일까지 칠레 산티아고에서 개최된 제13차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채택되었다.

(<http://www.fairtour.co.kr/un-%EA%B4%80%EA%B4%91%EC%9C%A4%EB%A6%AC%EA%B0%95%EB%A0%B9> 2019. 10. 28. 최종검색)

354) <https://www.unwto.org/global-code-of-ethics-for-tourism> 2019. 10. 28. 최종검색

특히, 제7조 제4항은 “가족, 청년, 학생, 노인 및 장애인의 관광은 장려되고 촉진되어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8조 제1항은 “세계인권선언 제13조에 따라 관광객과 방문객은 국제법 및 국내입법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자국 내에서는 물론 국가 간 통행의 자유를 누린다; 이들은 과도한 절차나 차별 없이 경유지, 체류지, 관광지 및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세계관광기구는 장애인이 이동의 제약 없이 관광에 대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2005년부터 수차례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tourisme accessible à tous)”을 선언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³⁵⁵⁾ 비록 위의 세계관광윤리강령이나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에 관한 선언은 국제법적으로 국가 간에 체결된 조약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회원국 국내법상 직접적인 효력은 발생시키지는 않지만, 장애인을 비롯한 관광 약자들을 배려하여 모두에게 관광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오늘날의 보편적 가치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프랑스는 수많은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을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식과 패션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통하여 전 세계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관광대국이다. 매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국가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2018년 한 해 동안 8930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프랑스를 방문하여 2위 스페인(8280만 명)과 3위 미국(8010만 명)에 앞서 있다.³⁵⁶⁾ 관광은 프랑스의 주요 산업으로서 고용과 경제성장에 큰 역할을 담당하며, 또한 국가적·지역적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능을 하기도 한다. 따라서 관광에 대한 법적 관심도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는데, 관광에 관한 입법은 20세기 초반부터 시작되었고 계속된 발전을 거듭하여 2006년에는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이 완성되었다. ‘관광법전’은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관광법전’은 장애인 등 거동제한자의 관광접근권과 관련하여서는 매우 일부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이들의 권리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의 보호와 관계된 입법을 통하여 보장된다.

355) 2005년 11월 28일부터 12월 2일까지 세네갈 다카르에서 개최된 제16차 세계관광기구 총회에서 “모두에게 접근 가능한 관광”을 위한 결의가 채택되었다.

(https://www.accessibletourism.org/resources/unwto_a_res_492xvi_10_accessibility-3.pdf 2019. 10. 28. 최종검색)

356)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Le 4 pages de la DGE, n° 88,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juillet 2019, pp. 1-4.

한편, 프랑스는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법률상의 강제적 수단만을 두고 있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일정한 수준 이상의 열린 관광을 보장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인증을 부여하는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를 운영하여 열린 관광지의 조성을 유도하고 있다. 행정의 규제적 작용과 조성적 작용, 양 측면을 통하여 관광취약계층의 관광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프랑스의 법제는 우리에게도 시사점을 주고 있다. 아래에서는 이러한 프랑스의 관광법전의 내용을 상세히 소개하기로 한다.

2. 관광법전

(1) 관광법전의 마련

프랑스에서 관광에 관한 입법의 기원은 20세기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세기부터 관광 산업이 형성되면서 관련 직업 협회(syndicats)가 설립되기 시작하였고, 이들을 통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관광객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체류에 대한 개선 등이 이루어졌다.³⁵⁷⁾ 이러한 역할은 공공서비스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민간의 활동에 의해 충족되어 왔었다. 그러던 중 ‘1910년 4월 8일 재정법률’이 국가관광청(Office national du tourisme)을 설립하였는데, 국가관광청의 주된 활동은 지방 단계에서 생산된 관광 정보를 중앙으로 집권시켜 이를 프랑스 내부와 외국에 전파하고, 교통수단, 통행, 체류 등에 대한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³⁵⁸⁾ 이를 계기로 프랑스에서 관광법(droit du tourisme)이라는 분야가 탄생하게 되었고, 관광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시작되면서 관광 분야가 본격적으로 공공서비스의 영역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919년 9월 24일 법률’은 온천 마을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을 하였고, 관광객으로 하여금 숙박세(taxe de séjour)의 납부를 의무화하였다.³⁵⁹⁾ 또한 ‘1937년 3월 19일 법률’은 여행사(agences de voyages) 설립의 요건을

357) Laurence Jégouzo, *Le droit du tourisme*, 2e édition, LGDJ, 2018, p. 38.

358) Loi de finances du 8 avril 1910, portant fixation du budget général des dépenses de l'exercice 1910.

359) Loi du 24 septembre 1919 portant création de stations hydrominérales, climatiques et de tourisme, établissant des taxes spéciales dans les dites stations, et réglementant l'office du tourisme, *JORF* du 26 septembre 1919, p. 10530.

정하고, 여행중개사(agent de voyages) 면허 제도를 도입하였다.³⁶⁰⁾

프랑스의 관광법은 이후에도 발전을 거듭하였고, 2000년에 와서는 관광 관계 법령을 하나의 법전으로 편찬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다. ‘2004년 12월 20일 오르도녕스(ordonnance)’가 이러한 법전의 법률부문(partie législative)을 작성하였고,³⁶¹⁾ 이후 ‘2006년 4월 14일 법률’이 이를 승인하고 일부 수정을 하면서 ‘관광법전(Code du tourisme)’이 탄생하게 되었다.³⁶²⁾ 또한 두 개의 ‘2006년 10월 6일 데크레(décret)’가 ‘관광법전’에 명령부문(partie réglementaire)를 추가함으로써 ‘관광법전’이 완성되었다.³⁶³⁾ 현행 ‘관광법전’은 “관광 분야의 일반 조직(제1편)”, “관광 분야의 활동과 직업(제2편)”, “시설 및 개발(제3편)”, “휴가 접근에 대한 재정조달 및 관광 관련 조세(제4편)”의 총 4개의 권(livre)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광 분야에서 적용되는 공·사법을 망라하는 법령규정을 담고 있다.

(2) 관광접근권의 보장

관광접근권의 보장을 위해 ‘관광법전’ 제4편 제1목에서 “휴가 접근(accès aux vacances)”이라는 제목 아래 제1장(제L.411-1조 내지 제L.411-21조)에서 “체크바캉스(chèque-vacances)”³⁶⁴⁾에 관한 규정을, 제2장에서 “사회적 관광에 참가하는 기관과 자연인에 대한 인증(agrément d’organismes ou de personnes physiques concourant au tourisme social)”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60) Loi du 19 mars 1937 dénomée licence, guide, interprète, JORF du 8 avril 1937, p. 4018.

361) Ordonnance n° 2004-1391 du 20 décembre 2004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u tourisme, JORF n° 299 du 24 décembre 2004, p. 21896.

362) Loi n° 2006-437 du 14 avril 2006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 tourisme, JORF n° 90 du 15 avril 2006, p. 5693.

363) Décrets n° 2006-1228 et 1229 du 6 octobre 2006 relatif à la partie réglementaire du code du tourisme, JORF n° 233 du 7 octobre 2006, pp. 14865 et 14867.

364) 연합뉴스, 2017. 8. 29., “[文정부 첫예산]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휴가비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9001100005> 2019. 8. 31. 최종검색), 실제 받음은 ‘쉐끄바캉쓰’에 가깝지만, 국내에서는 ‘체크바캉스’로 소개되고 있어 ‘체크바캉스’로 표기함.

우선, 체크바캉스 제도는 미테랑(François Mitterrand)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 후보 시절 공약을 한 사안으로서, 당선 이후 제정된 ‘1982년 3월 26일 오르도녕스’를 통하여 도입되었다.³⁶⁵⁾ 직장인은 자신이 속한 회사와 동일한 금액을 부담하여 국가체크바캉스청(Agence nationale pour les Chèques-Vacances: ANCV)가 발행하는 관광 관련 상품권인 체크바캉스를 구매할 수 있고, 대중교통, 숙박, 음식점, 관광지 등 휴가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체크바캉스로 지불할 수 있다.³⁶⁶⁾ 국가체크바캉스청은 체크바캉스를 통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의 수익으로 저소득층과 같은 관광취약계층의 휴가를 지원한다. 우리나라 정부는 프랑스의 체크바캉스 제도를 모델로 하여 ‘한국형 체크바캉스’인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을 2018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한국관광공사가 이를 운영하고 있다.³⁶⁷⁾

한편, 사회적 관광에 참가하는 기관과 자연인에 대한 인증 제도는 특정 휴가 시설 및 프로그램에 대한 인증 부여하는 것인데, 제L.412-2조는 장애인의 휴가 프로그램과 관련된 인증 제도인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vacances adaptées organisées)” 인증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3)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 인증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에 대한 인증(agrément) 제도는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신설되었고,³⁶⁸⁾ 이후 해당 규정은 ‘관광법전’ 제L.412-2조에 위치하게 되었다. 우선,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란 “프랑스나 외국에서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사회 활동 및 가족법전’ 제L.114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집단만을 대상으로 하여 숙박의 제공을 포함한 휴가 활동”을 말한다(제R.412-8조).³⁶⁹⁾

365) Ordonnance n° 82-283 du 26 mars 1982 portant création des chèques-vacances, JORF du 30 mars 1982, p. 970.

366) Laurence Jégouzo, *op. cit.*, p. 104.

367)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페이지, (<http://vacation.visitkorea.or.kr/travel/worker/workerMain.do>)

368)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JORF n° 36 du 12 février 2005, p. 2353.

369) ‘사회 활동 및 가족법전(Code de l'action sociale et des familles)’ 제L.114조는 “장애(handicap)”에 대한 정의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려는 모든 자연인 또는 법인은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 인증을 받아야 한다. 법률의 규정이 인증을 취득한 자만이 관련 프로그램의 조직 또는 운영을 할 수 있게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증은 행정법상 허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위 인증 제도의 목적은 단체 휴가 프로그램을 선택한 중증장애인의 안전을 확보하고, 관광과 관련된 안내와 동행과 관련된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³⁷⁰⁾ 인증의 권한은 레지옹(région)³⁷¹⁾의 프레페(préfet)³⁷²⁾에게 있는데, 인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은 인적사항과 함께 제R.412-11조가 나열하는 내용이 포함된 신청서를 레지옹 프레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의 기간은 5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 인증 없이 위의 프로그램을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법률 규정은 3750유로의 벌금형을 예정하고 있다.

3. 장애인 보호 관련 법제

(1) 의 의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은 주로 장애인의 보호와 직접 관계되는 입법을 통하여 보장된다. 앞서 살펴본 조직화된 적합한 휴가에 대한 인증 제도를 도입한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이 크게 신장되었다. 본 법률은 장애의 예방, 연구 및 치료, 장애에 대한 보상, 장애인에

규정인데, 장애는 “하나 이상의 신체적, 감각적, 정신적, 인지적, 또는 심리적 기능에 대한 실질적, 지속적 또는 영구적 손상이나 다발성 장애 또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게 하는 건강상의 문제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환경에서 겪는 모든 활동의 제한 또는 사회생활에 대한 참여의 제약”이라고 정의된다.

370) 총리 소속 장애인처(Secrétariat d'É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https://handicap.gouv.fr/vivre-avec-un-handicap/sports-et-loisirs/loisirs-et-vacances-28/article/vacances-adaptees-organisees-va>) #Presentation-du-dispositif-VAO 2019. 9. 1. 최종검색)

371)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같이 단일 국가(État unitaire)에 해당하며, 지역적으로 분권화(décentralisation) 된 국가의 행정사무는 각급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된다. 다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가 시·도의 광역자치단체와 시·군·구의 기초자치단체의 2단계로 구분되는데 반하여, 프랑스는 레지옹, 데파르트망(département), 코뮌(commune)의 순서에 따라 3단계로 구분이 된다. 즉, 레지옹은 프랑스의 최상위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한다.

372) 국가는 자신의 사무를 지역적으로 분산(déconcentration)하여 처리하고자 지방에서 국가의 대표자적 지위를 가지는 행정청인 프레페를 각 레지옹과 데파르트망 단위에 파견한다.

대한 재정 지원, 장애인의 교육, 노동, 건축 환경, 교통, 신기술에 대한 접근, 장애인 지원 기관, 시민권과 사회 참여 등에 관한 내용을 정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의 건축 환경과 교통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부분은 장애인을 포함한 거동제한자로 하여금 보다 나은 환경에서 관광을 향유할 수 있게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문화유산과 관련된 입법이 장애인의 문화 관광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도 한다.

(2) 건축 환경에 대한 접근

① 2005년 2월 11일 법률과 열린 관광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 제41조 내지 제44조는 장애인의 “건축 환경(cadre bâti)”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기존의 ‘건축 및 주거법전(Code de la construction et de l’habitation)’, ‘도시계획법전’³⁷³⁾ 및 ‘일반조세법전’³⁷⁴⁾상 관련 내용을 수정하였다. 특히, 법률 제41조와 제43조가 각각 관광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한 장애인 또는 거동제한자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 규정을 ‘건축 및 주거법전’ 각각 제L.111-7조 이하와 제L.151-1조 이하에서 마련함으로써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 큰 계기로 작용하게 하였다.

② 적용 범위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11-7조는 주거용 시설(소유권에 대한 공·사 구별을 하지 않음), 공중시설, 공중설치물, 근무지 등과 관련하여 건축 자재, 내부 및 외부의 정비나 시설

373) 기존의 ‘도시계획법전(code de l’urbanisme)’ 제L.460-1조는 행정청이나 공무원이 현재 건축 중에 있는 건축물에 대한 감독을 위해 방문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05년 2월 11일 법률’ 제43조 제1이 “특히 그 장애의 유형과 관계없이 장애인의 접근과 관련된 건축물에 대하여”라는 문구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의 취지는 공권력이 건축 과정에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는 법령 또는 건축허가의 내용을 보다 더 강하게 준수하도록 감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374) 기존의 ‘일반조세법전(Code général des impôts)’ 제1391 C조는 저임대료 주택(habitation à loyer modéré)과 관련된 기관이 장애인의 주택에 대한 접근 및 적응을 위해 지출한 경비에 대해서는 토지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정하고 있었는데, ‘2005년 2월 11일 법률’ 제44조는 토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조직에 “주택의 건설 및 관리를 정관상 목적으로 하는 혼합경제회사(société d’économie mixte)”를 추가하였다. 이러한 법률 개정은 조세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주택 보급을 통하여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이랄 수 있겠다.

과 관련하여 모두에게, 특히 장애인에게 접근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 중 “공중 시설(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ERP)”³⁷⁵⁾과 “공중설치물(installation ouverte au public: IOP)”³⁷⁶⁾은 관광과 관련된 건물 또는 시설에 해당되는데, 관광객이 방문 또는 이용하는 상점이나 호텔 등이 여기에 포함되기 때문이다.³⁷⁷⁾

③ 공중시설 및 공중설치물에 대한 접근

가. 공중시설과 공중설치물의 의미

공중시설과 공중설치물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 보장과 관련된 절차는 법률 시행령에 해당하는 ‘건축 및 주거법전’ 법규명령편의 제R.111-19조 이하에서 규정되어 있다. 시행령의 규정은 공중시설과 공중설치물에 관하여 동일한 절차를 적용시키고 있다. 동법전 제R.123-2조가 공중시설에 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령상에 공중설치물에 관한 정의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제R.111-19조는 공중시설을 “사람을 수용할 수 있는 모든 건축물, 건물, 실내로서 자유로운 방식이거나, 대가의 지불 또는 어떠한 참여를 통하여 입장이 되거나, 혹은 모두에게 열려있거나, 초대에 의하거나, 유료 또는 무료의 방식으로 열려있는 집회, 초대에 의하거나 유료 또는 무료로 입장이 가능한 장소”라고 정의한다. 프랑스의 행정최고법원이자 국가자문기구인 콩세이데타(Conseil d’État)는 2009년 6월 2일 의견(avis)에서 “사무실, 상점, 식당, 박물관, 도서관, 공연장, 호텔, 치료시설, 종교시설” 등을 공중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³⁷⁸⁾ 위의 공중시설 중에서 상점, 식당, 박물관, 공연장, 호텔, 종교시설은 관광과 직접 관계가 있는 공중시설에 해당한다.

375) 직역하면 ‘공중을 수용하는 시설’.

376) 직역하면 ‘공중에게 열려있는 시설’.

377) La bibliothèque juridique, *Obligation d’accessibilité des ERP aux personnes handicapées*, édition 2017, 15 mars 2017, p. 4.

378) Publication de l’avis complet du Conseil d’État, 2 juin 2009.

공중설치물의 의미에 관하여는 ‘2007년 11월 30일 각 부 상호간 훈령(circulaire interministriel)’이 “공중시설과 연결된 공적 또는 사적 공간”, “공중시설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시 설치물”, “건축되지 않은 공간” 등으로 설명하며, 그 예로서 “공공정원의 울타리, ”유람선 선착장의 떠 있지 않은 부분“, ”캠핑장에 건축물이 없는 공간“ 등을 들고 있다.³⁷⁹⁾ 따라서 공중설치물은 공중시설에 부속된 설치물에 해당하는 것을 보이지만, 실제로 이를 구별의 기준으로 채택하기에는 명확하지 않은 점이 있다.³⁸⁰⁾ 마르세유 행정항소 법원(Cour administrative d’appel de Marseille)은 건축허가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사건에서 건축물과 주차장의 관계에 대해 건축물을 공중시설로, 주차장을 공공설치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건축물과 주차장을 통틀어서 하나의 공중시설로 보았기 때문이다.³⁸¹⁾ 또한 위의 훈령은 총리에 의해 발하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속적·명령적 성격을 갖는다면 이는 위법하게 된다.³⁸²⁾ 이는 콩세이데따의 판례로도 확인된다.³⁸³⁾ 제L.111-7조의 규정이 공중설치물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형사 처벌을 규정한 벌칙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공중설치물에 대한 명확한 해석이 법령에 의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위헌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나. 접근 보장의 방식

건축 환경 내에 위치하는 공중시설에 대한 접근에 관하여는 보다 구체적인 보장의 방식을 정하고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이 최대한 가능한 독자적으로 통행을 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건물과 시설에 입장할 수 있어야 하고,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관련 정보를 참조할 수 있어야 한다(제L.111-7-3조 및 제R.111-19-7조). 이러한 접근은 모든 유형의 장애에 대하여 적용되는데, 접근의 수준은 비장애인의 접근과 동일하여야 하고, 이

379) 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n° DGUHC 2007-53 du 3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et des bâtiments d’habitation.

380) Norbert Foulquier/Frédéric Rolin/Jean-Charles Rotoullié, *La notion d’installation ouverte au public et notamment ses rapports avec la notion d’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Étude du Gridauh, 26 mars 2019, p. 10.

381) C. A. A. Marseille, 6 juillet 2017, *M. C. B, Req.* n° 15MA03524.

382) Norbert Foulquier/Frédéric Rolin/Jean-Charles Rotoullié, *op. cit.*, p. 6.

383) C. E. Sect., 18 décembre 2002, *Mme Duvignères, Req.* n° 233618.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수준을 보장하여야 한다. 접근을 보장하여야 할 건물과 그 주변시설은 다음과 관계 된다 : 외부 통로, 차량 주차장, 건물 내의 접근과 안내에 관한 조건, 건물 내에서 수평적·수직적 통행, 실내 공간과 공중화장실, 실내외의 문과 출입구, 바닥과 내벽, 내외부에 설치된 시설물과 가구(특히 조명 장치와 정보 기기).

다. 예외사항

건축 환경 내에 위치하는 공중시설은 의무적으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하지만 기술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에 필요한 경우, 접근성 보장을 위해 행하는 개선과 그 비용, 건물 및 그 주변시설의 사용에 대한 효과 간에 명백한 불균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접근 보장에 대한 특례를 인정한다(제L.111-7-3조 및 제R.111-19-10조). 장애인의 접근 보장에 대한 특례는 데파르트망의 프레페의 허가 사항에 해당하며, 이 때 프레페는 “데파르트망 주민 보호·안전·접근성 자문위원회(Commission départementale consultative de la protection civile, de la sécurité et de l’accessibilité)”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중시설이 공공서비스의 수행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조치를 의무적으로 동반하여 특례가 허가된다.

또 다른 예외 사항으로 “계획된 접근성 아젠다(Agenda d’accessibilité programmée: AD’AP)” 조치가 있다(제R.111-19-31조 이하). 데파르트망 프레페는 2014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장애인의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 공중시설과 공중설치물에 대해 2015년 9월 27일 이전에 그 소유자 또는 개발자로 하여금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공사, 계획, 공사 일정표, 자금 조달과 같은 내용을 담은 계획된 접근성 아젠다를 제출하게 하고 이에 대한 승인을 해줌으로써 제L.111-7조 등이 규정한 강제적 효력을 일시적으로 유예시킬 수 있게 하였다. 장애인의 공중시설 및 공중설치물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유도하도록 하는 이 조치는 최대 3년간의 공사기간을 허용하지만, 그 시설의 규모나 공사의 복잡성 등을 고려하여 최대 6년 또는 9년으로 연장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3년 단위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획된 접근성 아젠다 조치는 지난 2019년 3월 31일부로 종료가 되었다.³⁸⁴⁾

384) 생태 전환 및 연대부(Ministère de la t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

해외 데파르트망(DOM)인 마요뜨(Mayotte)의 관할에 속하거나, 자산의 확대나 재무 상태의 악화로 인하여 상황이 변경되는 경우거나, 현재 계획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더 이상 계획된 접근성 아젠다의 혜택을 수혜할 수 없게 되었다.

라. 벌칙규정

접근성 보장에 관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건축 및 주거법전’ 제L.152-4조가 최대 45,000유로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인의 경우에는 ‘형법전’ 제131-35조가 정한 바에 따라 최대 5배까지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225,000유로의 벌금형이 선고 가능하다. 누범의 경우에는 6개월의 징역이 부과될 수 있다.

(3) 교통에 관한 접근

프랑스에서는 ‘1975년 6월 30일 장애인 기본법률’을 계기로 하여 장애인의 교통에 관한 접근이 고려되기 시작하였다.³⁸⁵⁾ 그러나 당시에는 법률 제8조 등에서 장애 아동이나 학생이 교육기관에 개별적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거나, 의료·교육시설(établissement médico-éducatif)에 집단적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기관이 부담하는 등의 내용을 정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장애인의 이동에 대한 법적 관심은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이 제정되면서 장애인을 위한 대중교통(transport en commun) 정책으로 전환되었다.³⁸⁶⁾ 이 법률 제45조는 장애인과 거동제한자에게 접근 가능한 교통서비스의 제공을 법률의 공포로부터 10년의 기한으로 완성하도록 하였다.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1980년대 후반부터 저상버스(bus à plancher baissé)의 공급이 가능하여졌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할 수

r/ladap-agenda-daccessibilite-programmee 2019. 9. 1. 최종검색)

385)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JORF* du 1er juillet 1975, p. 6593.

386) Muriel Larrouy, “La naissance de la politique d'accessibilité. Des politiques de transport des personnes handicapées aux politiques d'accessibilité des transports urbains de voyageurs en France de 1975 à 2005”, in *Accessibilité et handicap*, Sous la direction de Joël Zaffran, PUG, 2015, p. 49.

있는 환경이 마련되었다.³⁸⁷⁾ 대중교통은 관광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입법적 발전은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도 큰 의미가 있다.

(4) 문화유산에 대한 접근

‘장애인의 권리와 기회의 평등, 참여 및 시민권을 위한 2005년 2월 11일 법률’의 제정에 따라 문화유산의 경우에도 공중시설에 해당하게 되면 ‘건축 및 주거법전’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접근을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접근을 위해 필요한 공사 등의 조치가 문화유산의 보전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의무가 면제된다.

한편, ‘프랑스 박물관에 관한 2002년 1월 4일 법률’ 제7조 제2항(현재는 유산법전(Code du patrimoine) 제L.442-7조에 위치함)은 “프랑스의 각 박물관(musée)³⁸⁸⁾은 공중의 수용, 문화의 보급, 활성화 및 중재의 업무를 담당한다. 필요한 경우, 이러한 업무는 여러 박물관이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³⁸⁹⁾ 따라서 박물관은 장애인들로 하여금 문화유산, 예술품, 각종 사료 등의 원활한 관람이 가능하도록 통행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하거나 휠체어 등 물리적 이동 수단을 제공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오디오 가이드, 비디오가이드, 신호 장치, 조명 장치 등을 이용하여 감각기관과 관련된 장애인에 대한 배려를 할 필요도 있다.³⁹⁰⁾ 장애인의 기본권 보장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향유권을 보장하는 것도 공공서비스에 해당한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3대 원칙 중 하나인 적응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적절한 수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387) Muriel Larrouy, Ibid, p. 64.

388) 프랑스어 musée는 박물관으로 번역되지만 미술관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389) Loi n° 2002-5 du 4 janvier 2002 relative aux musées de France, *JORF* du 5 janvier 2002, p. 305.

390) Éric B. Degros, “Accessibilité et droit français : la perspective d’un tourisme durable, égal pour tous”, *Tourisme et transport*, 32-2, 2013, p. 99.

4.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

(1) 의 의

오늘날 특정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해 행정객체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적 행정작용뿐만 아니라 이를 유도·지원하기 위한 조성적 행정작용이 많이 활용된다. 프랑스에서는 특히 관광 분야에서 행정주체가 특정 지역에 라벨(label) 또는 인증마크(marque)를 부여하는 ‘지역라벨링 제도’를 활용하여 이러한 행정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표적인 지역라벨링 제도로는 “꽃피는 마을과 도시(Villes et villages fleuris)” 라벨이 있다.³⁹¹⁾

우리의 열린 관광 정책에 상응하는 목적으로 프랑스에서는 장애를 가진 사람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불편함 없이 관광할 수 있는 관광지를 활성화하기 위한 ‘열린 관광지(Destination pour tous: DPT)’ 라벨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Destination pour tous’의 뜻을 그대로 옮기면 ‘모두를 위한 목적지’인데,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라고 풀어 옮길 수 있다.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는 2001년부터 시작된 ‘관광과 장애(Tourisme et Handicap)’ 라벨 제도를 기원으로 한다.³⁹²⁾ 관광과 장애 라벨 제도는 관광지 자체의 접근성에만 초점을 맞춘 제도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종합적인 접근성을 평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할 필요가 있었고, 따라서 2013년 열린 관광지 라벨 제도로 대체되었다.

국가는 열린 관광지 라벨을 획득하고자 하는 꼬뮌의 신청에 대해 심사를 통하여 해당 라벨을 부여하게 된다. 2014년에 보르도(Bordeaux)가 처음으로 열린 관광지 라벨을 취득하였고, 최근에는 남부의 에호(Hérault) 데파르트망의 소도시 발라뤼-레-방(Balaruc-les-Bains)과 북부의 솜(Somme) 데파르트망의 중심도시 아미앙(Amiens)이 2017년에 동일한 라벨을 획득하였다.

391) 프랑스의 지역라벨링 제도와 꽃피는 마을과 도시 라벨에 관하여는 조효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라벨링 : 프랑스의 꽃피는 마을과 도시 제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제89권, 2016. 6., 163~180면.

392) “관광과 장애” 라벨 제도와 관련하여 프랑스 정부가 제공하는 인터넷 정보로는 프랑스 총리소속 장애인처를 참고(<https://handicap.gouv.fr/vivre-avec-un-handicap/sports-et-loisirs/loisirs-et-vacances-28/article/destinations-pour-tous> 2019. 9. 2. 최종검색)

[그림 8] 프랑스의 관련 라벨 이미지



출처: 관광과 장애 라벨은 Tourism&Handicap(<http://www.tourisme-handicaps.org/les-labels/>), 열린 관광지 라벨은 프랑스 장애인 사무국(<https://handicap.gouv.fr/vivre-avec-un-handicap/sports-et-loisirs/loisirs-et-vacances-28/article/destinations-pour-tous>), 열린 관광지 라벨을 취득한 꼬뮌은 왼쪽부터 DGE (<https://www.entreprises.gouv.fr/>), Balaluc(<http://www.ville-balaruc-les-bains.com/>), AMIENS(<http://www.amiens-tourisme.com/>)

(2) 추진 체계

프랑스의 열린 관광 정책은 장애인 배려, 경제 활성화 및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적 목적을 조화롭게 반영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특징은 ‘국가열린관광위원회 (Commission nationale Destination Pour Tous: CNDPT)’를 중심으로 한 정책의 추진체계에서 잘 드러난다. 본 위원회는 2011년 6월 8일에 열린 전국 장애 컨퍼런스에서 당시 연

대·사회통합부 장관과 통상·소상공·중소기업·관광·자유자영업·소비자처장이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하여 창설된 위원회이다.³⁹³⁾ 현재 이 위원회는 장애인, 경제 및 관광 등 세 가지 목적을 담당하는 기관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있다. 장애인 배려의 목적에 대해서는 우리의 보건복지부에 해당하는 총리 소속의 ‘장애인처(Secrétariat d’É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Personnes handicapées)’를 대표하여 ‘사회통합국(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DGCS)’이 위원회의 공동의장을 맡고 있다. 경제 정책적 측면에 대해서는 우리의 기획재정부에 해당하는 경제·재정부의 ‘기업담당국(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DGE)’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한다. 관광 정책 담당기관³⁹⁴⁾으로서 ‘기업·공정거래·소비자·노동·고용 지방청’³⁹⁵⁾이 위원회의 공동 위원장을 구성한다. 이 지방청은 우리의 고용부에 해당하는 프랑스 노동부와 경제·재정부가 공동으로 주무기관인 중앙행정조직으로서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는 중앙행정조직이다.

‘국가열린관광위원회(Commission nationale “Destination Pour Tous”: CNDPT)’의 구성에 관하여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총 네 집단(collèges)에 의해 구성된다.³⁹⁶⁾ 첫 세 집단에게는 의결권이 인정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집단은 의결권 없이 발언권만 가진다.

우선, ‘제1집단’은 관계 행정청의 대리인에 의해 구성된다.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장애인 부문 장관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관광 부문 장관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u tourisme), 이동 네트워크 접근 부문 장관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e l’accessibilité de la chaîne de déplacement), 문화 부문 장관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ministre

393) 프랑스 노인 및 조력자 정보 포털 사이트, (<https://www.agevillage.com/actualite-8054-1-handicap-commission-nationale-label-destination-pour-tous.html> 2019. 9. 2. 최종검색)

394) 프랑스 정부에서 관광 정책은 2017년 5월 개각 이후로는 ‘유럽·외교부 장관’(Ministre de l’Europe et des Affaires étrangères)에서 담당하고 있다.

395) 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DIRECCTE ou DIECCTE).

396)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marques-nationales-tourisme/acteurs-de-la-demarche-destination-pour-tous> 2019. 9. 11. 최종검색)

chargé de la culture), 스포츠 부문 장관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u sport), 지방자치단체 부문 장관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ministre chargé des collectivités locales), 장애 관계 부처 간 위원회 사무총장의 대리인 1인(1 représentant du secrétaire général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du handicap).³⁹⁷⁾

‘제2집단’은 장애인의 대표자에 의해 구성되는데, 주로 비영리단체에 해당한다.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마비 환자 단체(Association des paralysés de France: APF), 전국 부모, 정신장애인, 그들의 친구 단체 연합(Union Nationale des associations de parents, de personnes handicapées mentales et de leurs amis: UNAPEI), 전국 청각장애인의 사회 포용을 위한 연합(Union nationale pour l’insertion sociale des déficients auditifs: UNISDA), 프랑스 시각장애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협회(Confédération française pour la promotion sociale des aveugles et des amblyopes: CFPSAA), 전국 정신질환자의 친구 및 가족 연합(Union nationale des amis et familles de malades psychiques: UNAFAM), 프랑스 간병인 단체(association française des aidants), 가족, 아동, 노인 고등위원회의 노인 및 은퇴자 단체(formation Personnes âgées et retraitées du Haut conseil de la famille, de l’enfance et de l’âge: HCFEA).³⁹⁸⁾

‘제3집단’은 지방 관련 단체와 경제 단체에 의해 구성된다. 그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 프랑스 시장 단체(Association des maires de France: AMF), 데파르트망 여행사 네트워크 : 관광과 지방(Réseau des agences départementales Tourisme et Territoires: T&T), 국가 레지옹 관광 위원회 협회(Fédération nationale des comités régionaux du tourisme: Destination Région), 프랑스 관광 사무소(Offices de tourisme de France: OTF), 프랑스 상공회의소(Chambres Françaises de Commerce et d’Industrie France: CCI France), 호텔산업 및 종사자 연합(Union des Métiers et des Industries de l’Hôtellerie: UMIH), 야외 호텔업 협회

397) 프랑스 경제 · 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marques-nationales-tourisme/acteurs-de-la-demarche-destination-pour-tous> 2019. 9. 11. 최종검색)

398) 프랑스 경제 · 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marques-nationales-tourisme/acteurs-de-la-demarche-destination-pour-tous> 2019. 9. 11. 최종검색)

(Fédération nationale de l'hôtellerie de plein air: FNHPA).³⁹⁹⁾

‘제4집단’은 특별한 권한이나 경험으로 인하여 인증의 관리에 협력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2인에서 6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장애인 주무부처와 관광 주무부처에 의해 공동으로 임명되는데, 필요한 경우 국가열린관광위원회 소속의 타 부처에서 추천할 수 있다.⁴⁰⁰⁾

(3) 열린 관광지 심사

열린 관광지 라벨에 관한 심사는 장애를 가진 가족과 함께 여행하는 가정이 어려움 없이 여행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이루어진다. 장애를 청각, 정신, 이동 및 시각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이 가운데 두 가지 이상의 장애에 대하여 여행에 어려움이 없을 경우에 열린 관광지 라벨이 부여된다. 여행의 어려움을 판단할 때는 비단,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여행의 모든 영역을 포함한다.

- 숙박, 음식점, 관광 레저 활동 등 관광지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들의 접근성
- 근접 상권, 의료서비스 등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의 이용 가능성
- 해당 지역 내의 전체 교통·이동 수단의 접근성
- 각 장애 유형에 맞는 의사소통 수단의 접근성
- 비용적 접근성

본 인증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후 다른 장애를 가진 가족들을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관광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새로운 열린 관광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관광 산업이 매우 발달한 만큼 지역 간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인증 여부가 관광산업에 중요한 경쟁력이 될 수 있다.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에 대략 12개월이 소요된다.⁴⁰¹⁾

399)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marques-nationales-tourisme/acteurs-de-la-demarche-destination-pour-tous> 2019. 9. 11. 최종검색)

400)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marques-nationales-tourisme/acteurs-de-la-demarche-destination-pour-tous> 2019. 9. 11. 최종검색)

401) Gouvernement.fr, “Handicap: un label pour un tourisme plus accessible(8 août 2017)”, (<https://www.gouvernement.fr>)

(4) 라벨 취득의 효과

국가열린관광위원회가 부여하는 ‘열린 관광지’ 라벨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갱신이 가능하다. 5년의 기간으로 부여된다.⁴⁰²⁾ 열린 관광지 라벨은 일정한 국토 내에서 장애인이거나 거동 제약자가 접근 가능한 다양하고 질 높은 관광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장한다.⁴⁰³⁾ 그러나 이러한 효과는 직접 법률관계의 변동을 일으키는 행정행위의 효력과는 관련이 없어 보인다.

라벨 취득의 법적 효과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열린 관광지 라벨 마크를 무상으로 이용할 권리를 인정받는데 불과하며, 국가가 라벨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에게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⁴⁰⁴⁾

한편, 국가는 열린 관광지 라벨과 본 라벨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정보를 장애인과 관광 분야의 주무부처 홈페이지에 게시하기 때문에 관련된 홍보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⁴⁰⁵⁾

라벨을 취득한 지방자치단체가 라벨의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는 라벨의 만료 12개월 전에 국가열린관광위원회에 종합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벨의 갱신을 위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보다 향상된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는데, 특히 다음과 같은 사항이 중요하다.⁴⁰⁶⁾

- 관광의 다양화와 혁신 및 이에 동반되는 도구와 기술
- 행위자 전체를 아우르는 지방 정책의 강화

t.fr/argumentaire/handicap-un-label-pour-un-tourisme-plus-accessible 2019. 9. 2. 최종검색)

402)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marques-nationales-tourisme/acteurs-de-la-demarche-destination-pour-tous> 2019. 9. 11. 최종검색)

403)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Guide méthodologique d'accompagnement des territoires dans la démarche de labellisation *Destination pour tous*」, janvier 2018, p. 30.

404)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Ibid, p. 30.

405)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Cahier des charges de la marque d'État *Destination pour tous*」, janvier 2018, p. 16.

406)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Ibid, p. 16.

- 관련 직업인 및 행위자 네트워크의 다양화 및 강화
- 관광, 여가 또는 휴식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관광지, 교통망, 동행 방식의 양적, 질적, 지리적 계획에 대한 점진적 확장
- 협력의 구축(특히 라벨을 취득하거나 혁신적 계획을 가지고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제4절 네덜란드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 개 관

네덜란드에서는 정부에 의한 공공영역보다, 사회적 기업이나 장애인단체 등 민간영역의 활동이 활발하다. 사회적 기업에 하나인 Accessible Travel Netherlands는 접근 가능한 관광정보를 제공하고, 접근 가능성의 중요성과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도록 활동하고 있다.⁴⁰⁷⁾ 예를 들어, 대표적인 사업영역으로는 암스테르담 주변 지역을 위한 안내서와 함께 접근 가능한 경로, 레스토랑, 박물관, 쇼핑 지역 등 여러 명소를 제공한다.⁴⁰⁸⁾ 접근 가능한 여행상품을 기획하거나, 접근이 원활한 객실을 보장하거나, 접근이 원활한 이동장비의 대여와 교통수단 등을 마련한다.⁴⁰⁹⁾

물리적, 사회적 접근성 및 포용성은 네덜란드 도시의 정치적 의제에서 우선적이며, 모든 단계에서 정책과 그의 구현에 내재되어 있다.⁴¹⁰⁾

407) 조아라·안희자, “유럽 무장애 관광 사례조사”, 해외출장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8면, [홈 - 정보 공개 - 해외출장보고서], (https://www.kcti.re.kr/web/board/boardContentsView.do?contents_id=27_487 2019. 10. 28. 최종검색).

408) 조아라·안희자, 위의 글, 8면.

409) 조아라·안희자, 위의 글, 8면.

410) Visits4u, “Visit4u Case Studies: Barrier Free Public Spaces Rotterdam, Netherlands”, Project No: 699484, 2015, p.2 (<http://www.visits4u.eu/wp-content/uploads/2017/09/visits4u-case-study-Barrier-Free-Public-Spaces-Rotterdam-NETHERLANDS.pdf> 2019. 10. 28. 최종검색)

네덜란드에서는 포용사회 형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접근성 보장 요건을 정하고 있다.⁴¹¹⁾

-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14개의 자문 키오스크와 일선돌봄팀은 이들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어떤 지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이해하고, 이동스쿠터 또는 도어스텝램프 설치 등 필요한 도움을 관리할 수 있음
- 참가자 또는 관중으로써 장애인들에게 스포츠 및 레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상당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시각장애인 축구(Feynoord 축구클럽)와 테니스를 모두 즐길 수 있는 시설을 포함함. 해양박물관에는 놀이공원이 있으며, 식물원에는 이동스쿠터 길이 있음

네덜란드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는 국가 차원의 관광정책을 담당하고 있다. 경제부의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은 다음과 같다.⁴¹²⁾

- 네덜란드의 국제마케팅 및 국제협약의 추진을 담당하는 네덜란드 관광 및 컨벤션 협회(Netherlands Bureau of Tourism and Conventions, NBTC)에 자금 지원
- 혁신, 기업가정신, 지속 가능성 자극 - 관광산업은 이용 가능한 다양한 일반 정책 도구를 활용할 수 있음
- 자연, 레크리에이션, 기업가 정신 사이 시너지 촉진
- 관광산업협회 및 이해관계자를 위한 중앙정부 내 최초 접촉 지점 역할

경제부 관광예산은 전적으로 국가예산으로 충당된다.⁴¹³⁾ 네덜란드에서는 특별관광세가 지역 단위로 부과되며(예: 시설세, 숙박세 등), 지역당국은 이를 관광 및 일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⁴¹⁴⁾ 지역 및 지방당국은 각각의 수준에서 관광정책을 책임지고, ① 지역

411) Visits4u, op. cit., pp.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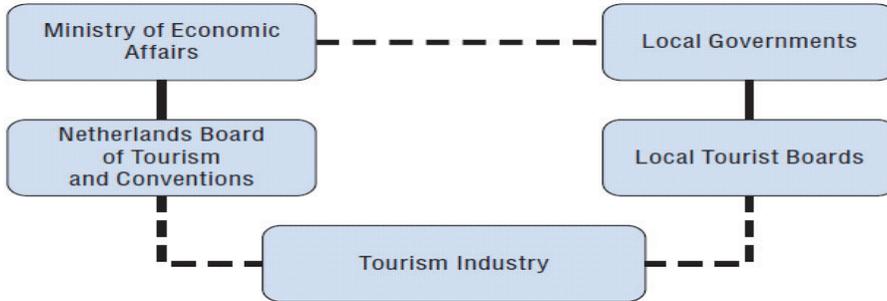
412)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4", 2014, p.247, (<http://dx.doi.org/10.1787/tour-2014-en> 2019. 10. 28. 최종검색)

413) OECD, Ibid., p.248.

414) OECD, Ibid., p.248.

또는 지방 대상의 국내 및 국제마케팅을 담당하는 지역 및 지방 대상 마케팅 조직에 자금 지원이나 ② 상품개발 업무를 담당한다.⁴¹⁵⁾

그림 9 | 네덜란드 관광정책 조직도⁴¹⁶⁾



출처: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4”, 2014, p.247.

관광정보에 대한 접근성 차원에서 네덜란드의 디지털 접근성 시장의 선두 주자인 접근성재단(Accessibility Foundation)이 눈에 띈다. 이 재단은 노인과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의 인터넷 및 그밖에 디지털미디어의 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고 있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대기업, 250개 이상의 정부 누리집, 418개 도시 등 누리집 평가 및 접근성 컨설팅을 수행하거나, GIS 구현을 위한 사용자 프로파일링 등 특수한 유용성 연구, 인지도 제고,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육에서 3D 인쇄 활용 연구 등이 진행되고 있다.⁴¹⁷⁾ 또한 네덜란드 보건부가 지원하는 단체인 Alles Toegankelijk (all accessible, 모든 접근 가능한)은 장애인과 기업을 함께 모으고 연결하여 물품과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주고 있다.⁴¹⁸⁾

Toegankelijk Toerisme Nederland B.V.는 누리집에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과 가족 및 친구를 위한 휴가 숙박시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이러한 접근 가능한 숙박시설을 보다

415) OECD, Ibid., p.248.

416) OECD, Ibid., p.247.

417) The Accessibility Foundation, (<https://www.accessibility.nl/english> 2019. 9. 8. 최종검색)

418) The Accessibility Foundation, 위의 홈페이지 자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활동하고 있다.⁴¹⁹⁾ ‘Toerisme voor iedereen - een andere manier van kijken(모두를 위한 관광 - 다른 보는 방법)’이라는 소책자에서는 관광종사자들이 고령화되고 있는 네덜란드 인구에 대해 생각하도록 장려하고,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들이 하루 여행이나 휴가를 가는 것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⁴²⁰⁾ 더욱이 ‘Design for all’과 ‘Universal Design’과 같은 최근의 동향과 함께 주변 환경을 디자인할 때 사람들의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⁴²¹⁾

UNWTO가 모두를 위한 접근이 쉬운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을 공식적으로 의제화한 이후 네덜란드에서도 이와 관련한 법정책화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모두를 위한 접근이 쉬운 관광의 환경 조성을 위한 네덜란드에서 이루어진 공·사영역의 역할과 협업, 법정책적 이행 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해하는 것은 우리나라 열린 관광 조성 현황을 점검하고 정책 추진을 위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 접근성 보장 관련 법제

네덜란드에서 2003년 5월 2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Act on Equal Treatment on the Grounds of Handicap or Chronic Illness(장애 또는 만성 질환에 대한 동등한 처우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 차별금지법’이라 함)은 대중교통이나 여행 정보 등과 관련된 각종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⁴²²⁾ 즉, 장애 차별금지법 제8조에서는 관광접근권 보장에 대한 차별 금지 규정을 두고 있으며, ① 여행에 필요한 대중교통과 관련된 건물 및 인프라에 대한

419) van der Duim, “Accessible Tourism in the Netherlands: Sector Analysis Report 2017”,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8, p.8, (https://www.wur.nl/upload_mm/f/9/c/8199b474-a8a5-4385-8ff4-4c55fac1e53f_Accessible%20Tourism%20in%20the%20Netherlands_Sector%20Analysis%20Report%20%20June%202018.pdf) 2019. 10. 28. 최종 검색)

420) van der Duim, Ibid., p.8.

421) van der Duim, Ibid., p.8.

422) DREDF(Disability Rights Education Defense Fund) (<https://dredf.org/legal-advocacy/international-disability-rights/international-laws/netherlands-act-on-equal-treatment-on-grounds-of-handicap-or-chronic-illness/>) 2019. 10. 28. 최종 검색)

접근권과 ② 대중교통 서비스 및 여행 정보의 제공, ③ 대중교통과 관련된 계약의 체결과 실행 또는 종료 등의 분야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⁴²³⁾

또한, 1992년 10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Building Decree상의 요구사항은 성능에 기반하고 있다. Building Decree 2003 Chapter 4 유용성 측면에서 요구사항에서는 접근성 섹터(제4.2조)와 접근성(제4.4조)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었다.

Building Decree 2003에서는 500m² 이상 호텔에 대하여 최소 40%의 무장애 객실을 갖추도록 하였으나, 당시 현실에서는 보통 1~2개에 그치고 있었다.⁴²⁴⁾ 당시 암스테르담의 Eden Hotels와 Park Hotels의 경우에도 170~300개 객실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무장애 객실은 10개에 불과했다고 한다.⁴²⁵⁾ 이후 개정된 Building Decree 2012에서는 접근 가능한 건물에 주거용 건물을 포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Building Decree 2012는 현재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편, 네덜란드는 2016년, 장애인의 권리를 장려하고 보호하며 보장하기 위한 장애인 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비준한 바 있다. 이 협약은 이미 2006년 12월 31일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것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의 인식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다. 즉, 장애인은 혜택을 수동적으로만 받는 대상이 아니라, 자유에 근거한 자신의 권리를 동등하게 주장하는 주체로 보고 있다. 네덜란드의 이러한 법정정책적 동향은 자국의 장애 없는 관광이나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을 장애인권리협약과 더욱 연계하여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 장애인권리협약 제3조에서는 협약의 8가지 일반원칙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접근성(accessibility)은 다양한 상황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고 있다. 이는 협약의 구체적인 내용인 사법에 대한 접근(제13조), 정

423) DREDF(Disability Rights Education Defense Fund) (<https://dredf.org/legal-advocacy/international-disability-rights/international-laws/netherlands-act-on-equal-treatment-on-grounds-of-handicap-or-chronic-illness/> 2019. 10. 28. 최종 검색)

424) 조아라·안희자 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25면, <표 2-5>.

425) 조아라·안희자 외, 위의 연구용역보고서, 25면.

보에 대한 접근(제21조)뿐만 아니라, 문화생활, 오락, 여가생활, 체육활동에 대한 참여(제30조)에서 접근성 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3. 로테르담의 관련 법제

네덜란드 도시들은 해변, 스포츠 시설, 공공장소, 교통수단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네덜란드 도시 중에 하나인 로테르담 시는 2015년 유럽위원회(European Commission)의 Access City Award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다.⁴²⁶⁾ 2007년 이래로 로테르담은 네덜란드에서 가장 접근이 쉬운 해변용 휠체어와 보행보조기구, 접근이 쉬운 화장실, 최고 수위선(high water mark)으로 친화적이게 가는 휠체어를 운영하고 있다.⁴²⁷⁾

또한, 로테르담 시는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간 협의를 통하여 2014년, 야외에 위치한 공공장소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지침을 마련한 바 있다.⁴²⁸⁾

(1) 야외공간에 대한 지침

- 입법 배경 및 목적: 2014년 로테르담 시의 야외공간에 대한 지침(guidelines for the outdoor space)은 이러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와 이해관계자 사이에 대화를 통하여 공동으로 마련되었음
- 여기에는 도보 경로에서 2cm 이하의 높이 차이, 3cm 이하의 불균형, 최소 180cm의 여유 공간, 공공건물의 주요 출입구에서 50m 이내에 각 200m 마다 접근 가능한 주차 공간이 적어도 하나 이상 포함됨
- 2014년에는 도로설계표준(standard for road design)이 접근성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도록 수정되었음

426) Visits4u, op. cit., p.1

427) Visits4u, Ibid., p.2.

428) Visits4u, Ibid., pp.2-3.

- 주요 작업이 진행될 때마다 접근성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안서가 장애인의 요구와 그 요구를 충족하는지 확인함

- 접근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전화나 인터넷, ‘Better Outdoors’라는 앱⁴²⁹⁾을 사용하여 보고할 수 있음. 또한 ‘신속한 수리(rapid repair)’제도에 따라 24시간 안에 접근에 영향을 미치는 긴급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음
- 2016년 로테르담 시는 접근성과 포용적 사회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임, 훈련, 스포츠, 모임장소에 대한 비전 문서를 발표했다

(2) 대중교통에 대한 접근성 보장

로테르담 시의 대중교통과 관련한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⁴³⁰⁾

- 네덜란드법상 2019년까지 모든 대중교통정류장의 80%를 휠체어 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데, 로테르담 시는 이미 2015년에 이 수치를 초과했음
- 대중교통정류장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 정보뿐만 아니라 번잡한 장소의 오디오 관광을 포함하고 있음
- 보행자 통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폐기된 자전거를 제거하는 정책을 시행함
- 도시 전역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운영하는 이웃주민버스서비스는 55세 이상의 모든 사람들이 주류사회에 노인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함
-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은 접근 가능한 사람들이 제공하는 주문형 택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2015년 기준 약 21,000명의 일반사용자가 있음

429) 우리나라의 경우 전국단위 정밀공간정보 구축 지원, 맞춤형 특수기술 개발·보급 지원(예: 자율주행 휠체어, 휠체어부 등), 지역기반 민간주체 양성을 위한 법제도·정책 정비(예: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공간정보 취약계층 복지증진 지원 조항 명시)에 관하여 강혜경·임용호·임거배·하태훈, “장애인·노인·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무장애 공간정보 구축·활용 지원방안”, 『국토정책』 Brief No. 725, 2019 참조.

430) Visits4u, op. cit., p.3.

(3)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로테르담 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정보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장된다.⁴³¹⁾

- 로테르담 사람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새로운 수요자 운영 누리집이 개발됨
- 많은 노인들을 포함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정보와 조언은 시내 상점에서 전화와 얼굴을 마주보고 조언을 통해 이용할 수 있음
- 이웃주민안내서는 여행 및 주택과 같은 문제에 대한 실용적인 팁과 도시 활동에 대한 정보와 함께 책자로 제작됨
- 자원봉사자들은 지원, 관리, 활동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돕기 위해 훈련을 받고 있음
- 지방자치제 스포츠컨설턴트는 장애인이 자신이 선택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스포츠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

제5절 일본의 열린 관광 관련 정책과 법제

1. 개 관

일본 정부는 2016년 3월 30일, 제2회 ‘일본의 미래를 위한 관광비전 구상회의(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構想会議)’에서 ‘내일의 일본을 위한 관광비전(明日の日本を支える観光ビジョン)’을 결의하고, 일본방문 외국인 여행자수를 2020년 4,000만 명, 2030년 6,000만 명으로 설정한 바 있으며, ①외국인이 즐길 수 있는 환경으로 정비, ②외국인이 좋아하는 관광콘텐츠 충실화, ③일본 관광국과 각 지역(자치체 및 관광지역만들기법인)의 적절한 역할분담과 연계를 강화하고, 외국인의 지방 방문 및 소비 확대를 위하여

431) Visits4u, Ibid., p.4.

노력, ④출입국 원활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⁴³²⁾

한편, 일본정부는 유니버설 투어리즘을 열린 관광의 범주로 두고, 고령이나 장애 등에 관계없이 모두가 쉽게 참가하여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여행으로 인식하여 유니버설 관광 촉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⁴³³⁾

즉, 일본에서는 모두가 안심하고 여행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비영리법인 등 폭넓은 관계자들의 협력 하에서 지역의 준비체제 강화를 촉진하는 한편 여행상품의 조성 및 보급 등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고 유니버설 투어리즘의 보급 및 촉진을 도모하고 있는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⁴³⁴⁾

2. 이동 원활화 관련 법제

(1)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2006)의 제정

일본에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의 이동 원활화를 위한 법적 기초를 마련하기 위하여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이하, 이동 원활화법이라 함)을 2006년 6월 21일 공포하고, 같은 해 12월 20일부터 시행해오고 있다.⁴³⁵⁾ 해당 법률은 기존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고령자, 장애인 등의 대중교통을 이용한 이동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을 폐지하면서 제정한 통합 법률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432) 首相官邸(수상관저) 홈페이지(https://www.kantei.go.jp/jp/singi/kanko_vision/dai2/gjisidai.html 2019. 10. 28. 최종검색)

433) 国土交通省 観光廳(국토문통성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you/manyuaru.html> 2019. 10. 28. 최종검색)

434) 国土交通省 観光廳(국토문통성 관광청) 홈페이지(<https://www.mlit.go.jp/kankocho/shisaku/sangou/manyuaru.html> 2019. 10. 28. 최종검색)

435) DINF 홈페이지(<https://www.dinf.ne.jp/doc/japanese/law/6laws/bf2.html> 2019. 10. 28. 최종검색)

이동원활화법은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에서 이동상의 및 시설의 이용상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의 촉진을 도모하고, 공공의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법 제1조). 즉, 이러한 입법 목적에 따라 고령자, 장애인 등의 자립적인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대중교통의 여객 시설 및 차량 등, 도로, 야외 주차장, 공원 시설 및 건축물의 구조 및 설비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일정한 지역의 여객 시설, 건축물 등 및 이들 사이의 경로를 구성하는 도로, 역전 광장, 통로 기타의 시설의 일체적인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조치와 기타 조치를 강구하는 것을 입법 목적에 포함하고 있다(법 제2조~제18조).

특히, 이동원활화법에서는 “중점정비지구”를 정하고 있는데, 생활 관련 시설(노인, 장애인 등이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서 이용하는 여객 시설, 관공서 시설, 복지 시설 기타 시설을 말한다.)의 위치를 포함하고, 생활 관련 시설 상호간의 이동이 보통 도보로 이루어지는 지역을 말한다. 이러한 중점정비지구는 생활 관련 시설 및 생활 관련 경로(생활 관련 시설 상호간의 경로를 말한다)를 구성하는 일반 교통용 시설(도로, 역전 광장, 통로 그 밖의 일반 교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말한다.)에 대해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한 사업이 실시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동 등 원활화 계획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본계획을 정하여야 할 의무가 소관부처(주무대신)에 주어지고 있는데, 다음의 사항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3조)

- 이동 등 원활화의 의의와 목표에 관한 사항
-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시설 설치 관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중점 정비 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의 중요성에 관한 사항
- 중점 정비 지구의 위치 및 구역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생활 관련 시설 및 생활 관련 경로 및 이들의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생활 관련 시설, 특정 차량 및 생활 관련 경로를 구성하는 일반 교통용 시설에 대한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실시해야 할 특정 사업 기타 사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 위에서 규정하는 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기타 시가지 개발 사업에 관해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자전거 기타 차량의 주차를 위한 시설 정비 관한 사항 기타 이동 등 원활화에 이바지 시가지의 정비 개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중점 정비 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 이동 등 원활화의 촉진을 위한 시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기타 이동 등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사항

그 밖에도 국가의 책무(제4조)와 지방 공공 단체의 책무(제5조), 시설 설치 관리자 등의 책임(제6조), 국민의 책무(제7조)에 대하여서 각각의 일반적인 책무 내지 의무 규정을 두고 있다.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하여 각 주체별로 이행하여야 할 조치를 의무화하고 있는데, 각 분야별 시설 설치 관리자가 강구해야 할 조치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① 대중교통 사업자 등의 기준 준수 의무

대중교통 사업자 등은 여객 시설의 신설 또는 큰 개량 또는 차량 등을 도입하는 때에는 당해 여객 시설 또는 차량 등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기준 (이하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이라한다)에 적응하고, 당해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 다만, 대중교통 사업자 등은 이미 그 사업목적에 따라 사용해 온 여객 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하여서는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의무는 면제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사업자 등은 고령자, 장애인 등에게 이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고 그 직원에게 이동 등 원활화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여객 시설 및 차량 등의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의 적합성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 명령 등의 절차를 정하도록 하고 있어 실질적인 관리 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제8조 및 제9조)

또한, 도로관리자(제11조), 야외주차장 관리자(제12조), 공원관리자(제13조)에 대하여서도 유사한 수준의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하여서는 보다 상세한 기준과 관련 의무를 정하고 있는데, 다음의 내용과 같다.

②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등에 대한 의무

가.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등의 기준 준수 의무 등

건축주 등은 특별한 특정 건축물의 일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용도 변경을 포함한다)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별 특정 건축물을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일정한 기준(이하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이라 한다)을 적용하도록 한다. 건축 이후에도 당해 건축물에 대하여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해야 한다.(제14조 제1항)

다만, 지방 자치 단체는 그 지역의 자연적 사회적 조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는 고령자, 장애인 등 특정 건축물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목적을 충분히 달성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 특정 건축물에 조례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을 추가 한 건축의 규모를 조례에 별도의 규정 또는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추가 할 수 있다.(제14조 제2항)

위의 규정을 건축 기준 관계 규정하고 이에 위반 한 건축주 등에 대하여 시정 명령 등의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한편, 건축주 등(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이 적용되는 자는 제외한다)은 그 건축을 하려고 하거나 소유하고 관리하고 또는 점유하는 특별 특정 건축물(2에서 추가 한 특정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2 조례에서 추가 된 사항을 포함한다. 제7조 제3항을 제외한다)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나. 특정 건축물의 건축주 등의 노력 의무 등

건축주 등은 특별 특정 건축물 이외의 특정 건축물의 건축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특정 건축물을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 건축주 등은 특별 특정 건축물 이외의 특정 건축물의 건축물 특정 시설의 수선 또는 보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 당해 건축물 특정 시설을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적합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한다.(제16조)

다. 특정 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 보전 계획의 인정 등

건축주 등은 특정 건축물의 건축, 수선 또는 보수(이하 “건축 등”이라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특정 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 보전 계획을 작성하여 소관 행정청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제17조 제1항)

제1항에서의 계획에서는 특정 건축물의 위치, 연면적, 구조 방법 및 용도, 면적, 건축물 특정 시설의 구조 및 배치 및 유지 보전에 관한 사항, 특정 건축물의 건축 등의 사업에 대한 자금 계획 등 을 기재하여야 한다.(제17조 제2항)

소관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 특정 시설의 구조 및 배치 및 유지 보전에 관한 사항이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을 초과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할 기준을 준수하며, 자금 계획이 사업 수행에 적절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때에는 인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제17조 제3항)

기존의 특정 건축물에 설치하는 독점적으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엘리베이터에 대한 건축 기준법의 특례 및 노인,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적률 특례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제24조)

③ 중점 정비 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사업의 중점적이고 일체적인 실시

중점정비지구 지정구역은 기본계획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지정구역의 중점 정비 지구에 대한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사업의 중점적이고 일체적인 추진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제25조)

- 중점 정비 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기본적인 방침
- 중점 정비 지구의 위치 및 구역
- 생활 관련 시설 및 생활 관련 경로 및 이들의 이동 등 원활화에 관한 사항
- 생활 관련 시설, 특정 차량 및 생활 관련 경로를 구성하는 일반 교통 용 시설에 대한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실시해야 할 특정 사업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 (여객 시설의 위치를 포함하지 않는 중점 정비 지구에 있고 당해 중점 정비 지구와 동일 지정구역에 위치한 특정 여객 시설 간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실시해야 할 특정 사업 기타 사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 해당 사업과 함께 실시하는 토지 구획 정리 사업, 시가지 재개발 사업 기타 시가지 개발 사업에 관해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 자전거 기타 차량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정비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점 정비 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에 이바지 시가지의 정비 개선에 관한 사항
- 기타 중점 정비 지구에서의 이동 등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

(2) 개정된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2018)

일본의 경우, 2020년 도쿄 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을 앞두고 2018년 5월 Barrier Free 관련 법령을 마련하였으며, 이는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기존에는 고령자나 장애인에 대한 Barrier Free의 개념이 강하였다면, 개정법에서는 제2조에 “모든 국민은 연령·장애의 유무 기타 사정에 따라 차별 대우받지 않음으로써 공생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한다.”라는 부분을 신설하였다.

특히,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高齢者、障害者等の移動等の円滑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개정안이 2018년 통과되면서, 대중교통 관련 회사나 숙박시설에 대하여도 일정한 Barrier Free 의무가 주어진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즉, 건축물의 규모는 2,000㎡ 이상인 특별특정건축물(불특정다수, 또는 고령자·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건축물)이 의무 적용 대상이 된다.⁴³⁶⁾ 특히, 일정 규모(50개 객실) 이상의 신규 숙박시설을 설립하려는 경우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는 객실을 1개 이상 갖추도록 강제하고 있으며, 100개 이상의 객실을 갖춘 숙박시설의 경우에는 객실의 1% 이상이 Barrier Free 여야 함을 정하고, 2019년 4월부터는 대중교통 관련 회사의 경우에도 일정한 Barrier Free 의무가 주어졌다고 알려져 있다.⁴³⁷⁾

일본 정부에서 공개하고 있는 법률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³⁸⁾

(일본 국토교통위원회)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
(閣法 제23호) (중의원 송부) 요지**

본 법률안은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를 더욱 촉진하기 위해,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 등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업자의 범위의 확대, 대중교통 사업자 등의 강구 조치에 관한 계획의 작성의 의무화, 이동 등 원활화 촉진 지구에서 이동 등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조치 및 이동 등 원활화 시설 협정 제도의 창설 등의 조치를 강구 할 것이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 법률의 기본 이념으로 법률에 근거하는 조치는 “사회적 장벽의 제거” 및 “공생 사회의 실현”에 이바지하도록 이루어져야 한다는 취지를 규정한다.

436) DINF 홈페이지 (<https://www.dinf.ne.jp/doc/japanese/law/6laws/bf2.html> 2019. 10. 28. 최종검색)

437) Japan Times, 2018. 10. 16., “Japanese government to require wheelchair-accessible rooms at new hotels”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8/10/16/national/japanese-government-require-wheelchair-accessible-rooms-new-hotels/#.XKf7qiCP59A> 2019. 10. 28. 최종검색)

438) 參議院(참의원),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96/meisai/m196080196023.htm> 2019. 10. 28. 최종검색)

국가의 책무로서 관계 행정 기관 및 노인, 장애인 등으로 구성된 회의에서 정기적인 평가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등에 관한 규정을 추가함과 동시에 국민은 노인, 장애인 등이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이동하는 데 필요한 지원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법률에서 “대중교통 사업자 등”에 도로 운송법에 의한 일반 전세 여객 자동차 운송사업자 및 해상운송법에 의한 여객 부정기 항로 사업자를 추가한다.

주무 대신은 여객 시설 및 차량 등을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부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로서 대중교통 사업자 등이 강구 조치를 통해 달성해야 할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강구해야 할 조치 등에 관하여 대중교통 사업자 등이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사항을 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대중교통 사업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조언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대중교통 사업자 등은 매년 그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에서 정해진 목표에 관하여 그 달성계획을 작성하여 주무 대신에게 제출하고, 계획에 근거하는 조치의 실시 상황 등을 주무 대신에게 보고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지정구역은 주무 대신이 정하는 기본 방침에 따라 단독으로 또는 공동으로 당해 지정구역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 지구에 대해, 이동 등 원활화 촉진 정책을 만들도록 노력하고, 도도부 현 지정구역에 대하여 필요한 조언 기타 원조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로 관리자, 노외 주차장 관리자 등 공원 관리자 등 및 건축주 등은 이들이 관리 등하는 시설 특정 도로 신설 특정 도로 외 주차장 신설 특정 공원 시설 및 신축 특별 특정 건축물 물건에 대해, 노인, 장애인 등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건축주 등은 협약건축물 (특정 건축물 특정 시설과 일체적으로 이용에 제공하여야 대중교통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구조 등의 이유로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주무 대신이 인정한 여객 시설의 부지에 인접하거나 근접하는 땅에서 당해 건축물 특정 시설을 가지는 건축물)의 건축 등을 하려고 할 때는, 협약 건축물의 건축 등 및 유지 보전 계획을 작성하고, 소관 행정청의 인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인증을 받은 계획에 관한 협약 건축물에 용적률에 관한 특례를 마련한다.

이동 등 원활화 촉진 지구 내 또는 중점 정비 지구 내 토지의 토지 소유자 등은 그 전원의 합의에 따라, 노인 및 장애인 등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내소 등의 정비 또는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는 이동 등 원활화 시설 협약을 체결 할 수 있도록 한다.

그 밖에 필요한 규정의 정비를 실시한다.

법은 공포일로부터 기산하여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일부 규정은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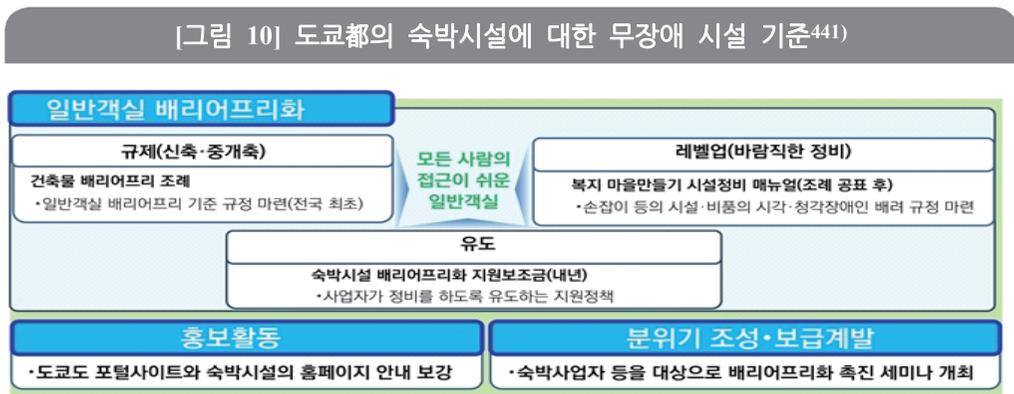
출처: 参議院(참의원), (<https://www.sangiin.go.jp/japanese/joho1/kousei/gian/196/meisai/m196080196023.htm>)

3. 도쿄의 관련 법제

일본에서는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2020년 도쿄올림픽 준비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Barrier-free(무장애)’ 시설 의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⁴³⁹⁾ 즉, 숙박시설에 대하여 신축·증개축의 경우 법률과 해당 지역 조례에서 정한 법적 기준을 갖추지 못하면 허가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와 무장애 시설에 대한 보조금 제공을 통하여 지원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⁴⁴⁰⁾

이에 도쿄도는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조례(東京都高齢者、障害者等が利用しやすい建築物の整備に関する条例)」를 통하여, 숙박시설에 대한 무장애 시설 기준과 지원 계획과 지원 범위 등을 밝히고 있다.

다음 [그림 10]은 도쿄도의 숙박시설에 대한 무장애 시설 기준과 지원 정책 내용을 도식화한 것이다.



출처: 서울연구원, “고령화·올림픽 대비 무장애시설 대상 건축물 확대” 동향자료(<https://www.si.re.kr/node/62155>)

439) KOTRA, 2018. 6. 19., “日 공공장소 등 ‘배리어 프리’ 확산에 박차”,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6856&searchNationCd=101003> 2019. 10. 28. 최종검색)

440) 서울연구원, “고령화·올림픽 대비 무장애시설 대상 건축물 확대”, [홈 - 동향 - 세계도시동향], 제457호, 2019. 6. (<https://www.si.re.kr/node/62155> 2019. 10. 28. 최종검색)

441) 서울연구원, 위의 자료.

숙박시설에 대한 무장애 시설 기준은 면적 합계가 1,000㎡ 이상인 건축물의 모든 객실이 대상이 되며, 객실까지의 이동경로와 출입구, 객실 내부에는 턱이 없어야 하는 등 무장애 기준이 적용되고, 휠체어 등의 접근을 위하여 객실 출입구와 내부 화장실·욕실 등의 출입구 폭은 80cm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 한편, 복도 폭은 140cm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⁴⁴²⁾

도쿄都의 「고령자,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조례(東京都高齢者、障害者等が利用しやすい建築物の整備に関する条例)」 중 열린 관광과 관련 있는 부분에 대한 규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⁴⁴³⁾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기 쉬운 건축물의 정비에 관한 조례

(건축물 장애인 조례)

2003년 12월 24일 도쿄도 조례 제155호

개정 2006년 12월 20일 도쿄도 조례 제147호

(취지)

제 1 조 이 조례는 노인, 장애인 등의 이동 등의 원활화의 촉진에 관한 법률 (2006년 법률 규칙 제91호.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 특정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려는 경우에 대하여 특정 건축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한다.

(정의)

제 2 조 이 조례에서 용어의 정의는 고령자, 장애인 등의 이동 등 원활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6년 정령 제379호. 이하 “령”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른다.

(특별 특정 건축물에 추가하는 특정 건축물)

제 3 조 법 제14조제3항의 조례로 정하는 특정 건축물은 다음 각호로 한다.

- (1) 학교 (령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 건축물을 제외한다)
- (2) 공동 주택

442) 서울연구원, 위의 자료..

443) 東京都都市定着部(동경도 도시정착부),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unyabetsu/machizukuri/bfree/jourci.pdf> 2019. 10. 28. 최종검색)

- (3) 양로원, 보육원, 복지 홈 및 이와 유사한 것 (영 제5조제9호에 규정된 특정 건축물을 제외한다.)
- (4) 체육관, 수영장, 볼링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운동 시설 (영 제5조제1호에 규정하는 특정 건축물을 제외한다.)
- (5) 요리점

(건축 규모)

- (1) 제4조 법 제14조제3항의 조례로 정하는 특별 특정 건축물(전조에 규정하는 특정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건축(용도 변경을 통해 특별 특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모는 별표 제 1의 상란으로 내거는 특별 특정 건축물마다 각각 동표에서 정한 바닥 면적의 합계(증축 또는 개축 또는 용도 변경의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 증축 또는 개축 또는 용도의 변경에 관한 부분의 바닥 면적의 합계. 이하 같다.)로 한다.
- (2) 전항의 규모에 미달하는 특별 특정 건축물의 건축에 대해서는 해당 특별 특정 건축물의 총 바닥 면적과 해당 특별 특정 건축물과 동일 부지 내에 존재하는 다른 특별 특정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합계와 총 2,000 평방 미터 이상이 되는 경우는 전항의 규모를 충족 것으로 본다.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

제 5 조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 이동 등 원활화 기준에 추가 할 사항은 다음 조에서 제13조까지 정하는 것으로 한다.

(계단)

- (1) 제6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계단은 다음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 층계참에 난간을 설치하여야한다.
 - 계단 높이는 18cm 이하, 폭은 26cm 이상이어야 한다.
 - 계단의 폭(당해 계단 폭의 산정에 있어서는, 난간의 폭은 1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는 120cm 이상이어야 한다.
- (2) 제1항의 규정은 영 제18조제2항제5호에 정하는 기준을 충족 엘리베이터 및 그 승강로비를 병설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계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화장실)

제 7 조 (1)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의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해야 한다.

(2) 제1항의 화장실 중 하나 이상(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별이 있을 때는 각각 하나 이상)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각 호에 정하는 것이어야 한다.

- 별표에 따른 특별 특정 건축물의 건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바닥 면적을 갖춘 경우에는 아기 의자 기타 유아를 앉힐 수 있는 시설을 마련한 베이비시트를 하나 이상 마련하고, 해당 칸과 화장실의 출입구에 그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
- 별표에 따른 특별 특정 건축물의 건축 규모가 일정 규모 이상이고 바닥 면적 합계가 1,000 평방 미터 이상인 경우 유아용 침대 기타 유아의 기저귀 교환 설비를 마련하고, 해당 화장실 출입구에 그 취지의 표시를 해야 한다(다른 기저귀 교환 장소 마련도 가능).

(욕실 등)

제 8 조 (1)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화장실 또는 샤워실 (이하 “욕실 등”이라한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의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럼방지를 위한 재료로 마무리한다.

(2) 욕실 등 중 하나 이상(남자용 및 여자용의 구별이 있을 때는 각각 하나 이상)

- 욕조, 샤워 실, 난간 등이 적절히 배치되어있는 것.
- 휠체어 사용자가 원활히 사용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공간이 확보되어있을 것.
- 출입구는 폭은 85cm 이상으로 할 것.
- 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개폐하는 구조 기타 휠체어 사용자가 쉽게 개폐하여 밖으로 통과 할 수 있는 구조로 하고 또한 그 전후에 고저차가 없을 것.

(주차)

제 9 조 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하는 주차장에 휠체어 사용자 용 주차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해 휠체어 사용자 용 주차 시설 또는 그 근처에 영 제18조제1항제3호에 규정하는 경로에 대한 유도 표시를 설치하여야한다.

(이동 등 원활화 경로 등)

제10조 영 제18조제1항의 이동 등 원활화 경로(이하 단지 “이동 등 원활화 경로”이라 한다)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해당 이동 등 원활화 경로를 구성하는 출입구(폭은 85cm 이상으로 할 것)
2. 복도의 폭은 140cm 이상이어야 한다.
3. 계단의 하단에 근접하는 복도 등의 부분(불특정 다수의 사람이 이용하거나 주로 시각 장애인이 사용하는 것에 한한다.)은 점상 블록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주로 자동차의 주차용

으로 제공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경우 또는 点状 블록 등의 부설 시설의 이용에 특히 지장을 초래할 경우를 제외한다.)

- 이하, 생략 -

출처: 東京都都市定着部(동경도 도시정착부),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bunyabetsu/machizukuri/bfree/jourei.pdf>)

4. 숙박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 정보공개 매뉴얼

일본에서는 고령자 및 장애인이 숙박시설을 안심하고 이용할 있도록 해당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사전에 판단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숙박시설이 배리어프리 정보의 적극적인 공개와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실천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숙박시설에서의 배리어프리 정보공개 매뉴얼」을 통하여 정보 공개의 필요성이나 정보 공개 방법을 정리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에서는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여행회사나 관광안내소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⁴⁴⁴⁾

제6절 시사점 및 소결

미국의 경우, 열린 관광에 대한 특정한 법률이 지정되지 않고, 기존에 운용해 온 장애인에 대한 규정을 위주로 관광접근권이 보장되고 있으나, 관련 법규에서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권을 매우 상세하고 다양한 측면에서 마련하여 두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다. 특히, 통신 분야 등에 있어서의 접근권이나, 정보 제공과 관련한 의무가 상세하게 규정되고 적용되는 모습을 보인다.

444) 国土交通省(국토문통성), (<https://www.mlit.go.jp/kankoch/shisaku/sangou/manyuuru.html> 2019. 10. 28. 최종검색)

프랑스는 장애인뿐만 아니라 거동제한자의 관광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제도와 정책을 활용하고 있다. 특히, 장애인 접근권과 관련하여 개인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적 행정작용을 비롯하여,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도록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성적 행정작용도 활용하고 있다. 장애인이 숙소, 대중교통, 관광 자원 등에 접근할 수 있도록 시설에 대한 개선을 강제하는 동시에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이 물리적 시설만의 개선으로 달성될 수는 없다. 장애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정보를 적절하게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즉, “파리 컨벤션·방문객 당국(OTCP; Office du Tourisme et des Congrès de Paris(Paris Convention and Visitors Bureau))”에서 “Accessible Paris”라는 플랫폼 운영을 통하여 장애가 있는 방문객들을 위한 종합관광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홈페이지에서 이러한 상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⁴⁴⁵⁾ 또한 장애인과 거동제한자를 배려하는 시민 의식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다.

네덜란드에서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구체적인 정의를 찾기는 어렵고, 주로 물리적 접근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⁴⁴⁶⁾ 네덜란드에서 접근성 관광 부문의 주요 강점으로는 다양한 제공, 의욕적이고 포부가 큰 기부조직, 의욕적이고 충실한 자원봉사자 그룹, 웰빙에 대한 독특한 관심을 언급할 수 있다.⁴⁴⁷⁾ 이 중에서 다양한 제공 측면에는 주중 관광, 숙박 또는 며칠간의 휴일에 이르기까지 네덜란드 안에서만 기회를 제공하거나 다른 국가로의 여행이 제공된다.⁴⁴⁸⁾ 또한 신체장애가 있는 사람에게만 집중하거나, 지적

445) Office du Tourisme paris, Paris.info. (<https://www.parisinfo.com/accessibilite>, 2019. 10. 28. 최종검색)

446) van der Duim, “Accessible Tourism in the Netherlands: Sector Analysis Report 2017”,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8, p.8, (https://www.wur.nl/upload_mm/f/9/c/8199b474-a8a5-4385-8ff4-4c55fac1e53f_Accessible%20Tourism%20in%20the%20Netherlands_Sector%20Analysis%20Report%20%20June%202018.pdf 2019. 10. 28. 최종검색)

447) van der Duim, Ibid., p.15.

448) van der Duim, Ibid., p.15.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집중하고, 어떤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장애를 수용하기도 한다.⁴⁴⁹⁾ 이러한 점에서 다양한 개인의 요구와 선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제공되는 관광상품과 대상 그룹의 다양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웰빙과 관련해서는 여가와 복지 사이의 긍정적인 관계를 명확하게 나타내며, 다양한 종류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형성이 확인되고 있다.⁴⁵⁰⁾

이와 달리 네덜란드에서 접근 가능한 관광 부문의 약점으로는 기부자와 정부자금에 대한 의존성, 시장 상황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및 전문성 부족이 언급된다.⁴⁵¹⁾ 정부 보조금과 관련하여 탈중앙화프로세스(decentralization process)는 개인조정예산(personal adjusted budget)에 대한 접근에 영향을 미쳤으며, 이 보조금의 배분과 지급을 담당하는 다른 행위자와 함께 여러 프로세스에 걸쳐 분산되어 있다.⁴⁵²⁾ 이로 인하여 많은 수령인이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곳과 사용 가능한 대상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세우기가 어렵다.⁴⁵³⁾ 정보 부족과 관련하여 접근 가능한 관광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와 개인 특성 및 선호도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찾기가 어렵다. 네덜란드의 일반관광객의 인구 통계 및 행동 패턴에 대한 광범위한 데이터가 존재하지만, 접근 가능한 관광 부문은 지금까지 이러한 통계에서 많은 관심을 받지 못했다.⁴⁵⁴⁾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정치적, 사회적 인식의 확대, 네덜란드의 풍경과 사회적 환경의 잠재력, 성장하는 시장은 네덜란드에게 좋은 기회이다.⁴⁵⁵⁾ 하지만 네덜란드에서 나타나고 있는 접근 가능한 관광 부문에 대한 어려움(위협)으로는 관리 및 그 비용의 증가, 자원봉사자의 가용성과 접근 가능한 관광에 대한 교육의 부족을 들 수 있다.⁴⁵⁶⁾

449) van der Duim, Ibid., p.15.

450) van der Duim, Ibid., p.17.

451) van der Duim, Ibid., p.18.

452) van der Duim, Ibid., p.18.

453) van der Duim, Ibid., p.18.

454) van der Duim, Ibid., p.18.

455) van der Duim, Ibid., p.19.

456) van der Duim, Ibid., p.21.

일본에서는 최근 고령자·장애인에 대한 접근권 강화 측면에서 관련 법률이 적용되고 있으나, 도쿄 올림픽을 앞두고 도쿄 인근 지역 및 오사카와 같은 대도시에서는 이동 등 원활화 촉진 지구나 중점 정비 지구를 지정하여 운용함으로써 도시계획과 연계한 모든 분야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열린 관광 분야에서 해외 다른 제도 운영 사례에 비추어 우리나라의 열린 관광 정책 및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서는 각국 사례에서 보듯이 다음과 같은 점에 집중하여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접근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장소와 웹사이트(예: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숙박시설, 공중화장실, 식당, 공공장소)
- 접근할 수 없거나 부분적으로만 접근 가능한 이동 수단과 경로(예: 접근할 수 없는 거리와 보도, 접근이 원활하지 못한 대중교통)
- 접근성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 부족
- 특정한 장소, 시설, 장비의 접근성 수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정보 부족

국내관광, 국제관광, 관광정보, 관광산업, 관광개발과 같이 방대한 관광정책 분야를 다루는 관광기본법⁴⁵⁷⁾에는 열린 관광이나 장애가 없는 관광에 대한 가치나 패러다임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오히려 관광자원 개발과 관광사업에 주를 이루고 있는 관광진흥법⁴⁵⁸⁾에서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제47조의3),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제47조의4),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제48조의5)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는 관광기본법에서 두루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진다. 그리고 관광취약계층의 정의에 대해서는 정의규정에서 언급하지 않고, 여행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제47조의5) 규정에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그밖에 소

457) 원영래, “우리나라관광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현행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26면.

458)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과 관광개발에 관한 규정이 혼재되어 있고, 규제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는 측면이 있어서 법에 따른 사업시행에 어려움이 크다고 한다, 위의 석사학위논문, 45면.

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취약계층⁴⁵⁹⁾이라고 명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의 체제 개편을 고려하면서, 관광기본법상 열린 관광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이에 따른 계획과 시책 마련, 집행을 뒷받침하여야 한다.

정책적 측면에서는 조직 구축과 더 넓은 분야에 대한 중요한 목표 제시도 중요하지만, 열린 관광 분야의 여러 조직 사이에 더 나은 협력과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또한 이를 통하여 열린 관광을 정치적, 사회적 의제로 더 높이기 위한 강력한 플랫폼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지금까지의 관광 부문은 앞으로 열린 관광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

여행 장소, 기간, 내용, 기간 등은 개인별 특성에 따라 정말 다양하게 구상될 수 있다. 하지만 여행을 떠올리고 가고 싶어 하다가도 또는 구체적인 계획에 이르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이유로 여행에 대한 생각과 계획을 그만두거나, 가고자 하는 정해진 여행지로 발을 떼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장애가 없는 이들도 이리한데 신체적, 정신적 장애자가 여행에 몸을 맡기기란 무척 어렵다. 이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불편한 사람과 경제적 부담이나 어려움 등을 가진 사람들은 여행을 꿈꿔보지도 기회를 가져보지도 못하는 경우가 있다. 열린 관광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모든 여행자의 요구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자유로운 접근을 위한 신체적, 정서적 장벽을 제거하여 여행의 기회를 넓혀주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459)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41조의3(관광취약계층의 범위)에 따르면, 관광취약계층은 기본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수급자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대상자, 그밖에 경제적·사회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관광 활동을 영위하기 위하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4장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1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성

제2절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황

제3절 소 결

제4장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방향

제1절 열린 관광 관련 정책의 추진 방향성

1. BF 인증제도의 인증 의무화 강화와 인센티브 지급

장애인, 노약자, 어린이, 임산부 그리고 일시적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BF 인증제도는 이들의 시설 접근·이용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15년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만드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 이용 시설을 의무적으로 인증 받아야 한다.⁴⁶⁰⁾

하지만 현지 숙박시설, 음식점 등은 민간사업자로 BF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상황이며⁴⁶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그리고 지역 등에 대한 BF 인증제도가 의무화 되어있지 않다.⁴⁶²⁾

또한, BF 인증 실적을 대상종류별 건축물, 여객시설, 공원, 도로, 지역 5개의 분류로 나뉘었을 때, 도로에 대한 인증실적은 8개로 가장 많은 실적을 차지한 건축물 2182개와 비교해 보면 현저히 낮은 실적임을 알 수 있다.⁴⁶³⁾

460) 김대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5면.

461)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상반기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2018, 15면.

46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7조의2(교통수단 등 인증)에 따르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이하생략.

463) 김인순 외 4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 한국장애인개발

도로는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에 있어 필수 전제조건이기에 열린 관광을 위한 환경 조성에 있어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요소이다. 따라서 도로의 인증 실적 확대를 위한 제반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BF 인증제도의 도로 지표 평가 항목의 타당성과 이해관계자 혹은 타인증과의 관계 등의 재검토를 통한 전반적인 지표 개선도 필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문제는 법적인 개선이다.

앞서 언급한대로, 「장애인등편의법」과 달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는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그리고 지역과 관련한 관광 필수요소들의 BF 인증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기에 이에 대한 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어서 공공부분의 신축시설의 경우, BF 인증이 법적으로 의무화이지만, 민간부문은 의무화가 아니기에 BF 인증에 대한 참여와 실적이 저조한 현실이다. 민간부문은 공사와 공단 등 공공기관을 제외하면 순수 민간부문의 인증은 더욱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법적인 의무화 보다는 인센티브 지급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에게는 인증 평가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이 경제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인증 후, 혜택은 전무한 상황이다.

프랑스는 장애인과 장애인 동반 가족들이 관광 제약을 느끼지 않도록 관광에 필수적인 숙박시설, 대중교통, 식음료시설 등을 강제로 제한함과 동시에 지자체에서 자발적으로 열린 관광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제적 행정작용과 조성적 행정작용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다.

국내의 BF 인증제도 또한 법적인 규제를 통한 인증 의무화와 함께 민간부문의 인증 제고를 위해선 인센티브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광역지자체 간 교통 협력체계 구축과 열린 관광 분야 공유차량 제도 검토

국토교통부는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에 저상버스 차량을 도입하였으며, 휠체어 이용자의 철도 이용 편의를 도모하고자 탑승 지원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⁴⁶⁴⁾

그럼에도 교통약자 중 이동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의 이동을 위한 개인 교통수단이나 철도 외의 수단이 부재한 상황이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즉, ① 현재 운행 중인 고속형, 직행형, 일반형의 시외버스의 경우는 저상버스가 도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⁴⁶⁵⁾ ② 휠체어 탑승을 돕는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나, 운행되고 있는 버스는 대부분이 좌석형 버스이기 때문에 휠체어가 버스에 탑승하더라도 이동이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며,⁴⁶⁶⁾ ③ 장애인 콜택시와 같은 특별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장애인 200명당 1의 지자체 운행 형태로는 이동 수요를 감당하기 부족한 한편,⁴⁶⁷⁾ ④ 지자체에서 운행 중인 차량 서비스의 경우에도 도내에서만 이용이 가능(예를 들어, 경기도에서 시행 중인 누림카·누림버스도 마찬가지로 차량 수가 총 6대로 매우 적으며 신청절차의 복잡함과 누림카의 경우 경기도 내에서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⁴⁶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할 종합적 정책 설계와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에 따르면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국내의 열린 관광지를 지속적으로 확대 지정하기 위하여서는 열린 관광지를 이용하는 교통약자들의 편의를 돕는 차량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며,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운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가 필요하다.

464)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계획(2017~2021)”, 2016, 13면.

465) 국토교통부, 위의 보고서, 13면.

466) 에이블뉴스, 2019. 9. 30.,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에 대한 생각”,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0926105303783725>, 2019. 10. 28., 최종검색)

467) 국토교통부, 위의 보고서, 53면.

468)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홈 - 주요사업 - 경기여행누림 - 이용안내 - 경기여행 누림카, 누림버스], (<https://www.ggnurim.or.kr/PageLink.do> 2019. 10. 28. 최종검색)

한편, 시·도 간 경계를 넘어 운행할 수 있는 협력 체계의 마련이 정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 사항이 된다면, 민간 차원에서는 ‘누구나 이용 가능한 공유 차량 제도’ 도입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공유차량에 대한 열린 관광 차원에서의 입법적 보완은 일본이 최근 법 개정을 통하여 공유차량에 대한 개념을 포함한 것을 사례로 참고할 수 있겠다.

최근 쏘카, 그린카, 타다와 같은 다양한 영업형태의 공유 자동차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다. 공유차량에 대하여서는 아직까지 법적 공백 상태에 있거나 엄격한 규제에 따라야 하는 한계가 있으나 주차문제, 도심지역의 정체문제, 공해문제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편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들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광 분야 공유 차량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 관광 취약계층에겐 이용이나 접근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경우 숙박 예약 서비스에 장애인 등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아 장애인법(ADA)에 위반된다고 판시하였던 법원의 판결 사례를 통해서 보듯이 향후 열린 관광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관광접근권 차원의 요구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관련 법령 상의 규제가 엄격하여 민간 공유차량 서비스를 통한 열린 관광에서의 활용은 일정한 한계를 가지고 있는 측면도 있다. 다만, 지자체의 차량 지원 서비스의 협력을 통한 열린 관광 차량 서비스 제공은 가능한 측면이 있다. 즉, 지자체와의 협력을 맺은 민간 차량 공유 서비스업체에게는 비즈니스 홍보용으로 쓰일 수 있는 인증마크를 제공하고 규제에 대한 완화 또는 규제 특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선순환적 정책 추진이 가능한 측면도 있다. 특히, 관광복지 차원에서 열린 관광 차원에서의 차량공유 서비스에 대한 서비스 사용료 지급방식을 다양화하여 문화누리카드나 지역화폐·제로페이 연계와 같이 정부나 지자체 차원의 바우처나 포인트를 활용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와 열린 관광의 관광접근성 확보 및 관광 활성화 차원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이에는 이용객, 공급업체 그리고 지자체의 긴밀한 대화와 이해를 기초로 하여야 하며,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입법과정을 통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상생 협력 방식과 기준, 활용범위 등에 대하여 내용을 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선정된 열린 관광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

열린 관광지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관광지 환경 조성을 위하여 지정된 개소당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지원되고 있다.⁴⁶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린 관광지 안내 팸플릿을 찾을 수 없거나 직원들의 열린 관광지에 대해 전혀 인지를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⁴⁷⁰⁾, 휠체어 추천 이동로와 경사로에는 이동로 단절 혹은 불필요한 턱이 생기기도 했다. 장애인 화장실은 문이 고장나있고 창고 처럼 쓰이는 경우도 존재한다.⁴⁷¹⁾

이렇듯, 선정된 열린 관광지에 대한 유지 및 관리는 전혀 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이러한 문제점을 위한 명확한 방안 또한 존재하지 않고 있다.

열린 관광지로 선정이 되었더라도 관광계약으로 인해 관광에 차별이 존재한다면 해당 관광지 지정을 회수해야 한다. 지정 회수를 위해선 열린 관광지 선정에 평가 항목이 있듯이 지정 회수를 판단할 수 있는 평가 기준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전체 지정 열린 관광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축적하고 모니터링을 위한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모니터링은 전체 개소에 분기별로 주기적인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향후, 지정된 열린 관광지의 평가기준과 필수적이고 명확한 지침 도출에 도움을 줄 것은 물론 지정된 지자체의 자발적 유지 및 관리를 유도할 수 있다.

주기적인 모니터링 실시와 관련 인력 지원을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개별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 범위 등에 대하여서는 관련 법규에서 구체적인 기준과 요건을 갖추도록 정해야 할 것이다.

469)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보도자료, [홈 - 알림소식(2019. 5. 8.)], (https://www.mcst.go.kr/kor/s_notice/notice/noticeView.jsp?pFlagJob=N&pSeq=14200, 2019. 11. 9. 최종검색)

470)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8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서”, 2018, 35~36면.

471)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위의 보고서, 50면.

4. 열린 관광 관련 정보 제공 사이트 개선

현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과 글로벌 OTA로 인해 여행의 시작부터 끝까지 원스톱으로 편리한 관광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이는 또 하나의 관광제약 요소가 되고 있다.

대부분의 디지털 기기들과 앱 그리고 관광 관련 사이트들은 비장애인의 맞춤형 이용이 가능하게끔 발전해왔다. 이로 인해, 맞춤형 정보제공, 맞춤형 관광 등이 가능하지만 이용자 범주에 장애로 인해 이용을 못하는 이들은 포함되어 있지 않아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는 정보접근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으로 물론, 장애유형별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접근 방법이 유형별로 다르기에 정보접근성 강화 및 해소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열린 관광이 차별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관광인 만큼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매체, 특히 인터넷상의 사이트들에 대한 기초적인 개선만이라도 반드시 필요하다.

열린 관광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국관광공사의 VisitKorea에서는 숙박시설, 식음료시설의 URL과 영업시간 등의 간단한 정보만 기재되어 있다.⁴⁷²⁾ 따라서 예약정보를 확인하고 결제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또 다시 다른 사이트로 이동해야 하지만 제공된 URL의 사이트들은 대부분 장애별 이용에 대한 정보를 습득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또한 거의 모든 사이트들이 장애인, 노약자, 영유아들을 위한 음성낭독 기능, 확대경, 색상 반전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관광지의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들은 누구나 이용 가능해야 한다.

472) VisitKorea대한민국 구석구석, 열린관광 페이지, (<https://korean.visitkorea.or.kr/other/otherService.do?otdid=b55ffe10-84c3-11e8-8165-020027310001>, 2019. 10. 28. 최종검색)

이를 위해선, 지정된 열린 관광지 지자체에서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필수적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음성낭독, 확대경 등의 기능을 도입해야하며, 이러한 개선은 위에서 언급했던 열린 관광지 모니터링 평가 항목으로 추가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한다. 혹은 열린 관광지에 관련 규제를 만들어 강제로 사이트에 대한 정보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 나아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애유형별로 정보 접근 방법이 다르기에,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정보 접근성의 한계를 느끼는 장애인들과 기술, 보건복지, 관광과 같은 문화 분야 등과 관련한 각 이해관계자들의 긴밀하고 오랜 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열린 관광 관련 교육과정 이수 의무화 및 전문가 과정 개설

산업의 분야가 다양하고 각 산업에 따른 이해관계자들이 존재하는 관광산업은 이 모두를 수용할 수 있으면서도 관광 중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적절한 대처를 할 수 있는 관광 종사원과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열린 관광 교육은 열린 관광 관련 전문 교육과정이나 자격증 등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진행되어 온 측면이 있다. 관련 매뉴얼이 발간되긴 하였지만, 향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열린 관광 관련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서는 열린 관광 전문가로 구성된 강사풀의 확보와 함께 열린 관광 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의 범위와 수준,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과 법적 요건을 갖출 수 있는 상세 기준이 필요하다.

열린 관광은 특히나 관련 서비스 매뉴얼이 작년 2018년도에 국내 처음으로 발간된 만큼⁴⁷³⁾, 그 응대법과 열린 관광에 대한 인식이 관련 종사자에 대하여 빠른 속도로 확산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하여 열린 관광 전문가 요건을 법제화하고, 주기적인 관련 서비스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한편, 업계에서도 전문성을

473) 서울다누림관광, [홈 - 다누림관광자료실 - 인식개선매뉴얼], (<https://www.seouldanurim.net/www/educationInfo/improveAwareness.jsp> 2019. 10. 28. 최종검색)

갖춘 인력을 확보하여 양질의 관광 접근권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노력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과정의 중요성은 네덜란드에서 열린 관광과 관련하여 관련 교육의 부족이 지적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열린 관광 분야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서는 기존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열린 관광 교육과정 이수와 함께 일정한 요건을 갖춘 높은 전문성을 갖춘 전문가가 양성될 수 있도록, 열린 관광 전문가 과정 개설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열린 관광 관련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열린 관광 환경 조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며, 향후 열린 관광 관련 종사 자격 기준이나 열린 관광 전문가 요건 등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자격 요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6. 통합적 추진 협의체 필요성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현정부 출범 이후, 비서실 개편에 따라 청와대 관광진흥비서관 직책이 사라지고, ‘국가관광전략회의’가 대통령 주재에서 국무총리 주재로 변화하면서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실도 조직 개편을 통하여 관광정책국으로 하향 조정되었다.

관광산업의 특성상 다양한 사업 영역 간의 기술·서비스 결합을 통해 관광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게 된다. 따라서, 하나의 관광 상품에 대하여서도 그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고, 법적인 규제의 틀 외에도 각 영역 간 조화를 통하여 해당 상품의 개발과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관광 분야 특히 ‘접근성’을 기초로 하는 열린 관광 분야의 관광접근권을 확보하려는 정책 추진에 있어서는 관광산업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균형감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특히나, 열린 관광지 조성, 열린 관광에 대한 정보 접근성 등뿐만 아니라 전문 열린 관광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어뮤즈트래블과 같은 기업은

한국관광공사의 공모를 통해 성장해 나가고 있는 관광벤처기업으로 앞으로의 성장을 위해선 관광 상품 내에 속하는 관광요소들과 관련한 이해관계자들을 모두 수용하면서도 국가차원에서의 산업 육성과 전문 인력 양성 등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통합적 협의체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

제2절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법제 현황

우리나라의 「헌법」은 관광과 관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열린 관광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규정 역시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헌법’의 전문 및 기본권 관련 조항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에게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장애인 등 관광취약계층에게 관광접근권을 보장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1).

열린 관광의 환경 조성을 통한 관광접근권의 보장은 개별 법률에 따라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다. 열린 관광과 관련이 되는 법률은 크게 ‘관광’ 관련 법률(2)과 ‘장애인’ 관련 법률(3)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1. ‘헌법’과 열린 관광

우선 「헌법」 전문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등의 표현을 두고 있다. 관광은 문화의 한 영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국민생활과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국가는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모든 국민이 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열린 관광에 대한 당위성은 「헌법」이 나열하고 있는 기본권 관련 조항에 의하여 보다 구체화되어 있다. 제10조가 규정하는 ‘행복추구권’과 제11조에 따른 ‘평등권’에 따라 누

구라도 차별받지 않고 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유추해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제14조는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거주·이전의 자유’는 거주지를 자유롭게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자유로운 여행을 할 자유가 포함된다. 따라서 국가는 자유로운 여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누구나가 접근 가능한 관광의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한편, 복지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헌법’ 제34조를 통하여도 국가의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실현 의무를 도출해낼 수 있다. 우선, 동조 제1항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하고 있는데, 누구나가 관광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제4항은 “국가는 노인과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 제5항은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와 사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에 대한 내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넓게 해석해보자면 우리 ‘헌법’ 노인, 청소년, 장애인, 환자 등 사회적 약자의 권리, 특히 인간답게 살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선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가 관광취약계층이 자유롭게 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복지국가원리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2. ‘관광’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 ‘관광’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로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들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은 각각 관광 행정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과 관광 행정을 집행하기 위한 공법인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이다. 우선,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열린 관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기본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의 경우 열린 관광과 직접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통하여 국가를 비롯한 공법인이 열린 관광 환경의 조성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1) ‘관광진흥법’

1961년 “관광객의 유치 및 접대와 관광에 관한 시설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사업의 진흥을 도모”하고자 ‘관광사업진흥법’이 제정되었다. 이 법률은 1975년 전 부개정의 과정에서 「관광진흥법」으로 법률명이 변경되었고, 이후 수차례의 개정을 통하여 현재까지 이어져오고 있다.⁴⁷⁴⁾ 「관광진흥법」의 목적은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사업을 육성하여 관광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에 있으며,⁴⁷⁵⁾ 관광사업, 관광사업자, 관광의 진흥과 홍보, 관광지 개발 등을 규율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관광진흥법」은 2014년 5월 28일 신설된 제47조의3과 제47조의4, 2011년 4월 5일 신설된 제48조의5 등에서 열린 관광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우선,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관한 제47조의3은 제1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장애인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며, 제2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여행 및 관광 활동 권리를 증진하기 위하여 장애인의 관광 지원 사업과 장애인 관광 지원 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본 조항은 장애인 관광 활동의 지원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재정적 지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책으로서 관련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 이동의 제약 없이 관광을 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이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법률 제47조의4는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 증진 시책 강구’에 관하여 규정하는데, 그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경제적·사회적 여건 등으로 관광 활동에 제약받고 있는 관광취약계층의 여행 기회를 확대하고 관광 활동을 장려”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복지의 증진은 주로 제47조의5에 따라 저소득층에게 ‘여행이용권’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여행 기회 확대라는 정책적 목표

474) 법률 제16051호, 2018년 12월 24일 일부개정, 2019년 6월 25일 시행.

475) ‘관광진흥법’ 제1조(목적).

가 비단 재정적 지원을 통해서만 달성될 수는 없을 것이다.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 등 신체적 문제로 인하여 관광 활동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배려도 이에 포함되어야 한다.

한편, 「관광진흥법」 제48조의5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에게 역사·문화·예술·자연 등의 관광자원과 연계한 체험기회를 제공하고,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장애인을 위한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법률 규정은 체험을 통한 관광 기회의 부여에 있어서 장애인을 소외시키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이 때 관광체험교육프로그램이 이에 참가하는 각각의 장애인이 소화하기에 적합한 수준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현행 우리 법체계에서 ‘관광’에 관한 직접적인 법률로는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들 수 있다. 「관광진흥개발기금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은 각각 관광 행정에 필요한 재원의 운용과 관광 행정을 집행할 위한 공법인의 설치와 운용에 관한 법률이다. 우선, 「관광진흥법」과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열린 관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관광기본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의 경우 열린 관광과 직접 관련되는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정책의 수립 및 실행 등의 근거가 되는 규정을 통하여 국가를 비롯한 공법인이 열린 관광 환경의 조성에 참가할 수 있게 된다.

(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은 1972년 제정되어 수차례 개정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오고 있는데,⁴⁷⁶⁾ 법률 제1조에서 본 법률의 목적을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을 통한 외화 수입의 증대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설치”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정부 출연금 및 각종 납부금 등 다양한 재원을 통하여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설치하

476) 법률 제16050호, 2018년 12월 24일 일부개정, 2918년 12월 24일 시행.

고,⁴⁷⁷⁾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이를 관리하는데,⁴⁷⁸⁾ 법률 제5조는 기금의 대여, 경비 보조, 출자, 출연 등 그 용도를 정하고 있다. 동조 제3항이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여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하면서, 제8호에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사업”을 이에 포함시키고 있다. 따라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관광접근권을 보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기금의 사용은 단순한 재정적 지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물리적으로 관광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활용될 필요가 있다.

(3) 「관광기본법」과 「한국관광공사법」

「관광기본법」과 「한국관광공사법」은 열린 관광과 관련된 직접적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다만, ‘관광기본법’은 국가로 하여금 관광 분야의 정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하여 규정하는 법률이고, ‘한국관광공사법’은 이러한 정책의 시행을 담당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공공단체를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률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식으로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현행 「관광기본법」은 1975년에 제정되어 4차례 개정을 거쳐 오늘날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⁴⁷⁹⁾ 이 법률은 “관광진흥의 방향과 시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제친선을 증진하고 국민경제와 국민복지를 향상시키며 건전한 국민관광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⁴⁸⁰⁾ 우선, 법률 제3조에 따라 정부는 관광진흥 기반 조성 and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광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관광진흥기본계획’은 “관광진흥을 위한 정책의 기본방향(제2항 제1호)”, “관광진흥을 위한 기반 조성 에 관한 사항(제2항 제3호)”, “관광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제2항 제6호)”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사항은 열린 관광 환경의 조성 and 관계될 수 있다.

477)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기금의 설치 및 재원).

478)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3조(기금의 관리).

479) 법률 제16049호, 2018년 12월 24일 일부개정, 2018년 12월 24일 시행.

480) ‘관광기본법’ 제1조(목적).

또한 제8조에 따라 정부는 “관광 여건 조성을 위하여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에 관한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2조에 따라 정부는 “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관광지로 지정하고 “필요한 개발”을 할 의무를 진다. 정부가 마련하고 개발하는 관광 여건과 관광지는 헌법 정신에 비추어 장애인을 비롯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자 및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우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한국관광공사법」은 1962년 제정된 「국제관광공사법」이 1986년 전부개정되어 현재와 같은 법률명을 사용하고 있으며,⁴⁸¹⁾ “한국관광공사를 설립하여 관광진흥, 관광자원 개발, 관광산업의 연구·개발 및 관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훈련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⁴⁸²⁾ 관광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설립되는 ‘한국관광공사’는 법률 제12조가 정하는 사업을 수행하는데, 동조 제1항 제3호가 “국민관광 진흥사업”으로서 제목에서 “장애인, 노약자 등 관광취약계층에 대한 관광 지원”을 이에 포함시켜두었다. 따라서 한국관광공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관광진흥법」 등이 정하는 열린 관광과 관계되는 법규의 시행에 참가하게 된다.

3. ‘장애인’ 관련 법률에 의한 열린 관광 환경 조성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장애인’과 관계된 법률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한데, 열린 관광과 관련하여서는 대표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들 수 있다.

481) 법률 제15171호, 2017년 12월 12일 일부개정, 2018년 3월 13일 시행.

482) ‘한국관광공사법’ 제1조(목적).

1) 「장애인복지법」

1981년 제정된 「심신장애자복지법」은 1989년 전부 개정되어 오늘날의 「장애인복지법」이라는 법률명으로 이어져오고 있다.⁴⁸³⁾ 「장애인복지법」 제1조는 본 법률의 목적을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으로 정하고 있다.

법률 제4조는 ‘장애인의 권리’에 관하여, 제8조는 ‘차별금지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우리 ‘헌법’이 선언하는 기본권, 특히 ‘평등권’을 장애인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열린 관광 정책을 통하여 장애인이 관광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여야 헌법이 정한 기본권의 정신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또한 제10조의2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의 권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종합계획은 장애인의 ‘복지’와 ‘교육문화’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는데, 이에 열린 관광과 관련된 내용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법률 제23조가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등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 등 이용편의를 위하여 한국수어 통역·안내보조 등 인적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장애인에 대한 열린 관광의 보장과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내용이다. 또한 제28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련 시설 및 설비, 그 밖의

483) 법률 제16248호, 2019년 1월 15일 타법개정, 2019년 7월 16일 시행.

환경을 정비하고 문화생활, 체육활동 및 관광활동 등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하여 명시적으로 장애인의 관광활동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2)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2008년 제정되어 오늘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⁴⁸⁴⁾으로 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⁴⁸⁵⁾ 본 법률은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열린 관광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분야의 차별금지 조항이 관계될 수 있다. 우선, 교육에 대한 차별금지에 있어서 제13조 제4항이 교육책임자가 현장견학 및 수학여행과 같은 교외 활동에서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참여를 제한, 배제,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제18조⁴⁸⁶⁾와 제19조⁴⁸⁷⁾는 각각 ‘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

484)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485) 법률 제15272호, 2017년 12월 19일 일부개정, 2018년 6월 20일 시행.

486) 제18조(시설물 접근·이용의 차별금지) ①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장애인이 당해 시설물을 접근·이용하거나 비상시 대피함에 있어서 피난 및 대피시설의 설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을 받는 시설물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에 규정한 내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7) 제19조(이동 및 교통수단 등에서의 차별금지) 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2조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교통사업자(이하 “교통사업자”라 한다) 및 교통행정기관(이하 “교통행정기관”이라 한다)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접근·이용함에 있어서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0. 5. 11.>

②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동승 또는 반입 및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장애인이 시설물이나 이동 및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과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률 제24조는 '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⁴⁸⁸⁾ '시설물'은 건축물, 거실 및 주요구조부를 말하고(제3조 제16호),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은 도로, 보도,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을 말하며(제3조 제17호), '문화·예술활동'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및 출판에 관한 활동(제3조 제10호)으로서 관광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은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직접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특히 중요한 점은 2017년 9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관광활동의 차별금지'를 규정하는 제24조의2가 신설되었다는 점이다. 제1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로 하여금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에게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서 정한 행위", 즉 각종 차별행위를 금지하도록 하였다. 제2항과 제3항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

③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의 이용에 있어서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에게 장애 또는 장애인이 동행·동반한 보조견 또는 장애인보조기구 등을 이유로 장애인 아닌 사람보다 불리한 요금 제도를 적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교통사업자 및 교통행정기관은 장애인이 이동 및 교통수단 등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이용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 및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교통행정기관은 교통사업자가 장애인에 대하여 이 법에 정한 차별행위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홍보, 교육, 지원, 감독하여야 한다.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운전면허시험의 신청, 응시, 합격의 모든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운전면허시험의 모든 과정을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거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제4항 및 제7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88) 제24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금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함에 있어서 장애인의 의사에 반하여 특정한 행동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4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문화·예술사업자는 장애인이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이 문화·예술시설을 이용하고 문화·예술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그 적용대상이 되는 문화·예술사업자의 단계적 범위 및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에게 각각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의 제공과 “장애인이 관광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의 강구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관광활동에 대한 차별을 적극적으로 금지하는 내용을 법률에 담으로써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관광사업자가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여 장애인의 관광접근권을 보장하도록 하는 가장 직접적인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3)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1998년 제정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이 일상생활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⁴⁸⁹⁾을 목적으로 하여 오늘날 시행되고 있다.⁴⁹⁰⁾ 본 법률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노인 및 임산부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 시설 이용 및 정보 접근 등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제2조 제1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열린 관광의 환경 조성이라는 측면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법률 제7조는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원, 공공건물, 공중이용시설 등은 관광과 직접 연관이 있는 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 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열린 관광의 환경 조성의 핵심적 내용에 해당한다. 편의시설이란 구체적으로 “장애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동하거나 시설을 이용할 때 편리하게 하고,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인데,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편의시설의 설치 대상 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와 같은 편의시설 설치의 의무를 지니는 ‘시설주등’은 “장애인들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 가능하면 최대한 편리한 방법으로 최단거리로

489)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490) 법률 제13805호, 2016년 1월 19일 타법개정, 2016년 8월 12일 시행.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제4조가 “장애인등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등이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과 설비를 동등하게 이용하고,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들이 이동의 불편함이 없는 사람들과 유사한 수준으로 각종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법률 제10조의2 이하에서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제도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장애인들이 대상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의 설치·운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상시설에 대하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신축하는 청사, 문화시설 등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 시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인증 제도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관광약자가 관광 관련 시설에 대하여 보다 편리하게 접근하게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4)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2005년 제정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⁴⁹¹⁾은 앞서 살펴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과 마찬가지로 장애인뿐만 아니라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교통약자’로 정의(제2조 제1호)하여 이들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교통약자(交通弱者)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이동편의시설을 확충하고 보행환경을 개선하여 사람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⁴⁹²⁾으로 하는 본 법률은 제3조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491) 법률 제16382호, 2019년 4월 23일 일부개정, 2019년 7월 24일 시행.

492)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조(목적).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하여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선언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주목할 만하다. 교통약자의 이동권은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의 이용을 통해 실현되는데, 교통수단은 자세히 버스, 도시철도차량, 철도차량, 비행기, 선박 등이고, 여객시설은 정류장, 도시철도시설, 철도시설, 환승시설, 공항 및 공항시설, 항만시설 등이다. 이러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의 이용은 이동을 전제로 하는 관광활동의 필수적인 요소에 해당한다. 따라서 교통약자에게 이들 시설에 대한 접근권을 보장하는 것은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겠다.

법률 제4조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의 이용편의 및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제5조에 따라 교통사업자는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교통수단을 제작하는 사업자는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구조·설비 또는 장치를 갖춘 교통수단을 개발·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교통사업자의 의무는 제6조 이하의 법률 규정에 의해 구체화된다.

우선,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 단위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고(제6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역시 5년 단위의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및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제7조 및 제7조의2). 교통사업자나 도로관리청 등은 제9조 이하의 규정에 따라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동편의시설은 법률 제2조 제7호가 정의하는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을 위한 보도(歩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한다. 또한 법률은 교통약자가 노선버스의 이용(제14조)과 도시철도의 이용(제

15조)을 보장하고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히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보장하고자 특별교통수단의 운행에 대하여도 규정하고 있다(제16조). 교통사업자는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이용정보(제17조)를 제공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의 권한을 가진다(제17조의2). 한편, 지방자치단체장은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고자 도로의 일정구간을 ‘보행우선구역’의 지정(제18조), ‘보행안전시설물’을 설치(제21조), ‘도로 점용물의 이설’ 명령(제22조), ‘불법시설물’의 정비(제23조) 등의 권한을 가진다. 여기 나열된 법률의 규정은 교통약자로서 하여금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보장하기 위한 입법적 취지가 있으며, 평등한 관광의 기회를 모두에게 부여하는 열린 관광의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3절 소 결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우리나라에서 관광 분야 접근성과 관련된 법제는 헌법에서 보장된 행복추구권 등을 포함하여, 무장애 관련 법률과 관광 관련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교통약자의 접근성에 관한 법령에서도 그 적용범위와 대상별 기준이 달라 설치 및 관리에 혼선이 초래된다는 지적도 있다. 즉, 이에 권익위원회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개선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으며,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과 「장애인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설 세부기준을 통일하거나, 장기적으로는 두 법률을 단일법화 하는 논의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그것이다.⁴⁹³⁾

493) 에이블뉴스, 2019. 5. 8., “장애인 이동편의 엉망? 제각각 법령 충돌, 소관부처·세부기준 달라…“설치·관리 혼선 초래” 편의 확보 위한 기준 통일, BF인증 의무화 필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508170312754560>
2019. 10. 28. 최종검색)

이처럼 시설별 세부기준 통일화나 통합법 제정에 대한 논의를 위하여서는 각 개별법별로 현행 제도 적용상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차원에서의 법제 개선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향후 열린 관광 활성화를 위한 입법 과정 및 제도 집행 과정에서는 일본의 사례에서 보듯이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에 대한 일정한 준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국내 관광산업의 세계화를 위하여서는 외국인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한 더욱 세심한 고려도 필요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제5장 결론

제5장

결론

관광산업은 다양한 사업 간의 기술이나 서비스의 결합을 통해 관광시설, 상품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산업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관광산업의 구조도 복잡하지만, 관련 법령들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그렇기에, 관광산업에서의 혁신과 관광산업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서는 각 관련 분야에 대한 종합적 고려를 통하여 각 주체별 의무 수준을 균형감 있고 일관되게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광산업의 특성은 열린 관광 분야에서도 드러나고 있으며, 관광활성화 차원과 모든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 접근성의 확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하여서는 입법 과정과 정책 추진에서 일관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이 중요한 측면이 있다.

본문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열린 관광지 조성이나 열린 관광에 대한 정보 접근성 확대와 열린 관광 관련 전문 상품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종합적인 정책 추진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실무상에서의 수요를 반영하는 다양한 관광벤처기업들이 출현하고 있고, 그 중에는 열린 관광 전문 상품을 운영함으로써 전문성과 시장성을 모두 확보하고 있는 다양한 업체들이 생겨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보편적 접근권이 보장되기 위하여서는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종사자나 관련 업체들뿐만 아니라, 열린 관광 분야에서의 무장에 관련 의무 사항과 시민의식도 절실한 측면이 있다. 또한, 관광업의 발전을 고려한 측면에서 본다면, 관광요소들을 갖춘 엔터테인먼트적 요소와 함께 안전성과 접근권이라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조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서는 국가차원에서의 종합적 정책 추진과 열린 관광 분야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의 육성·지원책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러한 실무적·정책적 측면에서 본다면, 열린 관광과 관련된 각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소관부처들의 집행 실태 점검과 실질적 이행에 대한 노력 외에도, ‘열린 관광’ 이념이나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집행체계 등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통합입법 방식이나 각 개별법률에서의 협의체 운영 방식 등을 통하여 각 소관 부처 간 협의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장하는 한편, 건축주나 대중교통시설 설치·관리자 등의 측면에서는 일종의 규제나 비용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접근성 확보 의무에 대하여서는 각 소관부처의 사회적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관광업 종사자에 대한 전문성 제고 차원에서는 열린 관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보편적 접근권 보장을 위하여 갖추어야 할 다양한 유·무형적 기초를 갖추기 위한 실무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열린 관광을 위한 적극적 정보제공의무 채택, 실태조사를 통한 집행력 제고, 센터운영을 통한 계획/관리/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개별 법률에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정책의 수립이 절실해 보인다.

다음 [표 12]은 국내 열린 관광 관련 법제의 구성과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서, 장애인 관련 법률과 관광 관련 법률 외에도,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관련 법률을 함께 구성하여, 후속 연구를 통하여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검토 대상을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표 12] 열린 관광 관련 법제의 구성과 추가적 검토 필요사항⁴⁹⁴⁾

법률 구성		열린관광 관련 조문	규정의 주요 내용	개별법 검토 필요 사항	추가적 종합 검토 필요사항
무 장 애	장애인복지법	제28조 (문화환경정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복지법상 관광복지 또는 열린 관광 개념 설정 필요한지? - 산업안전보건법상 관광복지 또는 열린 관광 개념 설정이 필요한지? - 모자보건법상 관광복지 또는 열린 관광 개념 설정이 필요한지? - 휴가·관광 바우처 제도의 실효성 확대를 위한 열린 관광 관련성 추가 검토가 필요한지?
	장애인차별 금지법	제24조, 제24조의2, 시행령 제15조의2 [별표] ‘관광 사업자’	‘접근보장’ 관련 사업자 기준, 정당한 편의 관련 「차별행위 가이드라인」	제24조와 유사한 수준의 규정으로 조정 필요	
	장애인 등 편의증진법	시행령 제3조 (대상시설) (「관광진흥법」 규정 준용)			
	교통약자 이동편의법	규정 없음		관광교통 관련 사항 검토 필요 (제2조제2항)	
고 령 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4조 (여가·문화 및 사회 활동의 장려) 제15조의2 (노후설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두가” “접근 가능한” 열린관광 개념이 향후 Universal Tourism 개념으로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는지? -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특별 배려는 필요하지 않은지?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제2조(정의) 제1호바목, 시행령 제2조(정의)			

494) 조아라·안희자 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 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4., 13~31면의 [제1절 관련 법 분석]에 제시된 법령을 바탕으로, 열린관광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추가 입법 개선 검토 사항에 대하여 연구진이 재작성한 표임.

법률 구성		열린관광 관련 조문	규정의 주요 내용	개별법 검토 필요 사항	추가적 종합 검토 필요사항
관 광	관광기본법	규정 없음		열린관광 개념의 적극적 채택 필요	
	관광진흥법	제47조의3, 제47조의4			
	관광진흥 개발법	제5조 (기금의 용도)			
법적 개선 방안 (종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편의시설 규정 - 전용관광상품개발 - 관광비용부담지원 - 전문인력 양성 - 사회적 인식제고 - 적극적 정보제공의무 - 실태조사 - 계획/관리/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센터 운용 - 입법 방식 선택(단독입법 필요성? 개별 법률 규정별 개정?) 				

즉, 법제 개선방안 등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정리해 본다면, 우선 열린 관광과 관련된 각 개별법률의 집행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국민과 인간에게 접근성이 보장되도록 하기 위하여서는 각 개별 법률에 따른 각 소관부처들의 집행 실태 점검과 실질적 이행을 위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그 밖에도, ‘열린 관광’ 이념이나 ‘보편적 접근성’ 차원에서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미국의 사례와 같이 적극적인 정보제공 의무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이며, 지속적 실태조사와 계획 및 관리·운용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그 센터 운영에 필요한 지원 규모 및 지원 기준 등에 관한 법적 기준 마련이 따라야 할 것이다.

그리고, 관광 산업계에서의 전용 관광상품 개발이나 전문 인력 양성 노력 외에도 각 소관 부처 간 협의체계 구축과 지자체의 자율적 조성 노력을 통하여, 보편적 접근성 보장을 통한 열린 관광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행정 규제 외에도 조성 작용에 초점을 두고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프랑스의 입법 사례 및 추진 체계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개별 법령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추가적인 입법적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편의시설 규정이나 사회적 인식제고, 적극적 정보제공의무 채택, 실태조사를 통한 집행력 제고, 센터운영을 통한 계획/관리/운영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서는 각 소관부처별 집행 노력 외에도 부처간 긴밀한 협력을 통한 종합적이고 통일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협의체 구성 및 종합적 추진 정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하여 열린 관광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위에서 제시한 관련 법제 분야에 대한 종합적 검토와 함께 해외 입법 사례를 기초로 하여 국내 관련 법제별로 구체적인 법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열린 관광 환경 조성과 관련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입법기준과 각 개별 법률 규정의 개정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참고문헌

참고문헌

I. 국내문헌

- 강혜경 · 임용호 · 임거배 · 하태훈, “장애인 · 노인 · 이동약자의 생활편의 향상을 위한 무장애 공간전보 구축 · 활용 지원방안”, 국토정책, 2019.
- 경기복지재단, “장애인여행, 실태와 과제”, G-Welfare Brief, 4, 2019.
- 고동완 외 6인, “무장애 관광레저도시 조성방안”, 문화체육관광부, 2006.
-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금지법 이행 제고 및 장애인 인권증진을 위한 토론회 : 장애인 접근권으로 본 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 방향”, 2016.
- 국토교통부, “제3차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계획(2017~2021)”, 2016.
- 김대명,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 현황과 개선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18.
- 김인순 외 4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Free) 인증제도 지표개선 방안 연구(도로 등)”,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 김인순 외 5인, “숙박시설의 유니버설디자인 적용을 통한 이용 활성화 방안 연구”, 한국장애인개발원, 2016.
- 노영순, “접근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 반정화, “장애인 관광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하고 전문인력 확충 · 정보네트워크 구축 필요”, 서울연구원, 2018.
- 원영래, “우리나라관광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현행 관광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중심으로”, 가톨릭관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5.
- 유준상, “관광의 어원과 의미에 대한 재조명”, 관광정책학연구, 9(1), 2003.

- 이규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평가지표 수준 비교 고찰”, 한국장애인재활협회, 16(2), 2012.
-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 “2018 장애인 관광환경 모니터링 사업결과 보고서”, 2018.
- 정병욱, “모두가 접근가능한 관광(Accessible 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열린 관광지 추진 현황과 과제”, 한국관광정책, 60, 2015.
- 정승안, “관광의 의미에 대한 주역사회학적 접근”, 사회사상과 문화, 26, 2012.
- 정진영, “Social Tourism 개념과 연구 과제에 대한 고찰”, 관광연구논총, 29(3), 2017.
- 조아라, “모두를 위한 관광(Tourism for All) 실현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관광정책, 75, 2019.
- 조아라·안희자 외,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계획 수립연구”,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9.
- 조아라·안희자, “유럽 무장애 관광 사례조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 조효단, “지속가능한 관광을 위한 지역라벨링: 프랑스의 꽃피는 마을과 도시 제도를 중심으로”, 국토연구, 2016.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8 국민여행조사 보고서”, 2018
- 한국장애인개발원, “2018 상반기 국내외 장애인정책 동향”, 2018.
- 한경수, “관광의 어원 및 용례에 관한 역사적 고찰”, 관광학연구, 13, 1989.

II. 국외문헌

- California Department of Justice, “Legal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3.
(https://oag.ca.gov/sites/all/files/agweb/pdfs/consumers/disabled_bookmarks.pdf?)

- Capital Development Board, “2018 Illinois Accessibility Code”, 2018.10.
(<https://www2.illinois.gov/cdb/announcements/2018/Documents/Register%20Page.pdf>)
- Darcy, S., & Dickson, T. J, “A whole-of-life approach to tourism: The case for accessible tourism experiences”, *Journal of Hospitality and Tourism Management*, 16(1), 2009.
- OECD, “OECD Tourism trends and policies 2014”, OECD Publishing, 2014.
- Organisation mondiale de la santé/Banque mondiale, “Rapport mondial sur le handicap”, 2012.
- Smith v. Hotels.com L.P., “Superior Court of California”, County of Alameda Case No. RG07327029, 2009.
(<https://www.accessibletourism.org/?i=enat.en.news.586>)
- van der Duim, “Accessible Tourism in the Netherlands: Sector Analysis Report 2017”, Wageningen University & Research, 2018.
(https://www.wur.nl/upload_mm/f/9/c/8199b474-a8a5-4385-8ff4-4c55fac1e53f_Accessible%20Tourism%20in%20the%20Netherlands_Sector%20Analysis%20Report%20%20June%202018.pdf)
- visits4u, “Case Studies: Barrier Free Public Spaces Rotterdam”, Netherlands, Project No: 699484, 2015.
-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Le 4 pages de la DGE, n° 88, Ministère de l’économie et des finances, , juillet 2019.
- Laurence Jégouzo, *Le droit du tourisme*, 2e édition, LGDJ, 2018.
- Loi de finances du 8 avril 1910, portant fixation du budget général des dépenses de l’exercice 1910.

Loi du 24 septembre 1919 portant création de stations hydrominérales, climatiques et de tourisme, établissant des taxes spéciales dans les dites stations, et réglementant l'office du tourisme, JORF du 26 septembre 1919.

Loi du 19 mars 1937 dénomée licence, guide, interprète, JORF du 8 avril 1937.

Ordonnance n° 2004-1391 du 20 décembre 2004 relative à la partie législative du code du tourisme, JORF n° 299 du 24 décembre 2004.

Loi n° 2006-437 du 14 avril 2006 portant diverses dispositions relatives au tourisme, JORF n° 90 du 15 avril 2006.

Décrets n° 2006-1228 et 1229 du 6 octobre 2006 relatif à la partie réglementaire du code du tourisme, JORF n° 233 du 7 octobre 2006.

Ordonnance n° 82-283 du 26 mars 1982 portant création des chèques-vacances, JORF du 30 mars 1982.

Loi n° 2005-102 du 11 février 2005 pour l'égalité des droits et des chances, la participation et la citoyennet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JORF n° 36 du 12 février 2005.

La bibliothèque juridique, Obligation d'accessibilité des ERP aux personnes handicapées, édition 2017, 15 mars 2017.

Publication de l'avis complet du Conseil d'État, 2 juin 2009.

Circulaire interministérielle n° DGUHC 2007-53 du 30 novembre 2007 relative à l'accessibilité des établissements recevant du public, des installations ouvertes au public et des bâtiments d'habitation.

Norbert Foulquier/Frédéric Rolin/Jean-Charles Rotoullié, La notion d'installation ouverte au public et notamment ses rapports avec la notion d'établissement recevant du public, Étude du Gridauh, 26 mars 2019.

C. A. A. Marseille, 6 juillet 2017, M. C. B, Req. n° 15MA03524.

C. E. Sect., 18 décembre 2002, Mme Duvignères, Req. n° 233618.

Loi n° 75-534 du 30 juin 1975 d'orientation en faveur des personnes handicapées, JORF du 1er juillet 1975.

Muriel Larrouy, “La naissance de la politique d’accessibilité. Des politiques de transport des personnes handicapées aux politiques d’accessibilité des transports urbains de voyageurs en France de 1975 à 2005”, in Accessibilité et handicap, Sous la direction de Joël Zaffran, PUG, 2015.

Gouvernement.fr, “Handicap: un label pour un tourisme plus accessible(8 août 2017)”, (<https://www.gouvernement.fr/argumentaire/handicap-un-label-pour-un-tourisme-plus-accessible>)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Direction générale de la cohésion sociale, 「Guide méthodologique d’accompagnement des territoires dans la démarche de labellisation Destination pour tous」, janvier 2018.

III. 참고자료

- 보도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년도 열린관광지 사업 공모”, 보도자료, 2019.5.8.

문화체육관광부, “문체부, 내년도 예산안 6조 4,758억 원 편성”, 보도자료, 2019.8. 29.

문화체육관광부, “장애물 없는 ‘열린 관광지’ 만든다”, 보도자료, 2014.12.23.

보건복지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관한 규칙 공동부령 일부개정령안 입법 예고,” 보도자료, 2015.5.14.

한국소비자원, “장애인 여행 여건 여전히 열악”, 보도자료, 2015.4.20.

- 기사

서울연구원, 2019.6.3., “고령화 · 올림픽 대비 무장애시설 대상 건축물 확대”

(https://www.si.re.kr/sites/default/files/457_0.jpg)

에이블뉴스, 2018.11.6., “서울시, ‘무장애관광 서비스 · 인식개선 메뉴얼’ 발간”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4&NewsCode=003420181106114020844155>)

에이블뉴스, 2019.9.26., “열린관광지 ‘시흥갯벌생태공원’ 장애인 불편”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30&NewsCode=001420190925184404166408>)

에이블뉴스, 2019.5.8., “장애인 이동편의 엉망? 제각각 법령 충돌, 소관부처 · 세부기준 달라...”설치 · 관리 혼선 초래” 편의 확보 위한 기준 통일, BF인증 의무화 필요”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14&NewsCode=001420190508170312754560>)

에이블뉴스, 2019.9.30., “휠체어 장애인의 광역 이동권 보장에 대한 생각”

(<http://www.ablenews.co.kr/News/NewsContent.aspx?CategoryCode=0006&NewsCode=000620190926105303783725>)

웰페어뉴스, 2018.11.7., “무장애관광 서비스 ‘관광약자 응대 이렇게”

(<https://www.welfare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6721>)

연합뉴스, 2017.8.29., “[文정부 첫예산] 한국형 체크바캉스로 휴가비 지원”

(<https://www.yna.co.kr/view/AKR20170829001100005>)

Japan Times, 2018.10.16., “Japanese government to require wheelchair-accessible rooms at new hotels”

(<https://www.japantimes.co.jp/news/2018/10/16/national/japanese-government-require-wheelchair-accessible-rooms-new-hotels/#.XKt7qiCP59A>)

KOTRA, 2018.6.19., “日 공공장소 등 ‘배리어 프리’ 확산에 박차”

(<https://news.kotra.or.kr/user/globalAllBbs/kotranews/album/2/globalBbsDataAllView.do?dataIdx=166856&searchNationCd=101003>)

- 사이트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리, (<https://www.ggnurim.or.kr>)

공정여행, (<http://www.fairtour.co.kr>)

문화체육관광부, (<https://www.mcst.go.kr>)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서울다누리관광, (<https://www.seouldanurim.net>)

한국관광공사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 (<http://vacation.visitkorea.or.kr>)

한국관광공사 VisitKorea, (<https://korean.visitkorea.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www.encykorea.aks.ac.kr>)

Barrier Free, (<https://bf.koddi.or.kr>)

KOSIS 국가통계포털, (<http://kosis.kr>)

United Nations, (<https://www.un.org>)

UNWTO, (<http://ethics.unwto.org>)

ENAT, (<https://www.accessibletourism.org>)

UpCodes, (<https://up.codes>)

ADA center, (<https://www.adainfo.org>)

ADA.gov, (<https://www.ada.gov>)

ADA National Network, (<https://adata.org>)

ADA Requirements Service, (https://www.ada.gov/service_animals_2010.htm)

agevillage, (<https://www.agevillage.com>)

Federal Communication Commision, (<https://www.fcc.gov>)

Frequently Asked Questions about Service Animals and the ADA, (https://www.ada.gov/regs/2010/service_animal_qa.html)

Illinois Capital Development Board, (<https://www2.illinois.gov>)

Illinois General Assembly, (<http://www.ilga.gov>)

Online Sunshine, (<http://www.leg.state.fl.us>)

네덜란드 The Accessibility Foundation, (<https://www.accessibility.nl>)

네덜란드 DREDF(Disability Rights Education Dfense Fund), (<https://dredf.org/>)

프랑스 총리소속 장애인처, (<https://handicap.gouv/>)

프랑스 생태 전환 및 연대부, (<https://www.ecologique-solidaire.gouv.fr/>)

프랑스 Tourism&Handicap, (<http://www.tourisme-handicaps.org/>)

프랑스 DGE, (<https://www.entreprises.gouv.fr/>),

프랑스 Balaluc, (<http://www.ville-balaruc-les-bains.com/>)

프랑스 AMIENS, (<http://www.amiens-tourisme.com/>)

프랑스 경제·재정부, (<https://www.entreprises.gouv.fr/>)

프랑스 정부, (<https://www.gouvernement.fr>)

프랑스 Larousse, (<https://www.larousse.fr>)

프랑스 Ministère de la t ransition écologique et solidaire, (<https://www.ecologizue-solidaire.gouv.fr>)

프랑스 Office du Tourisme paris, (<https://www.parisinfo.com>)

프랑스 Secrétariat d'État auprès du Premier ministre chargé des Personnes handicapées, (<https://handicap.gouv.fr>)

프랑스 Direction Générale des Entreprises, (<https://www.entreprises.gouv.fr>)

일본 수상관저, (<https://www.kantei.go.jp>)

일본 국토문통성 관광청(国土文通省 観光廳), (<https://www.mlit.go.jp/>)

일본 DINF, (<https://www.dinf.ne.jp/>)

일본 참의원(參議院), (<https://www.sangiin.go.jp/>)

일본 도쿄도 도시정착부(東京都都市定着部), (<http://www.toshiseibi.metro.tokyo.jp/>)

일본 국토문통성(国土文通省), (<https://www.mlit.go.jp/>)

현안분석 19-06

열린 관광 환경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2019년 10월 29일 인쇄
2019년 10월 31일 발행

발행인 | 김계홍

발행처 | 한국법제연구원
세종특별자치시 국책연구원로 15
(반곡동, 한국법제연구원)
전화 : (044)861-0300

등록번호 | 1981.8.11. 제2014-000009호

홈페이지 | <http://www.klri.re.kr>

값 9,000원

1. 본원의 승인없이 전재 또는 역재를 금함. ©
2.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원의 공식적인 견해가 아님.

ISBN : 978-89-6684-976-5 93360

김명아(책임)

학 력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건기여행길 조성·관리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안 연구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에 따른 벤처투자산업 활성화 방안 도출을 위한 연구
중국 출입국관리제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중국 여행 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장원규(공동)

학 력

Christian-Albrecht대학교 법학박사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정보통신공사업법상 공사 관련 단체의 거버넌스 개선방안 연구
북한의 투자보장과 분쟁해결 법제 연구
예방적 기업회생법제 연구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관련 법령 개정안 연구

전주열(공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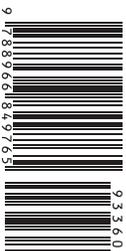
학 력

프랑스 Aix-Marseille대학교 법학박사
(전)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 한국법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연구실적 및 논문

프랑스 공공서비스법의 공법적 함의
프랑스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감독과 사법적 통제
지방분권을 위한 법적 일고찰
규제프리존의 공법적 함의와 정당화요소
프랑스 재정법상 공회계 제도에 관한 연구
프랑스 공공데이터 관련 법제도의 최근 동향
보조금법 이론과 실무
예산법률주의 도입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재정제도 개편방향에 대한 연구
주요 선진국의 공적연금제도 사례 조사 및 비교 분석
• 외국의 비용추계 제도 비교연구
• 성평등 관련 해외입법동향 및 지원체계에 관한 법제분석
• 해외 주요국의 국가공무원에 관한 법제분석

KLRI KOREA LEGISLATION
RESEARCH INSTITUTE



원 9,000

ISBN 978-89-6684-976-5 93360